

2005.9

## 특 집 여성경제활동인구 1천만명 시대

### |경제정책해설|

- 이공계 대학 융합형 소양교육 지원
-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 |이달의 초점|

위안화 절상,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 |탐방| 환경부 환경정책실



### |인터뷰|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 |세계경제의 현장|

- OECD의 고용 및 사회정책 동향과 시사점
- 2005년 상반기 DDA협상 평가 및 향후 전망

### |기획기사|

여성인력개발 지원제도

정책 담당자가 만드는 경제 정보지

# 나라경제

2005. 9 통권 제178호



2005년 8월호

| 탐방 |

04 환경부 환경정책실

‘지속가능한 선진 환경정책’의 산실 / 김정수



| 인터뷰 |

09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 특집 | 여성경제활동인구 1천만명 시대

16 여성인력 개발로 소득 2만달러 시대 견인 / 윤영숙

19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에 주력 / 양승주

23 여성가족부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 김재원

27 고학력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 필요 / 김태홍

31 여성창업 지원정책 더욱 확대해야 / 정명금

34 선진국의 여성인력 활용실태와 고용정책 / 문유경



우리 산야에 피는 꽃 **발개미취**

13쪽

### | 이달의 초점 |

## 위안화 절상,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 40 환위험 관리 노력 배기해야 / 강삼모
- 43 동아시아 통화협력 논의 주목해야 / 양두용
- 46 국제자본의 움직임 주시해야 / 박해식

### | 경제정책해설 |

- 50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 남봉현
- 54 이공계 대학 융합형 소양교육 지원 / 이동진
- 57 WTO/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책 / 이충원
- 6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 안중운

### | 정책이 홍보다 ② |

- 64 언론 장벽을 넘어서라 / 김덕만
- 68 생활경제 위험은 낮추고 기회는 늘리는 본산투자 / 한상언

### | 세계경제의 현장 |

- 70 OECD의 고용 및 사회정책 동향과 시사점(上) / 정형우
- 74 2005년 상반기 DDA협상 평가 및 향후 전망 / 김동배

### | 해외시장 리포트 |

- 78 체코편 : 중부 유럽의 매력적인 신흥 시장 / 이규남

### | 기업정보 |

- 81 **공정거래 심결사례 ⑤** : 공공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 박도하
- 86 **환경분쟁 조정사례 ④** : 철도운행으로 인한 매연·분진 피해농가에 첫 배상 결정 / 김상호
- 89 **금융분쟁 조정사례 ②** :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적정 여부 / 정준아

### | 기획기사 |

- 94 여성인력개발 지원제도 / 편집실
- 102 **주요 경제지표**

**발행**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김종수 KDI 원장  
**편집인** 육동한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

### 편집위원

재정경제부 진양현 정책상황팀장  
 외교통상부 전비호 통상기획홍보팀장  
 과학기술부 강영철 종합기획과장  
 농림부 김선영 행정법무담당관  
 산업자원부 조성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부 김용수 혁신기획관  
 보건복지부 이상영 재정기획관  
 환경부 김학주 정책총괄과장  
 노동부 박광일 재정기획팀장  
 건설교통부 정병윤 기획총괄담당관  
 해양수산부 객인섭 재정기획관  
 기획예산처 노형욱 중기재정계획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총괄정책과장  
 금융감독위원회 서태중 기획과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진형 총괄조정팀장  
 행정자치부 안세경 재정정책팀장  
 KDI 경제정보센터 김인철 정책홍보실장  
 편집간사 김재신 재정경제부 정책상황팀

**편집장** 강영목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기자** 이재열, 이윤우, 김연수, 이정미  
**배포업무** 신정자, 안현희

**발행일** 2005년 9월 1일(매월 1회 발행) 제16권 제9호(통권 제178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문화라 04859호)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ISSN 1277-8033 9  
**주소** (130-012)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130-650)서울 청량리우체국 사서함113

**전화** 02-958-4114

**팩스** 02-3295-0744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e-mail** [nara@kdi.re.kr](mailto:nara@kdi.re.kr)

**기사문의** 02-958-4652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2-958-4318

**구독료** 권당 2,500원, 연간 25,000원

**인쇄** 고려문화사 2277-1509

『나라경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환경부 환경정책실



앞줄 좌로부터 고재영 환경정책실장, 이지윤 정책총괄과 서기관, 뒷줄 좌로부터 김학주 정책총괄과장, 김형섭 환경기술과장, 이정섭 환경보건정책과장, 심무경 민간환경협력과장, 김동진 유해물질과장, 이찬희 환경경제과장, 유제철 화학물질안전과장

환경 문제는 이제 환경 그 자체에만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답을 얻어내기  
어려운 복잡한 방정식이 되었다. 환경부 환경정책실은, 개발과 환경보전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상생하는 관계라는 믿음 아래,  
이런 현실에 적극 대응하여 종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이끌어내고  
정책으로 구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선진 환경정책'을 실현해 가고 있다.



## ‘지속가능한 선진 환경정책’의 산실

**환** 경정책실의 조직 구성은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해 보인다. 7개 과에 8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큰 조직이지만, 조직의 전체 업무를 한마디로 아우를 만한 열쇠말이 쉬 떠오르지 않는다. ‘국가환경 종합계획’ 수립, 군부대 환경 관리, 비정부기구(NGOs) 관련 업무, 환경기술, 환경경제, 환경보건, 화학물질 관리 등 딸린 과들이 많고 있는 업무를 살펴봐도 공통분모를 뽑아내기 쉽지 않다.

1980년 사무관으로 업무를 시작한 이래 배출가스 결합 자동차의 리콜제도 도입과 무연회발유 생산 의무화, 오염규제 일변정책에서 친환경기업 지원정책으로의 전환, 상·하류 유역공동체 기틀을 마련하는 4대강 종합대책 수립, 환경보전정책 도입 등 환경정책의 획을 긋는 굵직한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1989년도에 김포지역 주민들의 반대 투쟁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추진한 '수도권 매립지 건설사업'은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예방한 대표적 업적으로 꼽히고 있다.

농업보조금 지급 등 경제·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김학주 정책총괄과장은 “ESI 평가내용은 향후 우리나라 정책의 지향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국토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분야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경제과는 종래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억제될 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환경도 지키고 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환경’과 ‘경제’를 상생적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1997년도에 설립되었다. 주 업무로는 녹색생산·녹색소비체계의 구축과 기업의 친환경경영 지원, 환경산업체 육성 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그간 환경경제과의 노력으로 녹색생산·소비체계 정착의 계기가 되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 등을 규정한 이 법의 시행에 의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2003년 2,600억원에서 2009년에는 1조5천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경경제과의 역점사업으로서 연평균 7%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동유럽 등 개도국의 환경시장을 겨냥하여 국내 환경산업의 수출규모를 2007년까지 2003년 대비 3배(2003년 5,819억원에서 2007년 1조5천억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에 상해시·요녕성 등 10대 우선진출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산업협력단을 파견하는 등 전방위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찬희 환경경제과장은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 지방순회설명회 개최, 지역별 환경시장조사, 외국환경기술인력 시찰단 초청 등 국내외를 오가며 실패 없이 환경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간환경협력과는 지속가능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미래의 환경시민을 양성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연내에 UN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10개년 계획(2005~2014)’에 부응하는 환경교육의 장기비전 및 목표를 마련하고 있고, 2005년에는 8종의 환경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각지의 학교 및 민

간단체에 9만여권을 유·무상으로 배포하여 교육일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환경협력과의 요즘 고민은 지난 연말 환경시국 선언 이후 민간환경단체와의 소원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이다. 환경 교육·홍보, 환경문제 해결은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무경 민간환경협력과장은 쓰레기 종량제, 자동차공해 대책 등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많은 난제를 풀어온 바 있어, 환경부 내부에서 환경단체와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복원해 낼 수 있는 책임자라는 평가와 기대를 함께 모으고 있다.

▲환경기술과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핵심환경기술을 개발하는 계획을 집행하고 있다. 특히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인 무·저공해 자동차 개발 및 수처리 선진화 기술 개발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에코스타(Eco-STAR)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환경기술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개선자금을 지원(2005년 840억원)하고 있으며, 전국 18개 지역에 설치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하여 지역의 특화환경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 부임한 김형섭 환경기술과장은 “유엔환경계획(UNEP)駐케냐대사관 주재관, 지구환경과장 등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선진 외국환경기술의 국내 접목과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형 기술개발, 외국과의 환경기술 협력사업을 확대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내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환경부는 그동안 수질·대기 등 매체관리 위주의 정책에서 환경오염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람과 생태계, 즉 수용체 보호 중심의 환경관리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시도로 화학물질과를 환경보건정책과·화학물질안전과·유해물질과로 확대하였다.

▲환경보건정책과는 설립되자마자 제기된 경남 고성 폐광산지역의 이따이이따이병 의혹사건을 무난히 해결했으며, 환경보건정책 10개년 계획 수립,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면 개정 등 새로운 분야인 환경보건정책의 기본 틀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



정섭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보건업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선 2006년도 예산을 2005년 대비 100% 증액(33억원)하고 환경보건정책과 인력 증원,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안전부 신설, 지방(유역)환경청에 화학물질과 신설 등 예산과 조직 확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과(과장 유제철)는 화학물질을 시장진입부터 폐기단계까지 전생애에 걸쳐 안전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화학물질 수입 또는 제조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여 그 성질에 따라 적절히 관리토록 감독하며, 매년 실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와 4년마다 시행하는 유통량 조사를 통해 국내 화학물질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석유화학·철강 등 화학물질 다량 배출기업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며 지원하고 있다. 화학물질 배출량을 2007년까지 30%, 2009년까지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30/50 프로그램'은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상반기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유해물질과는 환경호르몬이라 불리는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같이 장기간 인체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위해

성을 규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과의 업무는 화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직원들도 화학·화공 전공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올해 초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환각성 초산에틸 함유 칼라폰선의 판매금지 조치를 이끌어낸 김동진 과장은 39세의 젊은 패기를 살려 선진국보다 10년 앞서 대표적 잔류성유기오염 물질인 PCBs를 2015년까지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적 역할 외에도 지속가능발전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환경친화적인 정부가 되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런 환경부의 맨 앞에 국가환경관리의 틀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나아가 보건분야에 이르기까지 환경과의 통합을 고려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환경정책실이 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환경정책실이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해 우리나라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환경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김정수 한겨레신문 기자

# 경제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참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2004년판 45,000원

.....

창간 이후 **나라경제**를  
모두 영구보존판으로 묶었습니다.

**나라경제** 통합본은 경제사적 자료로서의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중요한 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 KDI 경제 정보센터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전화 : (02)958-4326

팩스 : (02)3295-0748

##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대담 김병섭(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일시 2005년 8월 12일

장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집무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

상시 혁신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혁신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혁신자동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혁신문화입니다. 혁신지향적인 문화가 구축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혁신하게 됩니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 과제들을 추진해 오셨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자평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정부혁신은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부혁신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각 정부 부처에서도 참여정부의 혁신을 일회성으로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혁신에 몰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가시적인 혁신성과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 중 가장 성공한 것을 꼽는다면 인사와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조직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특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국민 혈세가 함부로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입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제도가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의 성과 중 하나로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을 꼽으셨는데요. 위원장께서는 이를 두고 외국으로 수

출이 가능한 혁신이 될 것이라고 종종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은 통합 예산회계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했지만 그 건설비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토지 구입, 도로 진입로 개설 등 자료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집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은 원가에 의해 예산을 상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외국 예산회계시스템의 실패 사례를 수집해 벤치마킹하고, 우리의 앞선 IT기술을 접목해서 구축한 것입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한국이 성공하면 이 시스템을 전세계에 모범사례로 전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혁신을 수출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인사개혁 분야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유능한 민간인에 대한 공직 개방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여러 번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무원 조직 내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과

연 민간인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을까 대단히 궁금했는데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평가가 좋았습니다.

최근 공직 개방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처자율채용제를 도입해 신규채용 단계에서 非고시 출신을 뽑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실·국장급뿐만 아니라 과장급까지도 개방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밑에서부터 중간·고위 간부급까지 고시 출신과 민간 전문가들이 양대 인적 산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김병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그렇지만 유능한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진출함에 있어 급여·신분보장 등의 차이 때문에 꺼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 앞으로 봉급을 민간 수준으로 보장해 주고 민간 경력도 산정해 주려고 합니다. 업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면 일반적으로 전환시켜 정년퇴임 때까지 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 ‘대한민국 인재는 나이를 불문하고 언제든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직개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의 힘이 막강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이 전반기에는 정부혁신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저희 위원회는 정부혁신·지방분권 관련 국정과제에서 주요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4개가 지방분권 과제입니다.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제주특별자치도가 그것이지요.

이 중 2개는 이미 국회에 가 있고 나머지 2개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자치경찰제는 최근 입법예고되어 내년 하반기에 일부 자치단체에 시범 실시되고 2007년부터는 전면 실시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찰들의 주민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추진 중인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제주도를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이상적인 자유시장경제지역으로 만든다는 일명 ‘홍가포르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 과반수가 넘는 주민들이 찬성해 앞으로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제주도에 한해서는 중앙정부가 꼭 필요한 몇 가지 제한만 두고 의료와 교육 등 나머지 권한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역사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가 끝날 때 지방분권은 어디까지 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저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혁신성과만 보더라도 과거 정부에 비하면 괄목

할 만한 수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작업이 이뤄져 분권시대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많은 것을 맡긴다면 지방분권의 주요 과제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장께서는 평소 ‘상시 혁신체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혁신을 강조하다 보면 문제점도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 혁신체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21세기는 매우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직도 상시 혁신체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혁신은 종결이 없습니다. 조직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모범답안이 있어서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한동안은 고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상시 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최근 각 부처에서 ‘장관 전용 엘리베이터 같이 타기’, ‘전화 빨리 받기’, ‘복사지 양면 활용하기’ 등과 같은 혁신사례들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상시혁신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시스템적으로 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혁신자동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혁신자동장치’란 기업에서 보면 시장에서의 경쟁입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인위적인 자동장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혁신문화입니다. 혁신지향적인 문화가 구축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혁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평가입니다. 업무에 매몰되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평가시스템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짚어주고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세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조직 외부에 대한 투명성과 내부에 대한 투명성 모두 중요합니다.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단순히 투명성만 높였는데도 조직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혁신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 지수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투명성과 정부혁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조직구성원이 정보를 공유한다는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생각하지 않은 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자정부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조직 내의 의사결정이 민주화되고, 문제점이 즉각 시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혁신지향적인 문화가 조성됩니다. 전자정부가 본격화되면 나타나는 효과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전자정부 추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과거보다 정부혁신에 대해 외연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부혁신과 관련해 국민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우리나라에서 정부혁신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정부혁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기업혁신보다 어렵고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왜 빨리 안 하느냐’, ‘잘하지 못 하느냐’고 비판해 버리면 어렵게 가고 있는 정부혁신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혁신은 어렵고 성과가 더디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적극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별 개 미 취

(*Aster koraiensis* NAKA)



별개미취는 조선자원(朝鮮紫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풀로, 우리의 토종 야생식물이다.

우리나라 각지의 산과 들, 습지에 많이 자라며 근래에는 농가에서 다량으로 재배하여 전국 각지의 길가 화단이나 공원 등에 많이 심고 있다.

높이 50~60cm이고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으며 곧게 자란다. 줄기에 줄이 나있으며 뿌리에서 나온 잎은 꽃이 필 때쯤이면 없어진다. 잎은 어긋나게 달리고 피침형이며 끝이 뾰족

하고, 밑부분이 점차 좁아져서 잎자루처럼 되며 질(質)이 딱딱하고 털이 없으며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있다.

6~10월에 지름 4~5cm의 연한 자주색 꽃을 피운다. 9~11월에 씨가 익으며 어린순은 나물로 먹기도 한다.

가을철에 강원 지방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도로변 화단을 보라빛으로 곱게 물들이는 이 꽃 별개미취를 만나실 수 있을 것이다.

글·사진 / 김태정 한국야생화연구소장



# 책 속에는 지식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밀려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지식을 직접 습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월을 간직한 나무의 나이테처럼 많은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을 읽음으로써  
내 지식의 나이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 여성경제활동인구 1천만명 시대



16 여성인력 개발로 소득 2만달러 시대 견인 / 윤영숙

19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에 주력 / 양승주

23 여성가족부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 김재원

27 고학력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 긴요 / 김태홍

31 여성창업 지원정책 더욱 확대해야 / 정명금

34 선진국의 여성인력 활용실태와 고용정책 / 문유경

올해 5월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출산·보육, 직장 내 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성경제활동의 질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註>

## 여성인력 개발로 소득 2만달러 시대 견인



윤영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yys98@mogef.go.kr)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 진입 후 1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1%p 상승에 머무르고 있어 소득 2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이 시급하다. 정부는 여성과 아동,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연계해 사회 전체의 효율적 인력활용을 위한 거시적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최초로 1천만명을 돌파하기도 하였다. 2000년 927만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5년간 8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성경제활동인구 1천만명’이라는 수치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모두 합쳐져 있는 것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곧바로 여성 취업자의 순증(純增)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한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분 중 대다수가 중·장년층 이상의 노동시장 재진입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점은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시장의 현황에 대해 곰곰이 되짚어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한가지, 화려한 수치에 묻혀 간과하기 쉬운 것

은 여성고용의 질이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무급 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노동의 안정성이 낮으며 남녀 간 임금격차 또한 여전히 높는데, 이는 여성경제활동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견인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 시급히 타개해야 할 여성인력의 저활용 구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주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민소득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주요 선진국의 여성경제활동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국민소득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들 국가가 국민소득 2만달러대로 성장

했던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까지 10여년간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같은 기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시기에 비해 빠른 약 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 임금격차의 축소와 동시에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중요한 특징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부문별로는 사회서비스와 사업서비스 영역에서, 직종별로는 전문직과 관리직으로의 여성 진출이 두드러지게 이루어졌다.

셋째, 연령계층별 고용률의 'M-curve(20~3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 모양으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의미)'가 거의 사라져 자녀양육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 정도가 크게 완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측면뿐 아니라 차별시정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교육 정책 등 각국의 정책적 노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인력의 활용이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 있다. 2004년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민간 부문의 여성고용 102위, 남녀임금평등 98위, 모성보호 관련 법령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 102위로 전체 104개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8%에 불과하며, 이 중 대졸 여성은 57.1%로 OECD 평균 77.9%보다 20%p 이상 낮다. 또한 출산·육아기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기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M-Curve'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하더라도 하향 취업을 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활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 진입 후 1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1%p 상승에 머무르고 있어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과 정책 대응방안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여성과 아동 그리고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연계해 사회 전체의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한 거시적인 틀을 만드는 데에 주력하고자 한다.

### 사회서비스 부문의 여성일자리 창출에 주력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우리나라는 인력 활용의 효율화를 통해 노동투입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채감경기의 악화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일 자리를 찾아 나서는 여성인력이 늘고 있어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공공 부문이나 사회적 일자리 등 여성의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는 것도 좋은 일자리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창업뿐 아니라 이미 창업한 여성, 여성기업의 생존율을 제고하는 것도 일자리의 개수를 늘리는 정책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신규 일자리를 여성인력으로 채우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급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들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의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포함한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앞으로 정부가 우선 주

여성고용 잠재력이 매우 큰 사회서비스  
부문의 전략적 여성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여성이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데에 필수적인  
가정과 직장의 양립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분야별로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여성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력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회서비스 부문의 전략적인 여성일자리 창출이다. 비록 이 분야에서 여성취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취업의 양과 질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서 이 부문의 여성고용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전체 취업자 중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비율을 16%, 그 중 여성을 21.1%까지 높일 경우, 여성일자리는 약 6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가정과 직장의 양립기반 확충

정부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데에 필수적인 가정과 직장의 양립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주력할 것이다.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여 ‘일하는 엄마’에게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자 한다.

지난해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등을 통해 ‘보편적인 보육’으로 보육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도모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 국가와 사회의 보육의 책임성을 명백히 한 바 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정근로시간 준수, 근무형태의 유연

화, 탄력적 휴가제 운영을 통한 가족생활시간 확보 그리고 가족친화기업에 대해 인증제를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직장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분야별로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여성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문기술직·관리직의 여성고용비중이 낮은 수준이라서 이들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분야별로 고르게 여성인력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졸업-취업-출산-육아기 이탈-재진입’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여성의 근로생애주기를 반영한 취업지원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인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원활히 하는 것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부처 협의하에 과학자·기술인·행정관료 전문직 등 다양한 분야로의 여성 진출을 촉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노동력 부족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 주력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해 기업내 다양성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우리 경제의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의 도약은 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에 주력



**양승주** 노동부 고용정책국장  
(myvirtu@hanmail.net)

정부는, 여성고용 정책의 방향을 여성근로자들이 직장가 가정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보육 등 관련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두고자 한다. 이와 함께 모집·채용 과정에서부터 보직·승진은 물론 퇴직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인 성차별을 개선해 나가는 고용평등 및 차별해소 정책을 병행할 것이다.

**통** 계청은 얼마 전 ‘2005년 5월 고용동향’에서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최초로 1천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여성고용 통계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이었다.

물론 최근 갑자기 여성경제활동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천만명을 넘어선 것이 아니지만 미미하기는 하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를 남성보다는 오히려 여성이 주도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과거 10년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48~49%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는데, 비로소 정체를 벗어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신호로 보인다.

### 남성에 비해 경제참여율 낮고 고용의 질도 열악

여성경제활동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선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그간 여성고용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성고용 통계의 다양한 측면을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양적 측면에서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수준이다.

2005년 7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7%로 남성의 75.3%보다 24.6%가 낮다. OECD 평균 남녀 경제활동참가율(2003년말 기준)은 각각 80.2%와 59.6%로, 그 차이는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인 10.6%p에 불과하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일반화된 노르딕 국가들에서조차 발견될 수 있는 현상인데, 문제는 우리의 경우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연령대별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0대에서 낮아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2005년 7월 통계에서도 2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65.4%, 64.5%였던 경제활동참가율이 30대에서는 54.1%에 그쳐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도표가 보여주는 완만한 포물선 형태 곡선이 여성에 대해서는 '쌍봉' 구조 또는 'M자'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30대에서 급격히 낮아졌다가 40대에서 높아지는 것은 여성이 결혼·출산·육아가 집중되는 30대에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생에 걸친 경제활동을 조망할 때, 일에 가장 역동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보이며 가장 높은 생산성을 기록할 즈음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개인의 경력개발은 물론 국가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셋째, 여성고용의 질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열악

한 수준에 있다.

관리직에 진출한 여성의 비중은 여성고용에 관한 한 후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보다도 뒤진다.

또한 2004년 말 고용보험에 가입된 공기업 여성 근로자의 직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40.2%가 단순직, 29.6%가 판매서비스직인 반면 관리직은 1.6%, 전문직은 12.4%에 불과하였다. 여성근로자의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도 고용의 질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남녀 간 임금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IMF 직후인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2001년 한 해를 제외하면 남성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근로자 임금은 64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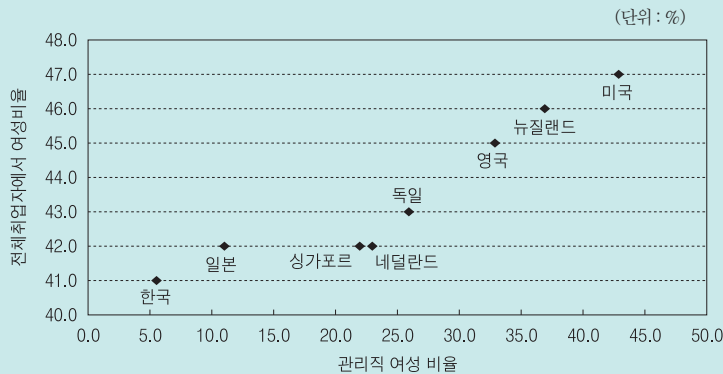
### 직장·가정 양립 가능토록 적극 지원

정부는, 여성고용 정책의 핵심과제를 여성근로자들이 직장가정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보육 등 관련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두고자 한다.

이와 함께 취업 전 모집·채용 과정에서 취업 후 보직·승진은 물론 퇴직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인 성차별을 개선해 나가는 고용평등 및 차별해소 정책이 병행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선진국들의 여성고용 정책이 시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증가한 국가들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대표적 징표 중 하나가 여성고용의 확대이다. 국민소득이 한 단계 성장해 나

〈그림〉 전체 취업자에서의 여성 비율과 관리직 내 여성 비율의 국제 비교



자료 : 국제노동기구(2001), 한국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2)

〈표〉 성별 임금격차 현황(월급여총액 기준)

(단위 : 천원, %)

|     | 1995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남   | 1,058 | 1,260 | 1,272 | 1,383 | 1,500 | 1,586 | 1,765 | 1,921 | 2,047 |
| 여   | 643   | 794   | 815   | 898   | 974   | 1,043 | 1,142 | 1,233 | 1,320 |
| 여/남 | 60.8  | 63.0  | 64.1  | 64.9  | 64.9  | 65.7  | 64.7  | 64.2  | 64.5  |

주 :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월급여총액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의 합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각년 12월호), 임금구조기본조사 각년도 원자료(10인 이상 사업장)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교육·보건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산업이 발전한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대부분 여성이 중요하게 참여해야 하는 일자리들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일부 남성들이 우려하듯 남성들의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을 순증하게 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여성친화적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고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일자리가 증가하더라도 여성들이 출산 후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경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보육지원은 일반 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이보다는 ‘일하는 엄마(working mother)’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보육시설의 수, 접근성, 보육의 질, 보육시간과 비용 등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조화된 성차별적인 관행과 제도를 더욱 개선해 나가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유리벽’과 ‘유리천장’이 가로막고 있다면 이는 개인적인 좌절과 포기, 분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경제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향후 인구의 감소까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상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구조화된 성차별 관행·제도 개선

현재 정부는 그간 여성고용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여성고용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아직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검토

산전·후 휴가급여를 사회가 부담하는 등 고용촉진형 출산·육아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여성 친화적 산업 진흥을 통해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용상 성차별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시행과 성차별 시정활동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단계이기는 하나, 여기에 담고자 하는 추진과제의 대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촉진형 출산·육아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올해 5월 여성근로 관련 3법이 개정되어 그간 산전·후 휴가 중 사업주의 급여부담을 일단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한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키로 하였다. 이는 그동안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부담해온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급여를 이제 사회가 부담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재정상 부담 때문에 전체 기업으로까지 확대하지 못하고 지원대상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한정된 점은 아쉬우나, 앞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영역인 것은 분명하다.

아울러 일하는 엄마에 대한 영아보육지원제도 도입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하는 엄마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기가 2세 미만인 영아기의 보육 문제이다. 정부는 영아보육지원제도가 새로운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창출과 연계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되, 재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시기를 조정해 나가고자 한다. 다만 사회적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도 서둘러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도입되는 유산·사산 휴가제 외에도 육아에 대한 부부공동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형태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입법으로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데,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강제적 이행수단의 부재, 적용대상 사업장의 한정 등 한계를 안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고용개선을 해나가는 기업에 대한 유인기제를

도적 유인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종전의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검토될 것이다.

둘째, 여성친화적 산업 진흥을 통해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요양서비스, 보육서비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강사, 장애인 도우미 등 여성이 주로 담당하게 될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이들 분야의 일자리는 여성들이 자녀양육·가사 등과 직업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제 일자리로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행 시간제 일자리들이 상정하는 ‘저임금과 근로조건의 열악함’을 탈피하고 직정한 임금, 사회보험, 고용의 안정성 등이 확보되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셋째, 고용상의 성차별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행과 성차별 시정활동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나라경제』 2005년 6월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참조).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촉진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고착화된 성차별 구조를 개선하고, 여성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3년 기준 출산율이 1.19명으로 낮아졌다. 2019년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노동력 부족 시대를 코앞에 둔 지금, 여성고용 촉진이 1차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바처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여성의 고용촉진 여부에 국가경쟁력이 좌우되는 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가 점차 낮아지면서, 여성고용 증가가 남성의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오해도 우리 사회 일부에는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더이상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노사는 물론, 남녀 모두의 인식전환과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신영희

## 여성가족부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김재원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jwk569@hanmail.net)

국가여성인적자원 개발정책을 기획·총괄·조정하는 강력한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각 부처의 정책이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전략적인 비전 아래 서로 연계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주관이 되어 여성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최** 근 우리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의 둔화와 국제경쟁력의 저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는 여성인력의 활용 등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부진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효율성 저하와 무관하지 않다.

일례를 들어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은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다소 낮고 대만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실정이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들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렇듯 임금 수준은 큰 차이가 없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이유는 노동인력비율(총인구 중 15세 이상 인구의 비중), 노동분배율,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요인으로 분해(分解)해 찾아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고임금-낮은 국민소득’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주 요인은 상대적으로 농림어업의 비중이 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부진한 데에 있다.

### 저조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高임금-低국민소득’의 주요인

여성취업이 부진한 이유는 먼저 크게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노동수요 측면에서 성장의 부진이 여성취업을 부진하게 하는 주요인이다.

성장이 둔화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신규채용이 감소하게 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노동공급이 비연속적이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 때문에 기업이 여성채용을 남성에 비해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최근 들어 아웃소싱의 진전 등으로 경제의 고용 흡수력이 저하된 것 또한 여성의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력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에서 젊은 세대들의 근로 행태와 질의 저하도 신규노동 진입자들의 고용을 회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몇년 전 전경련이 인사노무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신규 대졸자들의 근로행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적인 평점이 100점 만점에 25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동공급 행태와 근로의 질 저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갓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의 채용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경제환경 변화와 성차별 등으로 취업 부진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한 요소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당연한 명제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이 부진한 요인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대외적인 통상압력의 가중, 국제경쟁력 측면에서의 동태적 변화, 고인건비 추세 등은 기업들로 하여금 노동절약적 기술, 즉 자본·정보·지식 집약적 산업구조를 채택하고 인력절감을 추구하는 경영전략을 채택하게 한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집단은 노동시장에 진출하려는 고학력 여성이나 사무직 종사를 원하는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성별(性別) 수요의 차이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전공 계열 남녀 구성비를 보면, 인문계, 예·체능계, 사범계에서는 여학생의 비중이 높고, 사회계·자연계·의학계의 경우 여학생의 비중이 현저히 낮다.

여학생이 많이 몰린 전공 계열 중 사범계 외에 다른 계열은 졸업 후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 진출에 저해요인이 된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적 차별도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이다.

취업 후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성의 취업의욕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차별을 받고 있는 '좌절된' 여성들의 작업동기를 떨어뜨리며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여성의 채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에 사무직/생산직, 남성/여성 간의 신분이 현저히 구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피해계층인 생산직 그리고 여성종업원의 근로의욕 제고와 조직 내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또한 기업의 채용형태도 여성의 취업이 부진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에서 전문대졸 또는 대졸 여학생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를 이들의 전공 계열이 취업률이 낮은 계통에 편중된 데에도 기인함을 논의하였으나,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시 면접시험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인턴사원제는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을 살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업에서 일류대 남학생을 입도선매하는 식의 채용형태가 일반적이어서, 소위 통계적 차별에 의한 인력선발의 장점보다는 '오렌지'를 선발하려다가 '레몬'을 선발한다거나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사원들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즉, 채용기준의 면에서 볼 때 우리 기업의 채용형태는 전근대적이고 이것은 국제경쟁력의 저하와 무관하지 않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으로 여성취업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벽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법이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탁아시설의 다양화 및 질적 개선, 탁아비용의 절감 등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열악하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유교적 전통 및 가부장적 규범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 제약 조건들은 현저히 개선되었고, 가정

내에서의 아들·딸에 대한 차별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기술의 소프트화로 ‘남성 위주-여성 보조’적 직책을 부여하던 기업의 풍토가 개선되고 있고 여성에 적합한 직종의 수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에 적합한 직종의 수는 크게 늘어났으나 아직까지는 이들 직종의 인력수요가 그리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여성 자신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별 받는 이유는 노동공급의 비연속성으로 인한 훈련효과 반감(半減), 초과근무의 어려움, 남성 위주의 사회문화적 규범 등 수많은 요인이 있으며, 이들 요인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여성대상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교양·가정·여가 등에 할애되고 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교육은 흔치 않다. 대학의 여성학 관련 강의도 여대생의 관심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취업을 하고, 직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조직에 대한 귀속감을 갖고 평생직장으로 여겨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여성 자신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성이 직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성적 차별에 영향을 주는 내·외부 요인들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의 인식, 동료 근로자의 인식과 회사의 분위기, 노조의 행태, 사업장의 위치, 취업규칙, 인사고과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여성인적자원 개발정책 적극 추진해야

인적자원 개발은,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개발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식의 창출·활용·확산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여성만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정책(female specific HRD policies)이나 혹은 일반 인적자원 개발정책

지역 여성인적자원 개발·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가 사업을 개발하여 공모하면 이를 심사하여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또는 여성가족부가 지역별 사업을 제안하여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에서 정책의 효과가 남녀 평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인지적(性認知的)인 관점에서 수립된 인적자원 개발정책(gender-based HRD policies)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다양한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여성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 정책을 기획·총괄·조정하는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는 여성인적자원 개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인적자원 개발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여성가족부가 그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여성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의 경우, 부처 간의 정책관점 및 추진방식이 상이하고 또한 여성가족부의 권한이 약해 정책의 연계 및 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역 단위의 여성인적자원 개발 추진체계를 보면, 지방자치체 시행 이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각 지역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제고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2000년을 전후로 국 혹은 과 단위의 부서를 신설하여 지역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

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같은 여성 직업교육훈련기관, 지역 소재 대학, 창업교육기관, 일반 직업능력개발기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성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지역 노동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여성인적자원 개발은 그동안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한계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지역 여성인적자원 개발이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과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추진체계 간의 정책 및 업무 조정과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인적자원 개발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효율적 여성인력 활용정책이 요구된다.

### 여성가족부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해야

향후 우리나라의 여성인적자원 개발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여성인적자원 개발정책을 기획·총괄·조정하는 강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인적자원 개발정책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하여 관련 부처 간 사업추진상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상호 협력체제가 미흡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정책을 개발하거나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각 부처의 정책들이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비전 아래 서로 연계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주관부처가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총괄·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을 관장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주관이 되어 여성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차원의 여성인적자원 개발 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로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도 및 필요성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지역의 여성인적자원 개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개발하여 공모하면 여성가족부가 심사하여 시범사업으로서 관련예산을 지원하거나 또는 여성가족부가 지역별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현황, 지역사회의 여성인력 활용도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HRD(인적자원 개발) 평가를 통해 지역 여성인적자원 개발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역별로 특화된 여성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기한 여성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요인들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노동수요, 노동공급, 제도적 요인,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성자원 개발정책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여성 자신의 문제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여성취업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노동시장에서 차별 받는 여성의 경우 여가의 효용이 '부(負)'가 될 정도로 직장에 대한 선호도가 크며, '성차별 없는 사회'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이익(social gain)을 가져다준다. 즉,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없이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선결과제를 강조하고자 한다. 

## 고학력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 긴요



**김태홍** 한국여성개발원 노동·통계연구부장  
(kimth@kwdi.re.kr)

2004년의 고학력 여성인력활용률은 1997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대졸여성의 경우 아직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 같은 고학력 여성의 낮은 인력활용은 출산 및 육아기 이후 여성의 활용률이 극히 낮은 데 기인한다. 또한 고용구조를 보면 고학력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여성인력활용률을 나타내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변화를 보였다.

1990년 47.0%를 나타내었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49.8%로 상승하였으나 1998년에 47.1%로 급락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에는 외환위기 직전의 수준인 49.8%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거시 고용통계 측면에서 보면, 1990~1997년과 1998~2004년 양 기간 동안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 양태는 유사해 보인다. 즉,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서 여성인력 활용이 잠시 후퇴하였

다가, 2004년에 다시 외환위기 직전의 상황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 기간 동안의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 구조는 거시 고용통계에서 보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양성 및 활용 구조는 여성고용 정책을 재점검하게 만들고 있다.

아래에서는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방안을 살펴본다.

### 여성인적자원의 고학력화 급속 진행

1990년대 이후 여성인력 양성 및 관련된 가장 큰 변화는 여성인력의 학력별 양성 구조에서 나타난다. 즉, 1990년에서 1997년 사이에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30%대에서 50%대로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2004년에는 80%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그 결과 1990~1997년 사이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에서 전문대졸과 대졸의 구성비는 각각 2.2%,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8%에서 5.0%, 7.1%로 커졌으나, 2004년에는 이와 같은 구성비가 각각 7.9%, 13.0%로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여성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전문대졸 이상 여성의 구성비도 1990년에 8.5%에서 1997년 15.4% 그리고 2004년에 26.3%로 커졌다.

진학을 상승이 일정한 시간간격(time lags)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의 학력별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1998~2004년 중 여성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을 급등은 이후 7년 후인 2011년에 여성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고학력 구성비를 약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 인적자원의 고학력화는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990~1997년과 1998~2004년 동안 고학력 여성인력활용률을 살펴보면, 전문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66.1%에서 1997년 68.1%로 높아진 이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65.0%로 하락한 뒤에 2005년 67.0%로 회복되었다.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1990~1997년에 53.1%에서 61.0%로 상승한 이후, 1998~2004년 56.7%에서 60.1%로 회복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를 보면, 2004년의 고학력 여성의 인력활용도 외환위기 직

전인 1997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2004년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60.1%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등 우리나라 여성인력 활용과 관련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고학력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 출산·육아기 이후 경제활동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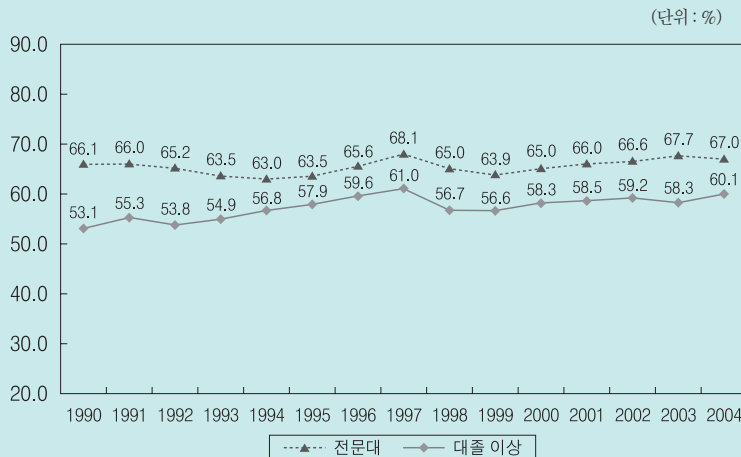
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7년 동안의 고학력 여성인력활용률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령별(age-specific)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연령별 고학력 여성의 참가율을 나타내는 <그림 2>에 의하면 1990~2004년 동안에 20~24세 연령층 고학력 여성의 참가율은 75~80% 수준으로, 1990년에 이미 90%에 육박한 캐나다·독일·영국·미국보다 낮으나 활용률이 극히 낮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이들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는 출산 및 육아기 이후에 참가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에 OECD 회원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45~54세 시점에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의

낮은 인력활용은 전적으로 출산 및 육아기 이후의 고학력 여성의 활용률이 극히 낮은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1990~2004년 동안 고학력 여성의 참가율 변화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첫 번째는 25~29세 연령층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는 30~34세 연령층과 35~44세 연령층의 참가율이 1990~1997

<그림 1> 전문대졸 및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년에는 커다란 개선을 보인 반면에 1998~2004년에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 인구를 종사상 지위별, 취업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1990~1997년에 25~29세, 30~34세, 35~44세 연령층 고학력 여성 참가율의 급격한 상승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이들 연령층 여성 중에서 전반적으로 임시 및 일용고(日傭雇)의 구성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1998년에는 고학력 여성 참가율이 약간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는 정규직 구성비의 감소에 의한 것이었다.

### 고학력 여성의 비정규직화 심화되는 추세

1998~2004년에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이 제고되는 과정을 보면, 정규직 구성비가 소폭 높아졌으나 전반적으로 임시 및 일용고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결과적으로 고학력 여성인구 중에서 정규직 구성비는 1997년 51.7%에서 2004년 50.9%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데 비해서 비정규직 구성비는 같은 기간에 23.3%에서 28.8%로 높아졌다. 즉, 1990~1997년과 1998~2004년의 고학력 여성의

고학력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노동투입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여성에 대한 각종 고용차별을 근절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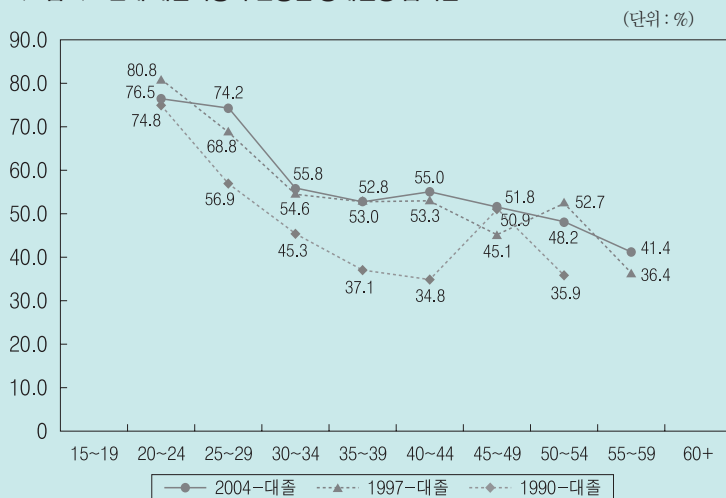
인력활용률 변화를 보면, 2004년 경제활동참가율은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1997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회복된 구조를 보면 정규직의 구성비는 변화가 없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구성비는 더욱 높아졌고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구성비는 낮아졌다.

또한 출산 및 육아를 담당하는 30~34세 고학력 여성의 참가율 변화를 보면, 이들 연령층의 참가율이 1990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구성비를 보면, 정규직은 1990년 25.9%, 1997년 25.8% 그리고 2004년 26.9%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

비정규직의 구성비는 크게 높아졌다. 즉, 정규직 고학력 여성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은 1990년 이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의 경우도 1997에 비해서 2004년의 정규직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구성비는 크게 높아졌다. 즉, 2004년의 고학력 여성인력활용률은 1997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고용구조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더욱 가

〈그림 2〉 4년제 대졸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속화되는 특징을 보인 것이다.

### 고학력 여성인력의 노동투입 확대해야

지식기반경제 구조에서 고학력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은 개인적인 차원이나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고학력 여성고용과 관련된 제반 노동지표를 보면 표면적으로 외환위기 직전의 1997년과 비슷한 상황으로 회복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인 분석에 의하면 고학력 여성의 인력활용 구조는 1990년대와는 다른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고용 정책 또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첫째, 고학력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노동투입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서 ‘괜찮은 일자리(good job)’ 창출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경제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능력이 지속적으로 감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기업·국가의 경쟁력 약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노동수요 창출을 통한 여성인력 활용 증대 정책보다는 유능하고 창의적인 고학력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증대와 같은 노동투입 확대 정책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의 여성 일자리 창출정책의 시행,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력다각화 전략(diversity strategy)의 도입 유도 그리고 현재 도입 중인 적극적 조치 정책(affirmative action policy)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정책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 이후 모성보호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강화와 정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의 확충,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못지 않게 이러한 제도나 정책을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각종 고용차별을 근절해야 한다.

그동안 고용차별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 법 제정 및 제도 실시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은 강화되어 온 반면에 제도의 운영방법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에 대한 연구와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여성고용 차별과 관련된 법·제도 및 정책의 운영과 관련된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여성창업 지원정책 더욱 확대해야



정명금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단기적으로는 복지·교육 서비스 등 여성의 상대적인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와 연결된 고용 창출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여성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창업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여성 스스로도 끊임없는 능력 개발 등을 통해 적극적·자발적으로 시장 진출을 시도해야 한다.

여성이 신(新) 성장동력이자 여성인력 활용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달성의 핵심이라는 사회적 담론이 공감대를 얻기 시작한 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느냐, '중진국' 수준에 주저앉고 마느냐를 좌우하는 키워드가 여성인력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다.

## 21세기 키워드는 '여성'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놀고 있는' 인력(대표적으로 여성)을 경제활동인구로 편입시키는 것만큼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안은 없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유휴' 고학력 여성군(群)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낭비 투자의 표

본으로 꼽히는 만큼 이들의 활용은 이중의 효과를 낳는 방안이 된다.

여기에 여성적 감수성이 '블루 오션'(편집자註: Blue Ocean,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 '대안시장')을 개척하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되고, 여성 스스로 사회 진출을 선택하는 시대적 흐름 또한 도도하다. 필요가 있고 요구가 있으니 엄청난 사회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된 셈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지원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만 할 뿐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최근 들어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고 시행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여성에게 관행처럼 이뤄져 온 채용시 성차별이나 승진 지연 또는 결혼·퇴직 등 직장 내 불평등에 대

◇이 글은 필자의 개인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예방책, 한창 일할 나이에 은퇴를 하는 'M자형 노동단절'의 고리를 끊기 위한 육아의 사회화와 모성보호제도, 취업과 연계된 직업교육과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운영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주요 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 정책을 들여다보면, 무엇보다 여성이 처한 현실을 그다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난다. 또 여성의 진출을 '남성'의 일자리를 뺏은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고, '역차별' 논리를 앞세운 저항도 만만치 않다. 각종 모성보호제도는 역설적이게도 기업이 여성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여성인력 활용정책의 근간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여성인력의 인적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여성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해 나갈 때 저출산 시대를 사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단기적 목표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장기적 목표,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여성인력 활용 위한 중장기 정책 절실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여성의 상대적인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와 연결된 고용창출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육아의 사회화를 위해 필수적인 수준 높은 보육시설이나 노인 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 분야, 생태체험·현장체험·미술체험 같은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체험교육 지도자나 특기적성 강사 등 차별화된 교육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 분야들은 특히 여성친화력이 높은 공공서비스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여성을 재교육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면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일자리 창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서비스 직군도 여성의 잠재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눈여겨볼 수 있다. 외식의 일상화, 문화 공연에 대한 높은 관심, 여행이나 관광의 증가 등 모두가 여성 취업을 자극할 수 있는 변화들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공연 시설에 필요한 하우스 매니저, 메뉴와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는 외식업체 매니저, 어린이 전문 여행상품 개발자 등 이미 틈새를 뚫고 나오고 있는 사례들은 주5일 근무제가 여성에게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있는 직종들이라 할 수 있겠다.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기혼여성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산업노동에서 지식기반 사회로 발전하면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평가받는 정보통신 분야도 '능력 위주'의 평가를 원하는 고학력 여성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분야다. 또 여성 인터넷 인구의 급증은 필연적으로 여성용 게임이나 콘텐츠 등 여성의 요구를 동반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를 위해 고급 정보통신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에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IT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이 따른다면 보다 많은 여성의 진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성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창업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위해 먼저 현황을 보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조사한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실태조사(2005)에 따르면, 여성창업자들의 창업 연령은 30대와 40대가 월등히 많았고, 창업 전 경력을 보면 가정주부가 가장 많았다.

이들 스스로 고백한 자신들의 문제로는 창업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력 부족이다. 실제로 창업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보면 '6개월 이내'가 69.2%, '6개월~1년 이내'가 16.7%로 전체의 85.9%가 1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승부수를 던졌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준비 부족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반면 창업 동

기는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또 여성창업자들이 밝힌 기업의 성장단계별 애로 사항을 보면, 창업 초기 자금조달 문제가 가장 크다. 그리고 성장할수록 전문인력 확보, 판로 개척, 사업 아이디어, 신제품 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털어놓았다.

이를 종합하면 창업 전 준비와 자금조달, 창업 후 판로 등에 지원이 따른다면 여성의 창업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여성창업 적극 지원해야

여성창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저소득 여성가장에 대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담보나 신용도 없고 더군다나 창업자금 마련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여성가장이나 저소득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여성에게 필요한 전문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트렌드에 맞는 전문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유망 분야나 신규 창업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전국에 14개 여성전용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여성창업자에게 사무실 공간과 공동사무집기, 마케팅과 세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창업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여성창업경진대회, 창업 후견인 지정 및 경영컨설팅사업 등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이 예산 등의 이유로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현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여성가장 창업자금의 경우 연간 50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창업자금 중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를 30%선으로만 확대해도 여성창업은 완전히 활기를 띌 것이다. 그 외 정책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빈민구제의 일

환으로 시작되었던,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무담보 소액 대출제도)’은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실효성 높은 지원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책이다. 창업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창업 이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때까지 수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대출금 상환율이 97%에 달할 정도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창업 전 준비와 창업 후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검토할 수 있다. 주 업무는 창업 강화를 통해 실무적인 준비 경험을 쌓게 하고 초기 창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창업 및 경영지도 상담사를 운영하는 베이스 캠프의 역할이다. 아울러 여성기업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여성기업인 서로가 정보를 교류하고 지원세력이 될 수 있는 마당의 기능도 할 수 있다. 온라인 센터를 병행 운영해 시장의 현황 파악, 전문인력 확보, 판로 지원 등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효과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추진됨과 동시에 여성 스스로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장 진출을 시도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 글로벌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수반될 때 우리 경제가, 나아가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질 것이라 믿는다.

자신의 미래를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여성이 출발점에서 다시 뿔 준비를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영미**

## 선진국의 여성인력 활용실태와 고용정책



문유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mizmoon@kwdi.re.kr)

선진국의 여성인력 활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반적으로 높고 연령별 참가율 패턴이 남성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선진국에서는 우리와 달리 결혼·출산기와 무관한 경력의 지속적인 개발과 고학력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주요 결정직 및 상위직에의 진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현재 15~64세 기준으로 52.8%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59.6%보다 7.1%p 낮다.

특히 대졸여성의 참가율은 57.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7.9%에 비해 20%p 이상 저조하다. 스칸디나비아 3개국 여성의 참가율은 거의 90%를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인력 활용이 아직도 미진한 상황이며 특히 고학력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선진국의 여성인력 활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반적으로 높고 고학력 여성이 특

히 높은 양상을 띠고 있음과 동시에 이들의 연령별 참가율 패턴이 남성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출산·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연령대 여성의 경력 단절이 우리와 달리 보이지 않고 있다.

### 한국의 'M형'과 선진국의 '컵형'

우리나라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참가율이 집중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이 시기가 지나가면 소폭 상승하는 'M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이 연령대의 하락폭이 줄어들어 최저점이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해당 연령대 여성의 결혼상태가 미혼인 것에 상당히 기인한다고 본다. M형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기업측의 출산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직업능력의 마모로 이어지며 여성들이 '괜찮은 일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저임금 직종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제공한다. 우리나라가 고급여성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이러한 M형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여성정책이 가장 앞선다고 평가받는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우리와는 달리 20~30대에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남성과 같이 상승하고 있는 유형을 보인다. 20대 전반의 참가율이 63.5%인 반면 30대 전반의 참가율은 83.7%로 20%p 이상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참가율이 20대 전반에 62.4%에서 30대 전반에 49.8%로 10%p 이상 낮아지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와 비교하여도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와 유사한 수준의 국민순소득을 보이고 있는 체코공화국과 비교하여 보자. 200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순소득은 1만5,090달러, 체

코공화국은 1만4,720달러였다. 2002년 체코공화국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0대 전반 여성의 참가율은 57.5%, 30대 전반은 73.9%로, 우리와 달리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15%p 이상 상승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상이 경제성장 단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가부장적인 이념에 의한 특수한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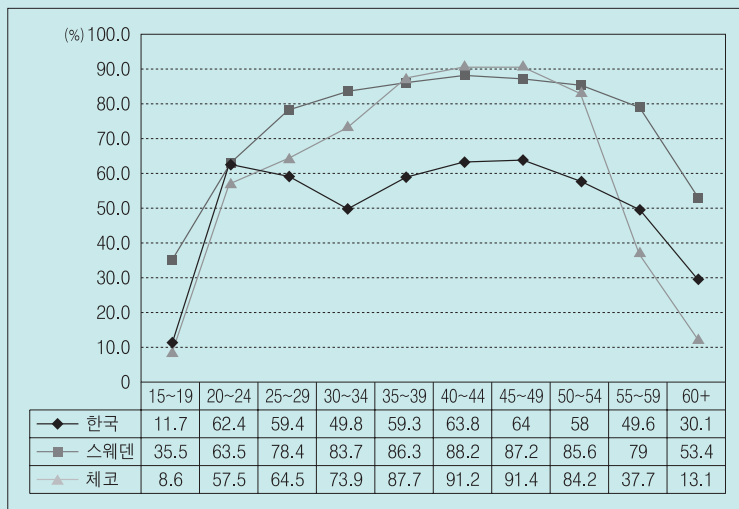
### 상위 직급에 여성 진출 많아

선진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와 경력단절의 감소는 여성들의 기업내 승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많은 여성들이 기업내 최고위직이나 정부나 국회 같은 공공 부문의 중요한 정책결정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스웨덴의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45.3%로 절반을 육박하고 있으며 행정관리직의 여성비율은 30%로, 우리나라의 13%, 5%와 비교하여 볼 때 천양지차를 느끼게 한다.

유엔개발프로그램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발표하고 있는 여성권한척도는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경제적 권한을 잘 보여 준다. 우리나라의 GDP는 2004년에 177개국 중 37위이지만, 국회의원 여성비율, 입법 및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 기술직 여성비율, 노동력 중 여성비율, 임금비 등으로 이루어진 여성권한척도는 78개국 중 68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권한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기업내 고위직의 여

〈그림〉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주: \* 2002년 기준

\*\* 스웨덴은 15~19세가 아닌 16~19세, 60세 이상이 아닌 60~64세의 참가율임.

자료: 국제노동기구(ILO) 인터넷 홈페이지(<http://laborsta.ilo.org>)

선진국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가 높은 것은 지난 수십년간 실시돼온 여성고용 평등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여성고용 평등정책은 동일임금법·'적극적 조치' 등을 통한 제도적 보장과, 노동시장 개입 프로그램, 직장가정의 양립 지원정책의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성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결혼·출산기와 무관한 경력의 지속적 인 개발과 고학력 여성의 높은 참가율, 주요 결정직 및 상위직에의 진출 등이 선진국 여성들의 여성인력 활용 실태라 할 수 있다.

선진국 여성의 노동시장 내의 지위가 이처럼 높은 것은 지난 수십년간 실시해온 여성고용 평등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물론 어떤 사회현상에 대한 원인은 대부분 복합적이어서 단일 요인을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정부의 고용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 각국 실정에 적합한 여성고용 평등정책 추진

여성고용정책은 그 성격상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법을 통한 제도적 보장이며, 둘째는 노동시장 개입 프로그램, 셋째는 직장가정의 양립 지원정책이다.

#### 법을 통한 제도적 보장

선진국의 초기 형태의 여성고용정책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금지정책이다. 특히 임금에 있어서의 차별금지가 가장 법제화되었는데, 이는 임금의 남녀격차가 남녀차별의 가장 큰 원인이면서 동시에 채용·배치·승진·해고에 이르는 노동시장의 전 과정에서 차별의 결과이기 때문이며 또한 계량화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동일임금법

(1970년)', 프랑스의 '동일임금법(1972년)', 룩셈부르크의 '동일급여법(1974년)' 등 1970년대에 '동일임금법'이 선진국에서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남녀동일임금법'이 남녀임금 격차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는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을 협소한 의미의 동일노동으로 제한함에 따라 이의 혜택을 보는 여성근로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직업별·산업별 분리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100항과 유럽연합(EEC) 지침 117항에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을 언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동일임금법을 동일가치에 대한 동일임금법으로 개정하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기회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으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극적 조치와 노동시장 개입 프로그램의 단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 조치'는, 여성의 낮은 지위는 과거 차별의 누적에 의한 것으로 단순히 현재의 평등한 대우만으로는 이의 시정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출발하고 있다.

흔히 적극적 조치를 단순한 할당제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할당제는 적극적 조치의 한 가지 형태에 불과하다. 적극적 조치는 '정부나 기업이 특정집단의 과소대표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모든 조치'와 이와 관련된 법이라는 점에서 합의를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정의와 운영방식은 국가나 시기마다 달라지는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다.

미국은 적극적 조치를 가장 먼저 제도화하였고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 나라이다. 미국은 1964년에 통과된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7편에 차별금지를 명문화하였고 1972년에는 '평등고용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정부조달계약기업은 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와 시간표'를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ttee)'에

제출할 의무가 생겨났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1973년 부터 시작된 AT&T(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사례는 적극적 조치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당시 최대 사기업인 AT&T는 성차별과 인종차별 등을 이유로 소송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AT&T는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의 하나인 남녀직종 분리완화 추세를 보면, 1972년에 비해 1978년에는 중간관리직 여성수가 네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남성 집중 직종인 외근 숙련기술직에서의 여성은 1972년의 38명에서 1978년에 1,928명으로 늘어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수반되었다.

AT&T 사례는, 적극적 조치의 도입이 법적 강제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기업과 여성 자신이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자발적으로 개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노동시장 개입 프로그램

비전통적 직업에 여성들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불평등이 성에 따른 직무분리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무분리가 노동시장의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도입된 것이다.

여성창업 지원정책이 직장내에서의 성차별과 실업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선진국들은 여성창업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구의 자립을 위해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은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때 드는 사회부조 비용보다 경미함을 고려하여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은, 단지 기혼여성이 계속 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라기보

다는 남녀 모두에게 직장만큼 가정도 중요하며, 가정에서의 남녀평등이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가치관이 포함된 정책이다.

이에 따라 남성들도 가사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자녀의 양육에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다. 1974년에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현재 이 제도를 사용하는 비율이 1973년의 3%에서 2001년에는 13.8%로 높아졌다.

휴직시 수당은 480일간 지급되며, 390일間は 부모수입의 80%가 지급되고 나머지 90일간 매일 9천원(SEK60)씩 지급된다. 480일의 수당지급기간은 부모가 240일씩 공평하게 나눠서 받지만, 휴가를 받은 어머니(또는 아버지)는 240일 중 180일까지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받도록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적어도 아버지가 60일은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아기가 출생하면 아버지는 10일간의 임시부모 휴가를 받을 수 있어 아이가 출생한 직후에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진국의 여성인력 활용실태와 고용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의 고용정책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의 효과를 계속 점검하여 국가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여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법제도의 수립과 함께 가족 및 사회의 평등 추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여성고용정책이 단지 여성의 지위향상이 목표가 아닌 가족 구성원의 행복도 같이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

## 특집 관련 연구 보고서

### 여성인력공급과 조세 재정정책 :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김현숙 외 1인, 2004,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의 여성노동공급/OECD 국가들의 보육지원 정책/여성노동공급과 교육비용/자녀보육관련 정책제안

###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여성경제활동 참가 변화 추이와 정책적 함의

전병유 외 4인, 2004, 한국노동연구원  
이론적 논의/여성노동의 국가별 특성과 변화/시장노동 (Market Work)에 대한 개입 : 노동시장정책/보살핌노동 (Care Work)에 대한 개입 : 양육지원정책

###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조용만, 2004,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차별금지 관련 국내법의 현황과 한계/고용차별금지에 관한 국제규범

###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이규용 외 3인, 2004, 한국노동연구원  
육아휴직제도의 의의와 전개 과정/육아휴직제도의 국제비교/육아휴직수급자의 특성 및 노동시장 성과 분석/육아휴직 활용 실태 분석

###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장지연 외 4인, 2004, 한국노동연구원  
모성보호의 필요성과 범위/모성휴가제도의 변화과정과 여성노동권/일본의 모성휴가제도와 재원/독일의 모성휴가제도와 재원/모성보호의 주요 쟁점과 정책방안

### 여성근로제도 시행 10년과 여성근로자 :

####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실태와 효과 분석

김종숙 외 3인, 2004, 한국여성개발원  
고용안정사업과 여성근로자/여성근로자와 고용보험/직업능력 개발사업과 여성근로자/여성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실태와 개선방안

### 관리직 여성공무원 보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미경 외 1인, 2004, 한국여성개발원  
이론적 배경/여성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및 인사정책/관리직 여성공무원 보직 현황/외국의 여성공무원 인사정책/관리직 여성공무원 보직관련 인식 조사 분석/관리직 여성공무원 보직개선 방안

### 기업의 여성인력교육 개선방안 연구

박성정 외 3인, 2004, 한국여성개발원  
기업의 여성인력개발 및 교육 동향/기업의 여성인력교육 실태 분석/기업의 여성인력교육 사례

###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 활성화 방안

양인숙 외 3인, 2004, 한국여성개발원  
여성 창업활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여성기업 및 여성창업의 현황/여성 전문인력의 창업활동 조사/국내외 여성 창업지원정책

### 여성노령인구의 정보화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이소연 외 1인, 2004, 한국여성개발원  
노령인구의 정보격차와 해소정책/여성노령인구의 정보화 현황/미래사회와 정보격차 해소/여성노령인구의 삶과 인터넷 이용/여성노령인구를 위한 정보화정책

###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장혜경 외 3인, 2004, 한국여성개발원  
한국 출산력 변화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출산관련 태도 및 의식조사 결과/외국의 출산 관련 정책 사례/저출산시대 국가대응전략

### 전문대학의 여성인적자원 개발 현황과 정책과제

#### -이공계열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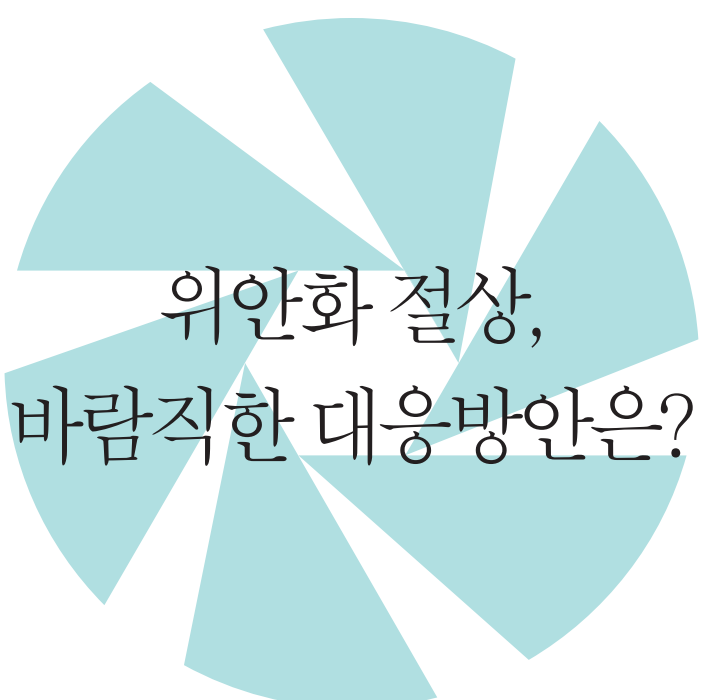
신선미 외 1인, 2004, 한국여성개발원  
전문대학 이공계의 여성인력 양성현황과 직업세계 이행 성과/전문대학 이공계 여학생의 교육경험

### 근로시간 단축이 여성취업에 미치는 영향

문유경 외 1인, 2003, 한국여성개발원  
근로시간 단축과 성평등/한국의 근로시간 단축 쟁점과 여성/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여성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여성 고용에의 효과

### 지식경제의 여성인력 수요와 직종개발

김영옥 외 2인, 2002,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인력의 수요 전망/지식서비스업의 여성인력 수요 실태 분석/지식경제의 여성 유망직종 개발



# 위안화 절상,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절상함과 동시에 고정환율제를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위안화 절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본다. <편집자註>

## 환위험 관리 노력 배가해야

**지** 난 7월 21일 중국정부는 위안화를 美달러화에 고정시키는 페그(peg) 제를 폐지하면서 위안화를 2.1% 절상하였다. 또한 통화제도를 달러화·엔화·유로화·원화 및 무역상대국들의 통화에 연동하는 복수통화 바스켓제로 변경하였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매우 큰 우리나라로서는 이로 인한 영향이 얼마나 클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실 2005년 상반기에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높은 9.5%를 기록하였고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서방의 위안화 절상 요구는 거세져 왔다. 따라서 2.1%의 절상 폭은 미국 등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안화의 추가 절상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아시아 국가의 통화, 특히 원/달러 환율의 절상 폭은 매우 컸는데 위안화만은 달러화에 가치가 고정되어 왔다. 그러므로 위안화의 절상은 비록 절상 폭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확보에는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위안화 절상이 원/달러 환율의 절상으로 이어질 경우, 그



강삼모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sammokang@dongguk.edu)

렇지 않아도 과도한 절상으로 고통받아 온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 복수통화 바스켓제 논의 부각

중국이 채택한 '복수통화 바스켓 페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단점으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통화 바스켓 페그제란 자국의 환율을 달러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주요국 통화에 가중치를 두어 페그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달러화의 가치가 갑자기 변할 경우 달러 페그제하에서는 자국 통화의 가치도 그대로 변하게 되지만 통화 바스켓 페그제하에서는 달러에 부여된 가중치만큼만 변하게 됨에 따라 달러화 가치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과, 무역상대국의 화폐가치가 변할 경우에도 자국 화폐의 가치가 일정비율 같이 변하게 되므로 무역경쟁력을 크게 상실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통화 바스켓 페그제를 실시하는 데 따른 문제점도 다양하다.

첫째, 고정환율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은 벗어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자국의 소비자 물가가 타국보다 높아서 구매력 평가설에 따라 평가절하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화 바스켓에 포함된 통화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경

-----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 자국 통화의 환율은 변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자국의 실질환율은 고평가 상태에 빠지게 된다.

만약 고평가 상태의 크기가 크고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 일시에 환율이 대폭 절하되어 금융시장의 혼란을 부를 위험성이 있다.

둘째, 통화 바스켓에 포함시켜야 할 통화와 그 가중치를 결정할 경우 어떠한 기준을 선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복수 통화 바스켓제 채택을 계기로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 국가들도 장기적으로 이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각국의 교역과 투자가 서로 간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 바스켓 페그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국 경제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통화 바스켓 페그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한 나라가 환율을 변경시켰을 경우 이웃나라의 무역경쟁력과 자본수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양국이 환율을 조정하기 전에 서로 협의를 거쳐야만 환율 절하를 경쟁적으로 남발하여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발생한 통화위기가 지역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각국의 협력이 중요하다.

### 자유변동환율제 틀 안에서 원만한 환율 조정을

제네바 국제관계대학연구원 위플로츠 교수(Wyplosz)는 지난 2001년 동아시아 통화동맹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아시아에서 통화 바스켓 페그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유변동환율제도는 양자 간 환율 변동성을 너무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화 바스켓 페그제가 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 통화 바스켓 페그제를 운용하는 데 따른 세부사항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만일 통화 바스켓 페그제에서 적절한 역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밴드 폭이 넓게 책정되었을 경우에는 통화 바스켓 페그제가 변동환율제와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밴드 폭을 좁히기 위해서는 역내에서 개입에 대한 규칙, 스와프 협정, 주요 통화인 달러·엔에 대한 환율 설정 및 운용 등에 있어서 한층 심도 있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통화 바스켓 페그제가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달러화에 기반을 두고 결정되는 환율 정책을 엔화나 유로화로 비중을 옮기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리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달러에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자국만 통화 바스켓 페그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를 나름대로 잘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환율제도를 도입해 학습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유변동환율제의 도입으로 인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시시각각 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결정됨으로써 환율의 단기 변동성은 커졌지만 통화위기의 가능성은 감소되는 등 자유변동환율제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환율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의 틀 안에서 원/달러 환율이 국내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완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2004년 말과 같이 원화 환율이 너무 빠르게 하락하여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복수통화 바스켓제 채택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이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나, 자유변동환율제 도입으로 통화위기 가능성 감소 등 경제 안정성 제고에 도움을 얻고 있는 우리로서는 굳이 새 환율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

는 속도조절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비록 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경제주체의 환변동 충격완화로 얻게 되는 혜택이 더 크다면 외환정책의 정당성은 확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의 경우와 같이 주변국의 통화가 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개입으로 인해 원화만 따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 환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재선에 성공한 후 弱달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에 대해 그린스핀 美FRB 의장도 동의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절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은 이미 다른 국가 통화에 비해 큰 폭으로 절상됐으므로 절상 속도는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절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및 세계경제의 활황세가 멈출 경우 우리의 수출신장세도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이후 원/달러 실질환율은 균형 수준에 비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장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절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원/달러 환율은 여러 가지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전망 자체가 매우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커져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자유변동환율제하에서는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마땅한 것이 없고 또한 무리하게 막는 것은 자유변동환율제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환율 변동성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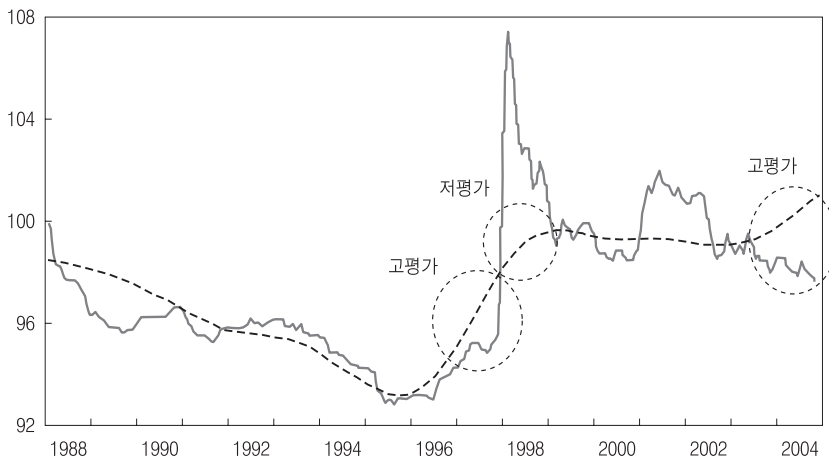
먼저 수출대상지역을 다변화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여 어느 정도의 환율절상은 감내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한 예상치 못한 환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위험 관리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을 살펴보면 일부 대기업이나 대형은행의 경우 환위험 관리에 나름대로 힘쓰고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는 환위험에 무

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소규모 금융회사와 개인 등을 대상으로 환위험에 대한 교육에 힘써야 하고, 각 경제주체들도 환위험 관리를 위한 비용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그림> 원/달러 실질환율과 균형실질환율 간의 괴리



주 : \* Edwards의 실질환율 고평가 분석법을 이용하여 작성되었음.

\*\* 점선은 균형실질환율이며 실선은 실질환율을 나타냄.

# 동아시아 통화협력 논의 주목해야

**중** 국 위안화의 환율제도가 바뀌었다. 중국의 새로운 환율제도는 소위 'BBC(Basket, Band and Crawl)' 형태로서, 어느 정도의 환율 유연성을 부여하면서 단기적으로 지나친 변동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균형으로부터의 이탈을 막는 장점이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 외에도 美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명목환율을 2% 절상하였다. 한편 미국은 이 조치를 유연한 환율제도로 가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평가하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노(Snow) 美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동안 對中 무역제재 법안 상정을 주도해온 슈머(Schumer) 美상원의원은 "절상폭이 작긴 하나 고무적인 첫걸음"이라고 언급하였다.

## 당분간 위안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듯

이러한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최근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목적하에서 중국 환율제도 변화의 배경과 의의 그리고 이 조치가 동아시아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두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yangdy@kiep.go.kr)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은 대외요인과 국내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대외요인은 무엇보다도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확대와 이와 관련된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가 중국 환율제도 변경의 중요한 원인이다. 미국의 對中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04년 1,619억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05년

5월 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33.5% 증가한 725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서 對中 무역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9.2%에서 2005년 2월 26.3%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위안화의 대폭적인 평가절상이 요구되는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평가절상 압력으로 이어졌다.

한편 9월 중순으로 예정된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을 겨냥한 외교적 산물일 가능성도 있다. 즉, 소폭의 위안화 절상을 통해서 환율 재평가 압력과 對美 통상 마찰을 완화시키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환율제도 변경은 자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였을 것이다.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압력 해소를 통해 경기 과열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이 필요했다. 즉, 경기 연착륙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더불어 외환정책(위안화의 재평가)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내부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 우리 수출에는 긍정적 영향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과 관련된 가장 큰 관심사는, 향후 위안화가 얼마나 유연(flexible)하게 움직일 것인가, 위안화 가치가 얼마까지 상승할 것인가, 혹은 상하 0.3% 밴드가 최적의 일일환율 변동폭인가, 아니면 밴드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 등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제도 운용 경험에서 나타나듯이, 고정환율제도에서 급격한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전환은 매우 어렵다는 데 기인한다. 즉, 보다 변동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 자유화 및 자본 자유화의 단계와 환율 운용이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데, 현재 중국의 자유화 단계를 고려할 때 급격한 환율 변동은 필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시장평균환율 제도하에서 우리 원화 환율의 변동성은 매우 낮았으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BBC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서도 환율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바스켓 제도하에서는 구성 단일통화의 변동성보다 바스켓 전체

의 변동성이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대부분의 바스켓 제도하에서의 환율 움직임은 美달러화의 변동성이 바스켓 전체의 변동성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이는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주요 경제발전전략으로 선택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환율변동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환율제도를 채택한 데 기인한 것이다. 이를 소위 'fear of floating'이라 한다. 이러한 현상이 중국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는데, 이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은 변동폭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위안화의 절상폭이 크지 않거나 향후 환율 운용에 큰 변화가 없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위안화 절상은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원/달러 환율을 절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달러 환율이 1% 절상되면, 우리 수출은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달러 환율은 0.66% 절상되나 우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환율제도의 변경은 동아시아 자본 흐름 및 통화·금융 협력 부문에서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 동아시아 환율제도 논의 예의주시해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분간 위안/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낮게 유지되겠지만, 향후 동아시아 환율제도 및 운용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은 아시아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운영, 'ASEAN+3' 환율제도 논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이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은 위안화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은 동아시아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운용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은 중국 외환보유고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 외환보유고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련된 명확한 자료는 없으나,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이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향후 복수 바스켓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유로화와 엔화 표시 자산이 현시점보다는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채택하였던 1998년 외환보유고의 자산 구성 중 75%가 달러화 자산이었고, 유로화폐 자산은 15%, 엔화 및 기타 자산은 10%였다.

중국의 바스켓 통화 가중치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중국 외환보유고의 유로화 및 엔화 비중을 명확히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인 유로화 및 엔화 표시 자산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달러화 수요가 감소한다면, 동아시아 주요국 외환보유고의 포트폴리오 변화도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중국 환율제도의 변경은 동아시아 통화협력 논의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동아시아 환율제도 논의는, 아시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정환율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지나친 달러 고정으로 인해 통화 및 만기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러한 불일치가 동

아시아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ASEAN+3'을 중심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통화 바스켓(Currency Basket)' 제도의 도입과 같이 달러화에 대한 지나친 고정환율제도를 지양하고, 유로화나 엔화의 영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환율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동아시아 환율제도의 개편에 있어 유럽과 같은 단일환율제도의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즉, 단일환율제도의 도입은 각국의 경기변동이 서로 다른 경우,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수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경제적인 영향력이 큰 중국이 복수 바스켓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명목적으로 통화 바스켓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동아시아 단일환율제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어떠한 논의가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향후 과제가 아닌가 한다. 한경비즈니스

# 국제자본의 움직임 주시해야

**지**난 7월 21일 중국정부는 자국의 환율제도를 기존의 美달러화 페그제에서 복수통화바스켓제로 전환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위안화의 對美 달러화 기준 환율은 기존의 8.2800위안에서 8.1100위안으로 약 2.1% 절상되었다.

현행 복수통화바스켓제하에서 위안화의 對美 달러화 환율 변동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일 기준환율의  $\pm 0.3\%$  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달러화 이외의 통화에 대해서도 기준환율에서 상하 일정 수준의 변동폭을 적용하고 있다.

## 경기과열 진정 및 인플레이 해소 위해 환율정책 동원

그동안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은 주요 선진국들의 對中 무역적자가 확대되면서 가열되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확대일로에 있는 경상수지 적자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전체 무역적자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 위안화 평가절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2004년중 미국의 對中 무역수지 적자는 1,619억8천만달러로 2003년에 비해 30.6%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3년 말의 GDP 대비 4.8%에서 5.7%까지 확대되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hspark@kif.re.kr)

2005년 5월 19일 미국정부는 중국정부가 향후 6개월 이내에 위안화 평가절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환율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의 경고성 발언 직후인 5월 20일 홍콩 금융당국은 美달러당 7.80홍콩달러에 묶여 있는 고정환율을 7.75~7.85홍콩달러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허

용하였다. 일부에서는 홍콩 금융당국의 조치가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중국과는 달리 아시아 국가 대부분의 통화가치가 달러화에 대해 절상된 점도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부추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전년 대비 13.2% 하락하였으며 싱가포르·태국·대만의 통화가치도 같은 기간에 달러화 대비 1.8~6.7% 상승하였다.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일본의 엔화도 2004년 중에 달러화에 대해 절상 추세를 지속하면서 연말에 전년 대비 4.2% 상승하였다.

중국 내부의 거시경제 상황도 위안화 평가절상의 불가피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중국경제는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및 직접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인해 외환보유액 급증을 경험하고 있다. 2000~2004년 중 중국의 외환보유액 증가율은 연평균 38.8%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들어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고 있다. 외환보유액 급증은 통화량 확대로 이어져 인플레이 압력을 증대시키고 과도한 은행대출을 유도하면서 경기과열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 증대에 따른 경기과열 고리를 끊기 위해 위안화 절상 압력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위안화 평가절상은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위안화 방어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대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03년 하반기부터 중국정부는 경기과열을 우려하여 통화금융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2004년 6월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2004년 이후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는 열 차례에 걸쳐 연방기금금리(FFR)를 25bp씩 인상하여 2005년 8월 현재 3.5%를 기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향후에도 FRB가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연말에 FFR이 4.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달러화에 대한 페그제를 고수할 경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여 대폭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정부가 대폭적인 금리 인상 등과 같은 강도 높은 금융긴축정책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강도 높은 금융긴축은 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은행산업의 부실화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은행산업 위주의 금융구조하에서 은행의 부실화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체제적 위험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기업부실의 가속화 및 실업증가 등을 통해 자칫 사회불안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번 위안화 평가절상 조치는 통화정책만을 이용하여 경기과열 및 인플레이 압력 증대에 대응하기보다는 환율정책과의 정책혼합을 통해 당면 경제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 위안화의 추가 소폭 절상 가능성 있어

이번 위안화 절상폭은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시장의 기대환율로 해



석할 수 있는 선물환율(역외 NDF 환율 기준)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중국정부의 복수통화바스켓제 채택 이전까지 약 5% 정도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위안화 절상폭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위안화에 대한 투기자본 유입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위안화의 추가절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위안화의 추가절상을 예상한 투기자본이 환차익을 노려 중국에 더 유입될 경우 외환보유액 증대에 따른 경기과열이 더욱 악화되어 현재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위안화 평가절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국경제가 경착륙하게 되면 중국뿐 아니라 對中 무역비중이 높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위안화 절상조치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미국의 對中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번 위안화 평가절상이 소폭에 그침에 따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이번 위안화 평가

절상을 통해 미국의 압력을 완화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이 미국 총 무역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안화가 10% 절상되면 달러화 가치(무역가중치 기준)의 하락은 1%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 수출품 대부분이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율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소폭의 위안화 절상만으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위안화의 대폭적인 평가절상이 요구된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 가능한 수준인 GDP의 2~3%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달러화의 가치가 30% 정도 하락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중국정부의 추가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대폭적인 위안화 추가절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위안화 평가절상은 수출부진에 따른 중국기업의 수익악화로 이어져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입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통해 농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큰 폭의 위안화 평가절상은 중국에 대한 투자비용 상승을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던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를 유발할 위험도 있다.

### 국제자본의 급격한 유출 대비 필요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경제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시장으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中 직접투자 규모도 2004년 말 현재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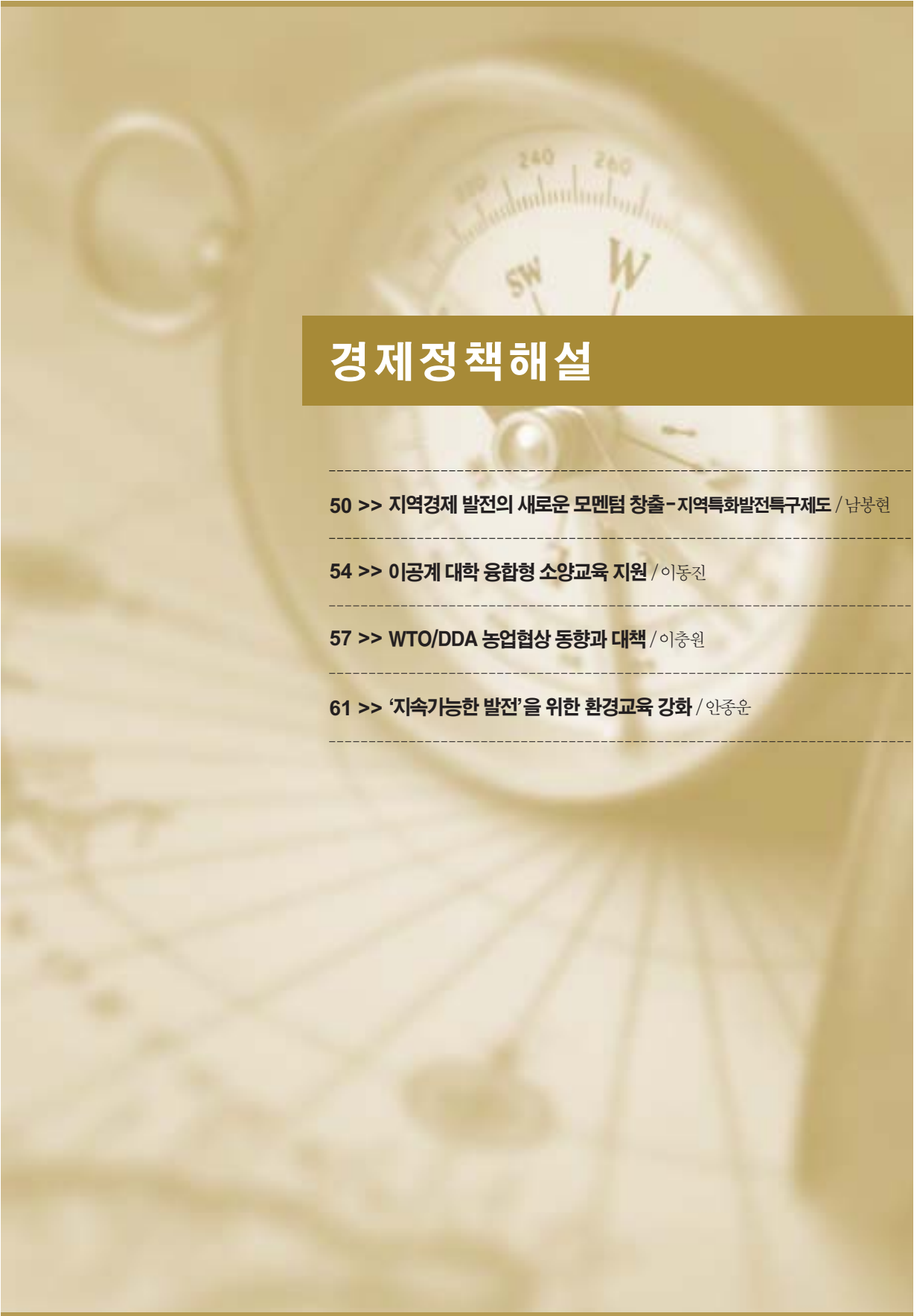
억6천만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37.8%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추가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은 중국경제의 연착륙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나라 수출의 큰 폭 감소를 초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중국에 진출해 있는 현지기업의 경우 주로 원·부자재를 제조·가공하여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이므로 경영여건이 중국보다는 미국·유럽 등 수출대상국 경제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도 소폭의 위안화 추가절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7월 중국정부가 위안화의 對美 달러 환율을 2.1% 절상하였을 때 이미 목격한 바 있다. 당시 국내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와 함께 동반 하락하였으나 그 영향은 매우 미약하였으며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다. 다만 중국 리스크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역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국제자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국제자본의 성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만약에 있을 국제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한·중 간 기술격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비교우위 개념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때 對中 수출증가가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및 소비재 산업에서 중국의 고소득층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여 활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경제정책해설

---

50 >>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 남봉현

---

54 >> 이공계 대학 융합형 소양교육 지원 / 이동진

---

57 >> WTO/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책 / 이충원

---

61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 안종운

---

#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

##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남봉현**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기획과장  
(nambh@mofe.go.kr)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개발이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해 왔다. 하지만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세방화(세계화+지방화, Glocalization)’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적 발전전략의 효용성은 급속히 체감되고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국정운영 기조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천명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비롯해 지역혁신체계·혁신클러스터·기업도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표방하는 새로운 정책대안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와 다른 거버넌스(Governance) 양식을 요구한다. 즉, 지역의 중요한 현안들을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과거의 문제해결 방식을 탈피해 지방정부·주민단체·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허용된 자율성의 범위 내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지배적인 패턴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지역의 특성과 독창성을 살

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의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이하 ‘지역특구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 지역 특색 반영한 경쟁력 있는 사업 추진

21세기에 접어들어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견인하는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지역개발에서 기업가적 마인드가 중시되고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가 도입되었다.

국민소득 2만달러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이 필수적인바 우리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의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발전전략’ 위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03년 6월 대통령 대구발표를 통해 지역특구제도를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이어 2004년 3월 22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9월 23일부터 지역특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역특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지역개발정책은 획일적인 제도의 적용 때문에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사업의 추진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각종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국민소득 2만달러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이 필수적인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의,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지역특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30개 이상의 특구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지역특구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특구 지정과 연계된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은 배제되었다.

왜냐하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규제특례 또는 규제 권한 이양과 재정지원이 동시에 제공되는 것은 지나

친 특혜 소지의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키 위한 것이다.

둘째, 지역특구 지정 자치단체는 특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자율적으로 조달하도록 하였다.

지역특구제도가 재정·세제 지원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기존 예산이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의 틀 안에서 특구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거나 자치단체가 특구라는 유인을 가지고 외자·민자유치 등 다양한 재원조달 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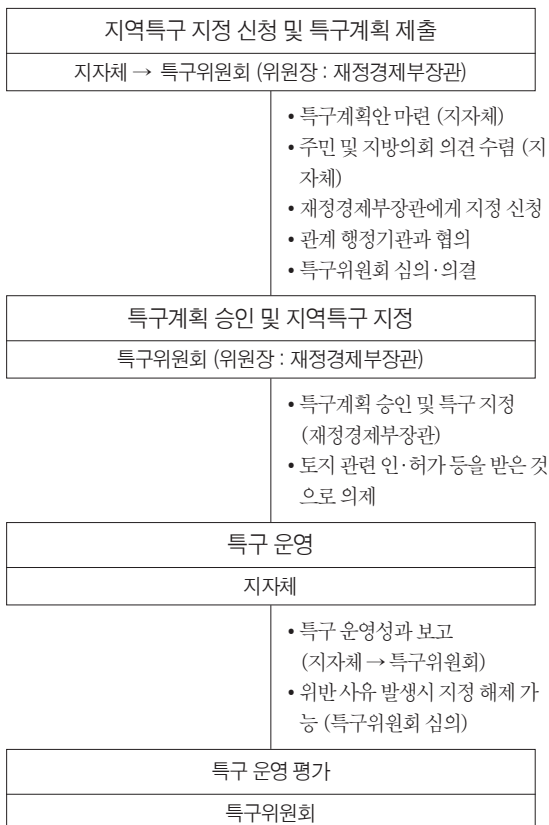
셋째, 지역특구제도는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있는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강화라는 효과와 함께 과거에 시·군·구가 중앙부처와 개별적으로 규제를 협의하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한다.

2004년 12월 30일 제1차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이후 2005년 6월 28일까지 총 4차에 걸쳐 24개 지역특구가 지정되었으며 하반기에도 10~20개 지역특구를 추가 심의하여 올해 안에 30개 이상 지역특구를 지정하여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별 특화사업 내용은 지역특구 홈페이지([www.sezone.go.kr](http://www.sezone.go.kr))에 게재되어 있다.

## 규제특례의 지속적 확대 추진

지역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역특구 지정 신청을 하면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특구위원회는 규제 소관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구위원회에 지역특구 지정 신청건을 상정하

〈그림 1〉 지역특구 지정 신청절차(자치단체)



기 이전에 각 규제특례 허용 여부 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관계부처 국장급을 중심으로 실무위원회(토지분괄위원회·총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역특구 지정 신청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구 지정 신청절차와 지역특구위원회의 지역특구

지정절차는 각각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규제특례는 크게 개별법상 규제특례, 토지이용 규제특례, 권한이양에 관한 규제특례로 나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구사업을 위해 이들 규제특례 중 필요한 특례를 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하면 특구 지정과 함께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먼저, 개별법상 규제특례에는 「초·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농지법」, 「산림법」 등 19개 법률, 35개 규제특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규제 완화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도로통행제한 규제 등 규제 강화도 있다.

둘째, 토지이용 규제특례는 「초지법」, 「산지관리법」 등 13개 법률, 26개 규제가 포함되며 이들 규제에 대해서는 특구 지정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로 지정되면 일괄하여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셋째, 권한이양 규제특례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 가공처리법」 등 4개 법률, 8개 규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규제에 대하여 특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허가 권한을 주거나, 규제내용을 정할 수 있게 위임하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지역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특구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 초 지자체 등의 요구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25개 사항의 규제특례를 추가 신설하고, 지정관련 절차도 개선하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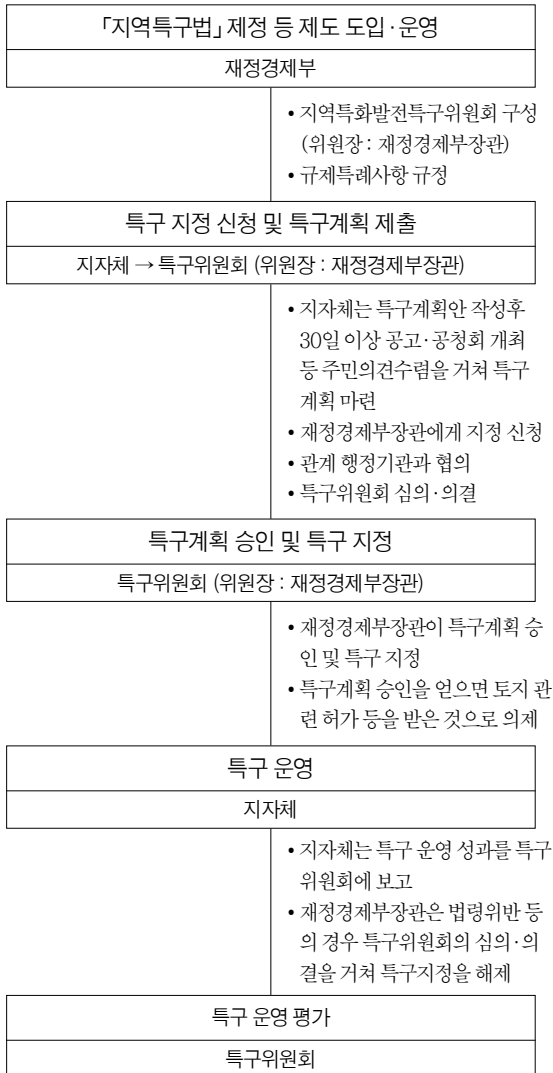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자체가 지역특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특화사업의 종류가 대폭 확대되며, 지정 관련 절차도 간소화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개정안 준비작업에서 지자체가 구상 중인 특화사업을 사전 조사하여 이에 맞는 규제특례를 발굴하는 상향식(bottom-up)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법 개정시 관련 지자체의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사업내용은 지역특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지정된 특구사업이 소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 나가고, 특구의 브랜드 가치를

정부는 지역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특구를 활성화하고 특구지정 관련 절차의 개선을 위해 특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지정된 특구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 나가고, 특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평가·지원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높일 수 있는 사후 관리를 위하여 특구 지자체별로 산·관·학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체 평가·지원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그림 2〉 지역특구 지정절차(지역특구위원회)



평가지원단은 계획 대비 실적 평가, 특구 성과 제고 방안,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강구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 추이 및 환경에 미친 영향 등도 종합점검하고 부작용 발견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특구위원회는 지자체 자체 평가결과와 특구운영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 고려하여 특구운영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지역의 특성을 도외시킨 채 지난 수십년 동안 추진해 온 지역개발 정책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는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등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에 의해 타 지역과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를 정착시켜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키 위한 제도가 지역특화발전제도로 할 수 있다.

지역특구제도가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규제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등 전향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제도 운영의 성패는 제도 운영의 주체인 담당 공무원과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형성 및 그 제도 운영의 사후관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특구가 단지 지역특구의 개념을 넘어 세계 속의 특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는 중앙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지역 간 네트워크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의한 끊임없는 새로운 정보창조와 지역 간 정보교류 속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특구사업에 대한 고부가치화 및 지적재산 보호대책 방안 등을 꾸준히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이공계 대학 융합형 소양교육 지원



**이동진**

과학기술부 인력기획조정과장  
(dongjin@most.go.kr)

**과** 학기술 경쟁력이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좌우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숙련의 질, 인력의 질을 뒷받침할 과학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지식기반경제는 대량생산방식과는 달리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성격의 기술에 기초하므로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기존의 산업영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산방식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의 개별 국가들에서는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노동기구(ILO)·유럽연합(EU) 등의 국제적 조직에서도 인력개발을 핵심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추세를 보더라도 우수한 인력의 확보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고, 우수 과학기술인력 확보 여부가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중장

기 과학기술인력수급분석’ 보고서(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경대학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공계 졸업생 비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수 인력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공존하고 있다. 이공계 졸업생 비율은 38.4%로 OECD 평균인 28.8%보다 크게 높으며, 이공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스웨덴·핀란드·독일·일본·이탈리아 등 제조업 강국들과 비교해 보아도 크게 높은 상황이나, 이학계열의 비율은 평균 수준보다 낮다(〈표 1〉 참조).

## 우수 인력의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공계 졸업생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최근 대학 입학자원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4년 대학 신입생 경쟁률의 경우, 이학계열 4.4 : 1, 공학계열 4.7 : 1로 다른 계열에 비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 충원을 측면에서도 이공계열은 다른 계열보다 낮았다.

또한 이공계열 대학 휴학생 비율의 경우 이학계열은 31.0%, 공학계열은 39.0%로 나타나 다른 계열에 비해 높으며, 특히 공학계열의 경우 가장 높은 휴학생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이공계, 특히 공학계열의 경우 남학생의 비중이 높아 군복무를 위한 휴학생이 많은 것은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영·경제·법률·언론·문화 등의 기본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융합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이공계 분야 학생들이 기술경영 마인드와 기업가 정신을 함양한 인재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이공계 입학생들의 질적 수준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우수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 기피로 인해 이공계열의 성적하락 정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개 주요 대학의 1994년도와 2003년도 수능점수를 비교한 결과 2003년도 입학생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다.

이공계열에 입학하였던 우수 학생들이 안정적 취업과 고수입이 보장되는 의대·한의대·약대로, 우수 여학생의 경우 안정된 취업이 보장되는 교육대학으로 진학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수 인적자원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임금수준의 격차를 제시하고 있다. 공학계열의 경우 초기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경력이 올라가면서 임금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학계열의 경우 경력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초기 소득이나 임금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의약계열의 경우 초기 소득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력 증가에 따라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우수 학생들이 의약계열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긴요

이공계 졸업생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대학 졸업생 평균보다 더욱 길어지는 추세이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대졸자 전체의 평균 소요기간은 6.89개월인 데 비해, 자연계열 및 공학계열 졸업생의 평균 소요기간은 각각 8.02개월, 7.32개월로 인문사회계열(6.82개월), 사범계열(6.89개월), 예체능계열(5.39개월), 의약계열(3.62개월) 졸업생에 비해 길게 나타나고 있다(〈표 2〉 참조). 특히 우수 인적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의약계열은 임금·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일자리 취득기간에서도 훨씬 짧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우수 인적자원이 이공계열을 기피하고 의약계열을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학전공자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이 높다. 이 점에서, 우수 학생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 나갈 핵심 이공계 인력의 확보는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수요에 비해 과다하게 양성되고 있는 이공계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을 완화하고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 IMD(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 국제경영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표 1〉 주요 국가 고등교육기관의 이공계열 졸업생 비중

(단위 : %)

|         | 공학계열 | 컴퓨터 | 이 학 계 열 |     |        |      |
|---------|------|-----|---------|-----|--------|------|
|         |      |     | 생명과학    | 물리학 | 수학및통계학 | 소계   |
| 한국      | 27.4 | 3.5 | 2.1     | 3.5 | 1.9    | 7.5  |
| 스웨덴     | 21.7 | 3.8 | 2.7     | 2.3 | 0.5    | 5.5  |
| 핀란드     | 21.6 | 3.4 | 1.4     | 2.0 | 0.6    | 4.0  |
| 일본      | 21.2 | 4.7 | —       | —   | —      | —    |
| 오스트리아   | 18.0 | 2.7 | 3.6     | 3.0 | 0.7    | 7.3  |
| 슬로바키아   | 17.9 | 4.0 | 2.4     | 2.4 | 0.5    | 5.3  |
| 독일      | 17.6 | 3.3 | 3.4     | 5.0 | 1.7    | 10.1 |
| 이탈리아    | 15.2 | 0.7 | 3.3     | 1.6 | 2.0    | 6.9  |
| OECD 평균 | 13.3 | 3.9 | 3.4     | 1.7 | 6.6    | 11.7 |

주 : 일본의 자연과학 전공 졸업자 비중은 컴퓨터 전공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4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수준이 2005년 60개국 중 52위(2004년은 59위)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 수요에 맞추어 대학에서도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이공계 인력 양성 시책이 필요하다. 핵심 이공계 연구개발인력(통상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이 필요하고, 기업 또는 사회진출을 목표로 하는 다수의 이공계 인력에 대해서는 기업과 사회 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충실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기업 또는 사회조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들이 회사나 조직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이를 때를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대학시절에 연마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진출 후 계속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공계 인력양성시책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대학들이 이공계 대학생을 위하여 기업 또는 사회진출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이공계 대학생을 위한 융합형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공계 대학 융합형 교육지원사업 추진

정부는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영·경제·법률·언론·문화 등의 기본 소양교육을 강

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융합(Fusion)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진출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06년에는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며 타 대학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융합·소양 교육용 콘텐츠 개발, 교육기자재 구입, 이공계 교육 다양화 방안 연구 등을 위해 대학당 3억원씩 3~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융합·소양 교육을 강화하게 되면 앞으로 이공계 분야 학생들이 기술경영 마인드와 기업이 정신을 함양한 인재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공계 학사급 인력의 진로를 다양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융합형 교육의 시행은 대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능력을 함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업 또는 사회조직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본능력을 배양시켜 수요자의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공계 출신의 확대된 진로의 예로 ①기술마케팅 전문가 ②생산·현장 관리자 ③금융·회계 전문가 ④과학기술 전문 언론인 ⑤벤처캐피털리스트 ⑥변리사·변호사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공계 대학으로 하여금 인문·사회계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과학기술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표 2〉대학 졸업자의 전공별 취업 소요기간

|        | 표본수<br>(천명) | 이행기간(개월) |        |        |        |         |         |       |      |            |
|--------|-------------|----------|--------|--------|--------|---------|---------|-------|------|------------|
|        |             | 졸업전      | 0~2개월  | 3~5개월  | 6~11개월 | 1~2년 미만 | 2~3년 미만 | 3년 이상 | 평균   | 취업 미경험률(%) |
| 전 체    | 1,294.1     | (20.8)   | (33.6) | (16.2) | (8.3)  | (11.9)  | (4.3)   | (4.9) | 6.89 | 10.0       |
| 인문사회계열 | 532.0       | (20.1)   | (32.4) | (17.2) | (9.0)  | (12.5)  | (3.9)   | (5.0) | 6.82 | 10.8       |
| 자연계열   | 165.7       | (20.7)   | (26.5) | (19.7) | (11.0) | (12.0)  | (4.3)   | (5.8) | 8.02 | 10.3       |
| 공학계열   | 352.7       | (24.9)   | (29.0) | (17.2) | (7.3)  | (12.1)  | (3.8)   | (5.8) | 7.32 | 11.0       |
| 의약계열   | 44.7        | (10.9)   | (62.1) | (15.3) | (1.5)  | (4.3)   | (4.2)   | (1.8) | 3.62 | 4.4        |
| 예체능계열  | 102.9       | (28.0)   | (38.2) | (13.3) | (4.2)  | (8.7)   | (2.6)   | (5.0) | 5.39 | 9.8        |
| 사범계열   | 96.2        | (7.2)    | (51.1) | (4.7)  | (11.2) | (14.2)  | (10.0)  | (1.7) | 6.89 | 4.1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004. 5. 이병희(2005) 재편집

# WTO/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책



**이충원**

농림부 농업협상과 서기관  
(cwlee@maf.go.kr)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관세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이 추진되어 왔다.

제7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쿄라운드(1973~1979년)까지는 주로 공산품에 대한 관세감축 위주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년)에서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감축뿐만 아니라, 농산물·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등 그간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도 협상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 농업 분야, DDA 협상 성공의 관건

농업의 경우 공산품 등 여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늦게 다자간 무역체제에 편입되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에 와서야 비관세장벽을 관세화(tariffication)하고 이를 감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또한 농산물 교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관세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보조금도 별도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업이 우루과이라운드에 와서야 다자간 무역협상에 편입됨에 따라 농업 분야의 교역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은 아직도 발전의 여지가 있으며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의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농업은 환경보호·식량안보·농촌개발 등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 나타낼 수 없는 고유한 기능, 즉 '비교역적 관심사항'(Non Trade Concerns)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고유한 역할을 보호할 필요성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협상의 관건은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와 각국 농업의 고유한 역할 보호와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농업 분야는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국의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다. 그간 수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2004년 8월 1일 협상의 기본골격(Framework)이 마련되었으며, 올해 들어 동 기본골격을 바탕으로 관세 및 보조금의 구체적 감축방식을 담은 세부원칙(Modality)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점차 열기를 띠어가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13일에서 18일 동안 홍콩에서 제6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동 각료회의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오는 9월 이후부터 협상이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부터 WTO 회원국 간 ‘분석 및 정보교환’ 작업을 추진하면서 농업 분야의 자체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후 2001년 DDA 협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회원국과 주요 협상그룹 간 논의를 거쳐 2004년 8월 1일 WTO 일반 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을 채택하여 협상 진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지난해 8월 기본골격 채택으로 협상 진전의 계기 마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의 토대 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 아래 2001년 11월 DDA 협상이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출범하였다. 도하 각료선언은 당초 DDA 협상 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선언에 따르면 2003년 3월까지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을 위한 세부원칙(Modality)을 만들고 2003년 9월까지 각국이 세부원칙에 따라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를 제출한 후 2004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 DDA 협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이전부터 자체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1997년부터 WTO 회원국

간 ‘분석 및 정보교환(Analysis and Information Exchange)’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0년부터 농업협상이 개시되었고 DDA 협상이 출범함에 따라 DDA 협상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특히, ‘분석 및 정보교환’ 단계를 거치면서 농업협상의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인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제20조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행기간이 종료하기 1년 전에 농업협상을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 3월 하빈슨(Harbinson) 당시 농업협상 의장은 세부원칙 합의를 위해 비교적 완성된 형태의 초안을 마련하고 타결을 시도했으나 관세 및 보조금 감축 방식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Cancun)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중간단계로 기본골격만이라도 합의하는 방안을 시도하였으나 이 또한 성공하지 못하였다.

2004년에 들어서면서 DDA 협상 진전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 간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초에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7월 말까지 우선 기본골격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후 회원국과 주요 협상그룹 간 논의를 거쳐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을 채

### 〈표〉 기본골격 주요 내용

관세 및 보조금 감축 구체적 수치 등 회원국 간 입장이 상반되는 내용은 후속 협상 과제로 넘기고 관세 및 국내보조 감축방식, 개도국 우대 강화 등 기본골격만 합의

#### (1) 시장접근 분야

-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으로 분류하여 감축하되, 높은 관세는 더 많이 감축
  - 관세구간의 수, 감축방식 등은 추후 협상, 관세상한은 추후 평가
- 민감품목을 인정하였으나, 관세감축과 TRQ 증량을 연계하여 의무부과
  -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감축률, 이행기간 등 우대를 주고, 개도국 특별품목(Special Product)은 보다 많은 신축성 부여(구체내용 추후 협상)

#### (2) 국내보조 분야

-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생산 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을 ‘무역왜곡보조’로 규정하고 이를 모두 합한 총액을 감축(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
  - 이행 초년도와 후속 이행기간 동안 무역왜곡보조 총액은 80%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생산제한시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새로운 블루박스를 도입하고, 블루박스 보조금 지급한도를 농업 총생산액의 5%로 규정

#### (3) 수출경쟁 분야

- 우리나라 등이 이용하고 있는 개도국 수출 물류비 지원은 현행대로 인정

택하였고, 당초 협상 시한을 넘겨 2004년 말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하고, 제6차 WTO 각료회의를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004년 8월 1일 채택된 기본골격은 관세 및 보조금 감축 관련 구체적 수치 등 회원국 간 입장이 상반되는 내용은 후속 협상과제로 넘기고 관세 및 국내보조금 감축방식, 개도국 우대 등 쟁점에 대한 협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골격은 그 내용에 모호한 규정이 많았음에도 향후 협상 진전의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였다.

### 관세감축공식과 민감품목의 신축성 문제 등에 대한 합의 시급

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 채택 이후 2005년 7월 말까지 총 10여 차례의 농업협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2005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소규모 각료회의, 5월 파리 OECD 각료이사회 계기 소규모 각료회의, 7월 중국 다롄(大連)에서의 소규모 각료회의 등 각료급 회의도 잇달아 개최되어 협상 진전을 위한 각료급에서의 정치적 의지 표명도 있었다.

지난 2월 그로서(Groser) 농업협상 의장은 올해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을 타결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올해 7월까지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2005년에 들어오면서 그간 비교적 입장 표명을 자제했던 미국과 EC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개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었으며, 미국과 EC의 주도적 역할하에 케언즈(농산물 수출국 그룹), G20(수출 개도국 그룹), G10(우리나라를 포함한 농산물 순수입국 그룹) 등 주요 그룹 간 공조 및 이합집산도 가시화하였다.

그로서 농업협상 의장은 지난 6월 27일 협상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간의 농업협상을 평가하고 올해 7월 말까지 합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로서 의장은 동 보고서에서 관세구간 수, 구간경계, 관세감축공식과 민감품목의 성격, 국내보조금 감축방식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 우선 합의할 것을 제안하

였다. 또한 7월 12일 다롄 소규모 각료회의시 농산물 수출국 그룹인 G20가 시장접근 분야의 핵심쟁점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지난 7월 말에 이루어졌다. 지난 7월 말에는 농업협상 관련 주요국 비공식 회의, WTO 무역협상위원회 및 일반이사회가 연달아 개최되었다. 그러나 수출입국 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당초 목표와는 달리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우선 7월 21일에서 26일간 개최된 그로서 의장 주재 주요국 비공식 회의에는 미국·EC·브라질·인도·일본·한국 등 15개국 정도가 참가하여 핵심쟁점인 관세구간 수, 구간경계, 구간내 관세감축방식, 민감품목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수출입국 간 입장 대립이 재연되었다. G10·EC 등 농산물 수입국 측은 관세감축공식과 민감품목 모두에게 신축성을 부여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미국·칠레 등 수출국들은 “신축성은 관세감축공식이 아니라 민감품목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하였다.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일본이 감축대상보조(AMS)를 추가 감축할 의사를 시사하는 등의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EC가 미국을 겨냥하여 새로운 블루박스 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EC를 겨냥하여 기존 블루박스 기준도 강화할 것을 주장하여 팽팽히 맞섰다. 참고로 블루박스란 1992년 미국과 유럽(EU)의 ‘블레이하우스 협정’을 통해 도입된 허용보조로서, 미국의 차액지불제도와 EU의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을 허용하기로 한 것을 일컫는다.

7월 28일 개최된 WTO 무역협상위원회에서 그로서 의장은 그간의 DDA 농업협상 진전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 의장은 “DDA 농업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나 정치적 결단이 있으면 협상 진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협상 진전의 관건으로 관세감축공식, 민감품목의 신축성 문제, 감축대상보조(AMS) 최대 사용 3개국(EU·일본·미국)의 처리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협상의 목표수준, 즉 관

DDA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농업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의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협상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특히 9월 이후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 진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세감축공식·민감품목 등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쟁점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이다.

세와 보조금 감축폭을 크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U는 농업협상 각 분야 간 균형된 진전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스위스 등은 관세상한 도입 반대 입장과 각국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신축성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7월 29일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그로서 농업협상 의장 후임으로 크로포드 펠코너(Crawford Falconer) 뉴질랜드 駐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선출하였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파스칼 라미(Pascal Lamy) 차기 WTO 사무총장의 인사도 있었다.

### 9월 이후 농업협상 급진전 전망

당초 DDA 농업협상은 올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중간단계로서 7월 말 세부원칙 초안 마련을 추진하여 왔으나, 초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협상 진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에서는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협상 기간 중 미국·EC 등 각국 대표들은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점에 실망감을 표명하면서도 “현 상황이 위기상황은 아니며, 오히려 협상이 늦어진 만큼 9월 이후에는 정치적 결단을 준비하고 보다 밀도 있고 집중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포트만(Portman) 미국 무역대표(USTR)는 “CAFTA(미국과 중미국가 간 FTA) 비준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앞으로는 DDA 협상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9월 이

후에 농업협상이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9월 이후 협상 일정은 8월 휴가기간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에 대해 선진국은 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개도국은 평균 24%, 품목별 최소 10%의 관세를 감축하였다(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 유지). 그러나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보다는 더 큰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구조조정 노력이 한창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급속한 농산물 시장개방은 우리 농업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의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협상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특히 9월 이후 주요쟁점에 대한 협상 진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세감축공식·민감품목 등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쟁점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협상 결과에 따른 전반적인 부담 수준을 염두에 두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관세상한 설정 저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세감축과 민감품목 신축성 확보를 위해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G10·G33(개도국 특별품목 그룹) 등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 추진 및 쟁점별 공조 세력 규합을 통해 우리의 관심사항을 협상과정에 보다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품목·정책별 영향분석을 정밀하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농민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 결과를 협상 전략에 반영해 가며, 협상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국내대책을 탄력적으로 수정하는 등 유연하게 협상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안종운**

환경부 민간환경협력과 서기관  
(ahn9838@me.go.kr)

46억년 전 태어난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지니고 있는 별이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최근 100여 년 동안 지구는 환경적으로 많이 훼손되었다.

특히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 CFC(Chlorofluoro carbons) 등의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 산업폐수 및 하수 증가로 인한 수자원과 해양오염,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물 사용량의 급증과 지역적 편재에 따른 물 부족 국가 속출, 열대림 파괴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감소, 이상 기후에 의한 심한 가뭄의 장기화 및 지나친 경작과 삼림의 파괴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사막화 현상 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 환경교육은 환경문제 해결의 최우선 전략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발 추진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였고 이제는 세계 12위의 무역 대국으로 자리잡았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환

경문제도 서서히 사회적 차원에서 우려의 눈길을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추진해 온 환경정책의 주요 목표는,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되었던 하천의 수질 개선, 대도시와 공업지역의 대기질 개선, 산업 및 생활 쓰레기의 안전한 처리 등이었다. 이제는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문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

최근 환경정책의 주요 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국토환경 보전,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 등이다.

그러나 아직도 간척사업, 도로·철도 건설, 댐 건설 등 국토의 개발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개발주체와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계속하여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생활·생산활동 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발생과 공공기관의 행정계획이나 민간기업의 국토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이거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파괴 및 오염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능력, 삶의 방식을 교육을 통해 서로 공유할 때 경



제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교육이 환경문제 해결의 최우선 전략으로 주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환경교육의 목적은 ①사람과 자연이 모든 면에서 서로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②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가치·태도·기술 등을 학습하여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치관을 형성토록 하며 ③환경문제의 해결 과정에 대안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문화·예술과 접목된 감성적 환경교육 실시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학교와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중·고등학교에서 각각 ‘환경’, ‘생태와 환경’ 과목을 개설하여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중학교에서의 ‘환경’ 과목 선택비율은 12.9%이고, 고등학교에서의 ‘생태와 환경’ 과목 선택비율은 27.3%이다.

한편, 초등학교에서는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장과 교사의 의지에 따라 실시된다.

정부는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985년부터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현

환경교육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능력, 삶의 방식을 공유할 때 경제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각종 체험학습과 지도자 워크숍, 환경교육교재 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등 환경교육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제 매 2년마다 유치원 13개,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32개 학교를 환경보전시범학교로 변경·지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범학교에서는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환경보전을 위해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연구·활동하도록 하고, 시범학교에서 연구된 내용과 활동실적은 연구보고회 등을 통해 다른 학교에 확산시키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크고 작은 민간단체(약 1천여개의 단체로 추정)에서도 셋방이나 습지·갯벌 등의 탐사활동, 대기·수질오염 측정 등 조사활동, 수목원이나 환경기초시설 등 견학, 철새기행, 청소년 환경캠핑 등 환경 관련 체험 교육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청소년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연간 8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3만7천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또한 환경교육 및 환경 전문가 400명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단에 구성된 전문가가 학교·기업·군부대 등의 방문을 통해 지난해에 36만명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학습기자재를 탑재한 대형차량으로 꾸며진 '이동환경교실'을 운영하여 환경교육학 전공 교사가 연간 4천여 명의 초등학생을 교육하였으며, 한강에 설치한 생태학습장에서 연간 3천명 이상의 청소년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부터 일선 학교의 환경담당교사와 민간단체의 환경교육 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환경교육 워크숍'은 당초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 연 4회로 대폭 확대하였다.

한편 정부는 일선 학교와 민간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소재로 구성된 환경교육 교재의 개발·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 '함께 가꾸는 푸른 세상' 등 8종의 환경교육교재를 개발하여 전국 2만1천여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9만여권을 유·무상으로 보급하였다.

지금까지의 환경교육은 현장견학이나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문화·예술·체육과 접목한 감성적이고 흥미로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환경영화·환경노래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자연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행복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환경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민간단체가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각종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한편 이들 단체의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선 학교에서도 '건강한 환경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든다'는 주제하에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가정과 학교 등에서 환경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개발·지원할 계획이다. 

# 언론 장벽을 넘어라



김덕만

국가청렴위원회 공보담당관  
(bodo24@naver.com)

## 자질론 - '상품가치'를 키우자

정책을 홍보하는 전문가(정책홍보인)는 우수한 자질을 갖춰야 한다.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언론과의 건전한 협력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파트너십과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는 최일선의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정책홍보인으로 채용됐다고 해서 자칫 전문가인 양 자만하는 행동은 금물이다.

2005년 들어 상반기까지 채용된 60여 명의 정책홍보인 면면을 보면 △기자 경험과 홍보인 실무 경험을 두루 거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화 감각(영어)과 △이론적 식견을 지닌 자격(박사급 학위) △웹 활용 능력 등을 고루 겸비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한다.

일천한 역사를 가진 홍보대행사 경력뿐인 사람, 기자 경력뿐인 사람, 현장 경험이 없는 석·박사 학위자 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인데, 이들은 정책홍보인으로 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문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외국어와 한자 실력은 정책홍보인의 기본 소양이다. 이런 자질이 갖춰져야 정책 입안→집행→평가 과정에 능률적·생산적으로 참여하고, 그 바탕에서 품격있는 홍보 기획과 전략을 수립하며 양질의 보도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정책홍보인은 저널리스트 이상의 게이트 키퍼(취재·보도

과정에서의 기사 취사 선택) 이해와 탁월한 문장력이 요구된다. '정책=홍보' 등식은 이런 필요조건 아래서 원만히 성립 가능한 것이다.

부족하면 배워야 한다.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은 없다. 당장 정책고객관리 서비스(PCRM) 업무 수행에 필요한 웹 활용 기량은 시급히 향상돼야 한다. 미니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보지 않은 채용자가 태반이다. 정책홍보인의 실력 배양은 스스로의 몫이다. 동틀 때부터 부지런히 일하고 밤늦게 사설 학원을 다녀서라도 미숙한 기량을 충전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의욕적으로 시도한 정책홍보전문가 제도는, 본래 취지인 '홍보품질 제고'를 살리지 못한 채 단순한 공무원 증원에 그칠 것이다.

## 언론 관계(Media Relations)

### -역主從관계는 안되나

기자과 정책홍보인은 서로 건전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들은 악어와 악어새로 비유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건전한 의미에서 상리공생하는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 단순히 보도자료를 들고 언론사 주변에서 기웃거리려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하면 뉴스 가치를 높일 것인가를 궁리해야 한다. 외람되지만 '촌지 수수 단속 캠페인'을 쉬운 예로 들어보자.

2005년 5월 스승의 날을 전후해 국가청렴위원회

(옛 부패방지위원회)가 ‘교사 촌지 수수 단속’에 관한 언론홍보 방안을 고민했다. 연례적으로 ‘촌지 수수 단속’이란 보도자료를 내 봤자 신문의 경우 1~2 단짜리 단신성 기사밖에 안 된다. 방송은 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궁리 끝에, 지난해의 촌지 적발 사례를 모아 분석하였다. 128건의 사례를 수수액수, 수수 시간, 수수장소, 수수내역(상품권·현금·물품) 등으로 통계를 냈다.

이 보도자료는 신문·TV·라디오·잡지 할 것 없이 국내외 거의 모든 매체에 보도됐다. 그 결과 ‘촌지 과잉 단속’, ‘인권 침해’, ‘스승의 날 폐지’ 등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과 논란 속에 올해 촌지 수수 사례는 지난해에 비해 극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국가청렴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단단위 숫자에 불과하다.

홍보 기획을 잘 세우는 것은 정책홍보인의 능력이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것은 언론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뉴스거리를 생산하는 정책홍보인의 능력에 있다. 정책홍보인은 업무 성격상 언론에 인도(引導)될 수도 있지만 언론을 인도할 수도 있다.

홍보인들은 기자와 식사 약속 때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비싼 곳에 가야 한다는 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다. 공직 윤리 차원에서 상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가능하다면 친근한 우리 음식인 김치찌개라도 자주 나누며 취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유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자는 양질의 고급 정보를 획득해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직업이다. 때문에 늘 좋은 기사 기근에 시달린다. 따라서 취재원 입장에서는 시류(時流)에 걸맞는 정보 제공과 보도 지원이 최대의 언론 유대 방법이다.

출입처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유대를 갖는 것도 고려사항이다. 비즈니스 세상의 거래처 유대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매무새를 갖춘 이메일(그림카드·기념카드·경축카드) 한두 줄

이라도 근황을 전송하는 것은 돈과 시간이 그다지 낭비되지 않는 유대 방법의 하나다. 편지 내용은 근황 안부와 더불어 취재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좋겠다.

## 기자 자존심과 생리적 현상

도제식 훈련을 받는 기자는 자존심을 먹고 산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때부터 선배들로부터 가혹한 취재 훈련을 받는다. 자발적으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취재와 글쓰기를 익힌다. 입사 초기에 매우 강도 높게 적응 훈련을 받는 직업에 기자직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수습기자는 선배들이 지시한 취재를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부지런히 돌아다닌다. 그러나 애써 취제한 정보를 기사로 써 놓으면 선배들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다반사다. 대부분 기사 요건에 미달되거나 문장력이 서툴기 때문이다. 설사 초년 기자가 기사를 잘 썼다 하더라도 일부러 기사화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기사가 실리면 곧잘 경거망동하는 등 나쁜 자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초년 기자를 지도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폭언을 하는 선배도 간혹 있다. 기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사명감을 지닌 민완(敏腕) 기자로 성장한다.

어떤 홍보인들은 기자와 친근해지기 위해 초면에 출신 학교·지역, 나이 등을 묻는 때가 있다. 기자에 따라서는 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친분있는 사이라면 무관하겠지만 나이·학교·고향 등을 알게 됨으로써 연하로 취급받거나 반말을 듣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기자 문화에는 질서가 있어 이를 잘 익혀야 한다. 홍보인들이 보도자료를 비중있게 기사화하려는 의도로 언론사의 친분있는 간부들을 들먹이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자칫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기술적인 유대 기법이 요구된다. 기자 세계는 입사 기수별 위계질서가 강한 편이다. 나이나 대학 학년에

관계없이 입사 순으로 선후배가 결정된다. 상급자에게 ‘선배’ 호칭을 쓰고 후배에게는 존칭을 쓰지 않는 게 보통이다.

기자는 움직임 자체가 취재 활동의 연속이다. 기자가 출입처를 방문하면 사무실의 책상 주변을 정리하고 중요한 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 보관에 신경써야 한다. 기자들은 기사거리를 찾기 위해 가끔 쓰레기통을 뒤지고 빈 좌석에 앉아 켜진 컴퓨터를 훑어보기도 한다. 책상 달력에 써놓은 행사 일정이나 업무연락(처), 벽에 걸려 있는 게시판의 알람 사항도 보안 대상으로 신경써야 한다.

취재 협조 때에는 잘 모르거나 정책상 노출되면 안 되는 내용은 확고하게 모른다고 잘라 말한다. 대화시에는 취재 방향으로 코멘트를 받아내려는 유도에 질문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 다시 쓰는 홍보와 언론 언어들

우리나라의 홍보계에는 일천한 역사와 연구 부족으로 인해 기본 용어부터 제대로 정리된 것을 찾기 어렵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홍보란 단어의 정의조차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다. 고작해야 코 큰 사람들이 쓰던 몇마디 영어가 죽보 없이 나돌아다닐 뿐이다. “대학에 홍보학과는 있어도 ‘홍보학 개론’ 책은 없다”는 자조섞인 홍보인들의 푸념은 홍보 학문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언론학에서 쓰는 용어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홍보’와 ‘PR’은 어떻게 다르고, ‘메스컴’과 ‘매스미디어’는 무엇인가, 글 쓰는 이마다 달리 표기해 혼란스럽다. 언론홍보 실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개념부터 간략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논문을 보면 홍보란 말 대신 미국에서 건너온 ‘PR(Public Relations)’이란 영어 약자를 자주 보게 된다. 홍보(弘報)는 한자 ‘넓을 홍(弘)’과 ‘알릴 보(報)’로 ‘널리 알린다’는 의미다. PR을 직역하면 ‘공

중관계(公衆關係)’다. 일본은 PR을 ‘공중관계’로 번역하고 있고 한국에서 많이 쓰는 홍보와 같은 의미로 ‘광보(廣報)’가 있다. 또 중국도 PR을 직역한 ‘공중관계(公衆關係)’로 번역하고, 줄여서 ‘공관(公關)’이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PR을 우리나라와 비슷한 한자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서는 PR을 연구자에 따라 ‘홍보’, ‘공공관계’, ‘공중관계’, ‘공보’ 등으로 활자화시키고 있어 용어 사용에 매우 혼란스럽다. 심지어 어떤 이는 책이나 논문 제목에다 PR을 쓰기도 한다.

‘PR=弘報’ 개념으로 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한국홍보학회의 창립이다. 1997년 2월 한국홍보학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PR을 홍보로 번역기로 했다. 당시 학회 회원들은 미국에서 등장한 PR을 홍보라고 부르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동안 PR을 어떻게 우리말로 옮겨 부를 것인가 하는 것은 Public Relations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고민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 중략 -

그러나 오늘날까지 한국의 모든 조직체에서 홍보를 Public Relations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Public Relations 행위를 홍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다고 마냥 Public Relations라는 외래어만 고집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Public Relations학회가 출범함에 있어서 학회발족추진위원회는 앞으로 Public Relations 개념의 토착화 또는 한국화를 꾀하기 위해서 Public Relations를 ‘홍보’라고 일컫고 그 학문을 ‘홍보학’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97. 2 한국홍보학회)

이를 근거로 PR을 홍보(PR=홍보)로 번역해 계속

부르고 쓸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용어 통일은 국어 순화 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하다. 한국홍보학회가 PR을 홍보로 번역키로 해 놓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스스로 권위와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꼴이다.

### '홍보맨'과 '홍보인'의 오류

우리말과 영어가 뒤섞여 만들어진 남성 중심의 '홍보맨'은 남성 우월 용어다. '홍보인'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언론사에는 언론인이 있다. 광고대행사(Ad Agency)엔 광고인이 있고, 방송사엔 방송인이 있다. 홍보대행사엔 홍보인이 있다. 홍보맨만 있지 않다. '홍보우먼'도 있다. 어떤 홍보대행사엔 여성 홍보인이 더 많이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홍보맨이라는 말은 성차별적 언어라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spokesman이란 단어에 대해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영어권 외신 기사에서 '대변인'이라고 번역하는 영어 'spokesman'만 쓰는 것은 남성 우월의 성차별 표현이며, 이는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남성 대변인만 있는 주장이다. 그 후 외신 기사에서는 남녀 공용어인 'spokesperson'이나 여성 대변인일 경우에는 'spokeswoman'이 쓰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홍보 주체에 대해 알아보자.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광고인이라고 하고, 자사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 광고대행사(Ad Agency)와 대중매체에 광고비를 지불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기업을 광고주라고 부른다.

그러면 홍보주(弘報主)라는 말은 없을까? 홍보를 위해 홍보대행사에 홍보비와 보도자료 작성 용역비를 주고 홍보를 의뢰했다면 그 의뢰인이나 의뢰회사는 홍보주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한국 사회에서 홍보주란 말을 사용하지 않아 어색할 뿐이지 앞으로 사용하면 된다. 언어의 특질상 사회성과 역사성을 고려할 때 홍보주란 말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생소하지 않

을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신문·방송계, 출판계, 잡지계 등 언어를 사용하는 관련업계 종사자·학자·연구원들이 계속해서 홍보주란 말을 표기해야 한다.

사족이 될지 모르지만 일부 홍보 상술책에는 홍보인의 의미로 '홍보전문가', 'PR전문가'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어색하다. 언론인으로 부르면 천해 보이고 언론전문가 하면 귀해 보이는가? 홍보인으로 표기하면 무식해 보이고 PR전문가 하면 유식해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

### 언론홍보와 퍼블리시티는 다른가

홍보 분야에서 언론홍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된다. 일상 업무에서는 언론홍보란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았다.

2004년 1월 13일 국내 인기 검색엔진인 네이버와 다음에서 '언론홍보' 단어를 검색한 결과 똑같이 1만 9,200개가 등장했다. 야후에서는 2,124개를 발견했다. 반면 언론홍보로 혼용되는 '퍼블리시티(Publicity)'는 네이버에서 817개, 야후 170개, 다음 137개가 각각 드러났다. 보도자료를 내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홍보대행사들은 이미 '언론홍보 대행사'란 표기를 홈페이지 전면에 이미지화시켜 배너로 부착한 사례도 있었다. 언론홍보와 퍼블리시티 두 단어는 공히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는 활동'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

이 같은 홍보 연구자들의 통설적인 퍼블리시티 개념과 언론홍보 용례를 종합하여, 언론홍보란 '홍보 주체가 조직이나 개인에 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대중매체에 기사가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해 보도되도록 활동하는 것'으로 정의코자 한다.

이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언론홍보=퍼블리시티'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대한 반론은 공론을 통해 재정의되길 기대한다. 

## 위험은 낮추고 기회는 늘리는 분산투자

**재**테크 전략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강조되는 내용이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 즉 분산투자다. 사실 여러 곳에 나눠서 투자하는 분산투자는 더디게 돌아가는 전략이다. 드라마 속 표현처럼 ‘똥똥한 곳 하나 잘 짚어 모두 다 쏘아뺏는’ 인생역전식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왜 바쁜 세상에 하나에만 집중해도 시원치 않은데 굳이 더디게 가는 분산투자를 강조할까? 분산투자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투자가 익숙지 않은 사람들도 부담을 줄이면서 체계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투자상품에 눈길이 가면서도 막상 가입단계에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그동안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굴려온 사람들일수록 그렇다. 계속 안정적이고 확실한 곳에만 투자를 하다 보니 적극적인 투자가 낯설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잘못될 경우에는 원금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듣게 되면 투자에 대한 공포심은 극에 달하게 되고 송충이는 술잎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모처럼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가곤 한다.

이러한 경우 대개는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품만 보고 지레 겁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 줄곧 여유자금에 생기거나 금융상품이 만기가 되었을 때마다 해당 자금을 굴리기에 좋은 ‘상품’만 찾아왔기 때문에, 개별상품만 볼 뿐 전체를 보고 대응하는 것이 익숙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더 큰 시야로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대응한다면 부담도 훨씬 줄어들 뿐만 아니

라 자금 운용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바로 상품이 아닌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고수익을 기대하는 주식형 펀드의 예를 들어보자. 수익이 높다는 것은 곧 위험도 크다는 의미이므로 그만큼 큰 투자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고수익에 마음이 끌리다가도 위험부담으로 인해 머뭇거리게 된다. 물론 자산의 전부를 주식형 펀드로 투자를 한 이후 성과가 나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면 그 타격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주식형 펀드에 일부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여러 상품에 분산해 투자했다면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위험은 생각만큼 커지지 않는다.

10곳을 투자해 1~2곳에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8~9곳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자산 전체에 대한 성과는 플러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의 두 가지 가운데 무조건 어느 한쪽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위험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누구도 그런 식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포트폴리오를 통한 분산투자를 통해 접근한다면 훨씬 부담을 줄이면서 투자할 수가 있다.

또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분산투자는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보완하며, 그만큼 투자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사실 지금의 채테크 상황은 과거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추구하는 채테크를 하는 목적은 크게 달라진 것

이 없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만큼은 예전에 비해 훨씬 더 힘들어졌다. 이미 예금 실질금리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돈이 돈을 벌어준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 버렸으며,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은 싫든 좋든 투자를 앞두고서는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올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역시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예상은 할 수 있어도 확정할 수 없는 것이 투자이고 시장은 항상 변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이 클수록 결과를 자신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어설픔게 투자했

다가는 기대하는 수익은커녕 손해만 보고 나올 가능성만 커진다. 따라서 시장의 상황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일수록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다. 소나기가 내릴 땐 비를 뚫고 뛰어가는 것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덜 맞고 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자산인 채권에다가 자금의 100%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주식으로도 나눠서 분산투자할 때가 수익은 더 높아지고 투자위험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분석이 있듯이, 적절한 분산투자는 위험만 낮



춰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익의 기회도 제공해 줄 수 있다.

한편 효과적인 분산투자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각각의 투자대상이 서로 보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으로 분산할 것이 아니라 투자목표에 따라 비중은 달리하되 공격적인 주식형 투자, 안정적인 채권형 투자, 안전한 확정금리 예금 등 서로 다른 위험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로 분산하도록 한다.

또 리스크에 대한 분산뿐 아니라 투자기간의 분산, 투자지역의 분산, 통화에 대한 분산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분산투자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투자기간을 나눠 장·단기 상품으로 골고루 투자해야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새로운 투자 대안이 나타났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투자지역을 넓혀 해외 시장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아울러 투자하는 통화 또한 다른 나라의 통화로도 분산해 투자한다면 그만큼 분산효과는 높아지게 된다. ■

한상언 신한은행 PB사업부 재테크팀장  
(hans03@shinhan.com)

# OECD의 고용 및 사회정책 동향과 시사점(上)

**최** 근 OECD에서는 출산율 급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감소, 그에 따른 경제성장 정체 및 재정부담 가중(연금·의료보험 적자 확대)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OECD는 2차대전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함에 따라 2010년을 고비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이상)로 진입하고, 그 후 급격히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20%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OECD는 이 같은 현상에 직면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잠재 노동력의 최대 활용, 근로자의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이 주요 정책이슈라고 제시하고 이를 3P(population, participation, productivity)의 문제로 요약하고 있기도 하다.



정형우

駐OECD대표부 노무관  
(hwchung03@mofat.go.kr)

이 글에서는 이 같은 도전에 당면하여 OECD 각국에서 논의·추진되고 있는 고용사회 정책의 주요 동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일에 대한 유인 강화’ 정책 도입

‘일에 대한 유인 강화(Making Work Pay)’ 정책은 미국·영국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유럽의 몇몇 국

가에서도 도입·추진되고 있다. 이는 고령화·고실업에 따른 복지의존인구 고착화 및 재정악화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히 저소득 계층 대상의 소득 및 고용 증진(일에 대한 재정적 유인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OECD는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에 대한 유인 강화’ 정책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OECD는 제도 설계시 사회급부 감액을 통한 노동시장 복귀유도 정책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고용급부(in work allowance) 지급 방식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이며, 駐OECD대표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며, 이 때 고용급부는 세제(tax system)와의 통합을 모색함으로써 가능한 임금을 통해 지불되도록 고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CT : Earned Income Tax Credit)를 살펴보자.

미국의 EITC는 1975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저소득가구(유자녀)의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수준까지는 실소득이 함께 증가토록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근로유인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ITC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제도(Refundable tax credit)로서 일정 근로소득까지는 EITC도 함께 증가(세후 가치분소득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실직빈곤층, 고령자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및 경제활동참가를 제고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ITC와 유럽제도와와의 차이는, 유럽대륙국가가 대부분 사회급부액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추진(사회보장체제 내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New Deal Program)은 1997부터 청년(18~25세)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및 복귀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현재는 성인·고령자·편부모·장애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뉴딜 프로그램 또한 세액공제(WFTC ; 소득증진)를 주된 수단으로 하며, 이와 동시에 전담 상담사(personal advisor)를 지정, 훈련을 포함한 고용서비스(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하는 부모를 위해 주당 16시간 이상 일할 경우 실제 보육비의 70%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기도 하다. 영국 정부가 2000년에 조사한 결과로는 뉴딜 프로그램이 청년실업 탈출(50만명), 청년장기 실업자 규모 축소(50%) 등 청년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도 최근 고령화 현상에 직면하여 다양한 ‘일에 대한 유인 강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 출산을 급감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OECD 각국에서 생산인력 감소, 경제성장

정체,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OECD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잠재노동력 활용, 근로자 고용 가능성

제고, 생산성 향상 등을 주요 정책이슈로 제시하였다.

벨기에는 2000년부터 장기실업 편부모를 대상으로 1회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세액공제제도(개인소득 기준, 현금급부 성격)를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회의 복직수당과 세액공제, 보육을 위한 세액공제(Combination credit)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프랑스는 가족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생산직임금의 2~3%까지 세액 공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은 ‘어젠다2010’이 시행된 2003년부터 월소득 400~800유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다.

#### 고용안정서비스 개혁과 인적자원 개발 추진

OECD는 전체 고용률 제고가 향후의 주요 과제라고 보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인적자원의 개발과 원활한 수급은 물론,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기술환경하에서 취약계층의 참여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고용안정(훈련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OECD 국가들의 정책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알선·실업급여·직업훈련을 하나로 묶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개인별 전담 심층지원을 통해 취업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영역을 단기 일자리 및 교육훈련 수요분석까지 확대하고, 직업안정기관 및 훈련

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통합정보망 구축을 통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고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호주와 영국에서는 공공 및 민간 고용안정기관 간 연계 강화(정보공유·업무위탁)를 통해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기도 하다.

호주는 1998년 이후 고용서비스 기능을 외주(contract out)하여 일자리 수 증가, 빈 일자리 메꾸기율 증가, 취약계층 및 장기 실업자의 12주 이상 지속성 있는 일자리 배치 증가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때 수수료는 구직자가 소득지원프로그램에서 일정기간 이상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소개 성공시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추가개선조치(Active Participation Model)를 도입하여 구직등록 후 2일 내에 고용서비스 전담기관을 지정,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등록 3개월 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중적인 구직·훈련 서비스를 제공(intensive support)하며, 1년 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연계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을 활용하여 훈련과 상담을 집중 병행(customized assistance)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들은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체 인력의 고용 잠재력(employability)을 최대한 높이며, 생산성 증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사·정(지역사회 포함) 및 훈련기관의 참여를 통한 훈련계획 수립, 훈련기관 평가 강화 및 평생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노·사·정(지역사회 포함) 및 훈련기관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직업훈련의 내용과 분야를 설정함으로써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훈련실시를 도모하고 있고, 미국·캐나다에서는 고용안정·실업급

여와 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훈련에 대한 접근 가능성 증진 및 개인 수요에 대한 즉시 대응을 추구하고 있으며, 몇몇 프로그램은 지방 간 연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는 평가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훈련을 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소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로 사업장 수요와 연계하여 기본지식 및 기술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기초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무료 또는 보조 프로그램으로서, 기업 및 근로자의 사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훈련참여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보조하고 있다.

덴마크 또한 평생능력개발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2005년부터는 저기능 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신훈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능력계좌(National Competence Account)를 운용, 비공식 학습·훈련에 대한 인증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비공식 훈련에 대한 인증은 OECD와 EU의 최근 이슈 중 하나이기도 하다).

##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제고

OECD는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하여 고용보호, 고용안정 서비스(PES) 및 소득안정성 확충 등 세 가지 정책수단의 포괄적 연계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고용보호법제(EPL :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가 가장 약한 영미권 국가에서 근로자가 느끼는 고용 안정성이 제일 높고, 고용보호법제가 가장 강한 포르투갈에서 체감 고용 안정성이 가장 낮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OECD의 정책권고에 부응하여 많은 OECD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임시고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임시직 고용의 직종 제한, 반복

횡수 규제 등을 없앴으로써 ICT 등 인력의 수시교체가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신기술채택 촉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노사관계법’을 개정하여 소기업 및 단기임시직에 대한 부당해고 적용제외 규정을 새로 도입하였다.

전통적으로 고용보호법제가 강한 독일은 ‘어젠다 2010’을 통해 2004년부터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신규고용하는 경우 해고보호조항 적용 없는 기간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스페인은 1994년에 도입한 임시고용 억제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자 임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 개혁을 통해 정규직·임시직 계약 이외에 제3의 고용계약 형태인 정규직 증진계약(permanent employment promotion contract)을 도입하여 동 고용 계약하의 근로자 해고시 해고보상금을 경감해 줌으로써 정규직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해고실적률(Experience-Rating) 제도를 도입, 기업의 해고경력(dismissal history)과 사회보장기여금액을 연계하여 해고횟수가 많을수록 기여금액을 상향조정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징수된 금액은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되며,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단기 실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퇴직계정(severance account)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점부터 임금액의 1.54%를 퇴직계정에 적립하게 되며,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계정도 이전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는 해고될 경우 계정의 즉시 인출 또는 완전 은퇴시까지 인출 유예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전체 노동비용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고비용이 줄어들게 되며, 근로자의 입장에서 계정의 이전이 가능함에 따라 이직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덴마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사회복지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OECD는 인구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개혁 및 인적자원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된다는 OECD의 정책권고에 부응하여 OECD의 여러 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독자적 혼성 노동시장정책 모델을 개발·시행하여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OECD에서 유연 안정성(flexicurity) 모델로 소개되고 있다. 유연안정모델 도입 후 최근 10년간 덴마크 실업률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1993년 9.6%에서 2004년 5.7%로 감소), 이 모델은 자유시장 경제의 특징인 노동시장 유연성(flexibility)과 복구 복지국가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간의 ‘제3의 길(the third way)’로 지칭되고 있기도 하다.

해고절차와 비용을 과감히 줄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하되,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 적극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활력과 근로자의 소득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모델은 전체 GDP 대비 실업급여 지급액이 4.5% 규모에 이르러 정부의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 2005년 상반기 DDA협상 평가 및 향후 전망

지난 7월 29일 WTO 일반이사회를 끝으로 2005년 상반기 DDA협상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협상은 지난해와 달리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당장 9월 초부터 집중적인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정도에만 합의한 것이다. 이는 2004년 상반기 협상과는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 상반기 협상, 뚜렷한 성과 없어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의 실패 이후 DDA협상은 소강상태에 빠졌으나, WTO 회원국들은 2004년 7월 말에 기본 골격 합의문(Framework Agreement : 일명 ‘7월 패키지’)을 일반이사회 결정으로 채택함으로써 DDA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하였



김 동 배

駐제네바대표부 2등서기관  
(dbkim97@mofat.go.kr)

다. 즉, 모든 회원국들이 합의한 문서(agreed text)라는 형태로 향후 협상 진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7월 패키지’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는 농업·비농산물·서비스·규범 등 제반 협상분야에서 기술적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더불어 10월에는 무역원활화 협상그룹이 새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05년 상반기 협상은 큰 기대 속에서 출발하였다. 우선 WTO 회원국들은 2006년 말까지 DDA협상을 종결하고 이를 위해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될 제6차 각료회의까지 그 토대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업과 비농산물 분야에서는 자유화를 위한 세부 원칙(modalities)을 채택하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시장개방 양허안(critical mass of market opening offers)을 확보하며, 규범(반덤핑·보조금·지역협정)과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significant progress)을 실현하고, 모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駐제네바대표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든 협상분야에서 개발측면 (development dimension)을 적절히 반영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또한 WTO 회원국들은 협상진전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위해 2005년 7월 말까지 홍콩 각료회의 결과물의 1차 윤곽(first approximation : 농업·비농산물·서비스·규범 분야 자유화 세부원칙의 1차 초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도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설정과 함께 제네바 협상과정에 정치적 지침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2005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 이어 3월 케냐 모바사, 5월 프랑스 파리, 7월 중국 대련에서 소규모 각료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월 및 4월 두 차례에 걸쳐 제네바에서 본부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국들은 1차 윤곽 달성에 필요한 수준의 협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7월 말에 문서 형태로 나온 결과물은 각 협상그룹 의장들이 무역협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사무총장이 무역협상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일반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뿐이다.

이는 협상의 진전 상황에 대한 평가와 홍콩 각료회의시까지 작업 방향을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회원국들이 협상을 통하여 합의한 문서인 2004년 7월 패키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7월 말 1차 윤곽 달성에 실패한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으나, 우선 올해 상반기 협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회원국인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수파차이(Supachai) WTO 사무총장은 지난 7월 말 일반이사회에서, DDA협상은 148개 회원국이 모두 다른 방향으로 뛰면서도 최종 종착지에는 모두가 동시에 도착해야 하는 마라톤 경기라고 비유한 바 있다.

#### 올해 상반기 DDA협상은

지난해와 달리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상 지도력이 부족했으며, G20가 농업분야의 우선적인 협상 주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협상은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 “실망스럽지만 재난 상태는 아니다”

협상에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대타협(big deal)의 방향을 제시하고 나머지 회원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한데, 이는 결국 미국과 유럽연합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칸쿤 각료회의 실패 후 2004년 초부터 미국의 쥘릭(Zoellick) 당시 무역대표가 각국 통상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협상재개를 촉구하고, 유럽연합의 라미(Lamy) 당시 통상담당집행위원이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을 순방하면서 협상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이것이 2004년 7월 패키지 타결을 유도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올초 부시 행정부 출범 외중에 포트만(Portman) 신임 무역대표를 4월 말에야 임명했고, 포트만 대표 취임 후에도 중미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CAFTA)에 대한 의회의 비준 문제로 DDA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상황이었다. 포트만 대표는 미국 하원이 CAFTA를 비준한 직후인 7월 29일에야 제네바를 방문했는데, 이때는 이미 일반이사회를 끝으로 상반기 제네바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다.

유럽연합의 경우, 만델슨(Mandelson)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2004년 10월에 취임하였으나,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로부터 가장 중요한 협상 분야인 농업에서 지나치게 양보만 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함으로써 충분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지 못해 협

상 진전을 위한 쟁점 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였다.

최근 만델스 집행위원이 파이낸셜타임즈紙 2005년 7월 29일자에서 “25명의 시어머니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twenty five mothers-in-law to please)”고 언급한 것은 단일 입장을 마련하기 힘든 유럽연합의 처지를 대변해 준다.

칸쿤 각료회의를 계기로 등장한 개도국 그룹인 G20도 협상 부진의 원인을 제공했다. G20은 주로 농업분야에서 개도국들의 이해를 대변해 왔으며, 특히 농업분야의 진전이 없이는 비농산물·서비스 등 여타 협상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농업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간 타협이 지연되는 가운데 G20의 이러한 입장은 농업은 물론 전체 협상 진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7월 말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7월 12일에서 13일간 중국 대련에서 개최된 WTO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G20가 제출한 제안을 출발점으로 하여 농업협상 시장접근 분야의 관세감축공식의 절충점(middle ground)을 찾는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점의 의미에 대해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간 이해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7월 말까지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렇다면 2005년 상반기 DDA협상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합의된 형태의 문서를 채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반기 협상을 실패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

수퍼차이 사무총장이 7월 말 상황을 “실망스럽지만 재난 상태는 아니다(disappointing, but not disastrous)”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중 각 협상분야에서 기술적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주요 쟁점과 선택 가능한 해결방안들이 무엇인지가 뚜렷해졌다. 특히, DDA협상을 사실상 이끌어 가고 있는 농업협상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타결해야 할 핵심 쟁점이 국내보조와 시장접근 이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비록 상반기 중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지만, 회원국들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자 할 경우 어떠한 해결방안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명확해진 것이다. 이는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농업은 물론 전체 협상 진전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농산물 종량세의 증가세 상당치(*ad valorem equivalents* : AVEs) 전환 문제가 5월 파리 개최 WTO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뒤늦게나마 타결된 것도 성과 중 하나다.

비농산물 협상에서 관세감축공식으로 ‘스위스 공식(Swiss formula : 각국의 평균관세를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관세가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되도록 하는 과감한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지지가 확대된 것도 긍정적 발전이다.

여기에는 2005년 6월 제주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스위스 공식에 합의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 브라질·인도·아르헨티나 등 G20 주도 국가들의 스위스 공식에 대한 반대입장이 아직 완고하긴 하지만, 세계 무역의 약 50%를 차지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APEC의 합의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분명하며,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수의 APEC 비회원국들도 합의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상반기 중 비농산물 분야의 또 다른 성과는 양허되지 않은 품목을 100% 양허한다는 것과 새로 양허된 품목에 대해 추후 합의될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감대가 궁극적으로 현실화된다면 WTO 규범의 구속을 받는 수출시장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 미국과 라미 차기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역할 기대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올초에 설정했던 7월 말 1차 윤곽 합의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하반기 협상에 큰 부담(backloading)이 생겼음은 분명하다. 9월 초부터 당장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각 협상분야에서 술하게 남아 있는 쟁점을 12월까지 불과 3개월여 동안 해결해야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협상분야인 농업과 비농산물 분야에서 관세감축공식, 각국에 대한 신축성 인정 정도 등 구체적인 숫자 형태로 합의해야 하는 핵심 사안이 남아 있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 경우에는 자유화의 세부원칙 합의라는 당초 홍콩 각료회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7월 말까지 달성기로 했던 1차 윤곽을 홍콩에서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간혹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농업과 비농산물을 제외한 서비스·규범·개발 등 여타 협상분야에서는 홍콩 각료회의에서 성취할 목표에 대한 명확한 공통의 이해가 아직도 없는 데다가, 가장 중요한 농업과 비농산물 협상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분야에 투입할 시간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 홍콩 각료회의에서의 결과물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다만 미국 행정부의 신속무역협상 권한이 2007년 6월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2006년 말까지는 DDA협상을 종결해야 하고, 2006년 중에 협상 최종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홍콩 각료회의에서 자유화 세부원칙 또는 이에 머무르는 결과물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9월 1일 취임 예정인 라미 신임 사무총장이 협상 진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회원국들이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그간의 각 협상분야별 입장을 재점검하여 하반기 협상이 재개됨과 동시에 협상과정에 적극 참

회원국들은 미국과 차기

사무총장이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G10 등 입장 공유 그룹과 연대를 강화하고 주요국과의 양자 교섭을 통해 협상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각 협상분야별 주요국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논리를 보다 정교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협상 절차면에서는 현재와 같이 다수의 회원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 외에 소규모회의·양자회의 등을 통한 협상방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농업협상에서는 미국·유럽연합·호주·인도·브라질로 구성된 5개 국가(Five Interest Parties : FIPS)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농업은 물론 여타 협상분야에서도 이처럼 주요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회의체가 형성되고 양자 간 타협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도 G10을 비롯한 입장 공유그룹과 연대를 강화하고, 주요국과의 양자교섭을 통해 협상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상의 이익은 우리의 취약 분야를 방어(defensive interest)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공세적 이익(offensive interest)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DDA협상을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협상 전체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 중부 유럽의 매력적인 신흥 시장



이규남

KOTRA 프라하 무역관장  
(knlee@kotra.cz)

**체**코는 2004년 EU 확대와 함께 유럽의 생산기지로 각광받으면서 1989년 자유화 이후 최고의 경제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다. 체코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체코 수입시장 점유율이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체코를 처음 방문하는 한국인들을 만나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못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잘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이다.

체코의 2004년도 1인당 GDP는 1만487달러로서 우리나라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EU 신가입 10개국 중 슬로베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 수준이 높다. 서유럽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뒤쳐져 있지만 전통적인 중동부 유럽의 선두주자로서 만만치 않은 경제력과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 중동부 유럽의 주요 산업국으로 부상

체코하면 ‘아름다운 프라하의 모습’ 등 유럽에서 각광받는 관광대상지라는 인식과 舊공산권 국가라는 점이, 우리 기업들이 막연하게 체코시장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체코는 1905년부터 이미 승용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합스부르크제국 전체 산업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던 공업지역으로, 1918년 독립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세계 10대 공업국으로 명성을 떨쳤던 저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랜 산업생산 전통의 기반 위에 최근 외국인투자가 집중되면서 유럽의 공장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계공업·자동차산업·금속공업 등이 경제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튼튼한 산업기반과 외국인투자 기업의 증가는 각종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체코는 인구 1천만 명의 그리 크지 않은 국가이나 2004년도 GDP 규모 1,070억달러, 수입규모 681억달러로 EU 25개 국가 중 GDP 규모 16위, 수입규모 10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가 결코 무시해선 안 될 시장이다.

특히 유럽의 신흥시장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중동부 유럽에서 폴란드 다음으로 커다란 시장인 만큼 유럽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업체들로서는 한번은 부딪쳐야 할 국가라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인구 100명당 휴대 폰 보유대수가 102대에 달할 정도로 경기호조에 따른 가처분소득이 증가했다는 점도 신시장 개척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매력적인 소식이다.

또한 슬로바키아의 경우 체코의 유통망이 거의 장악하고 있어 체코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 슬로바키아가 덩으로 따라올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

#### 우리나라의 체코 수입시장 점유율 0.82%에 그쳐

우리나라의 對체코수출은 2002년부터 연 40% 이상 급증하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억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체코는 아직 우리의 수출대상국 중 67위에 불과하며 EU 25개국 중에서도 18위에 그쳐, 발트 3개국 등 소규모 국가들을 제외하면 사실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그동안 우리가 거의 무시해 온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체코측 통계에 따르면, 체코의 2004년도 對한국 수입 규모는 5억5,9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8.3%의 급증을 보였으나, 수입시장 점유율은 중부 유럽 4개국 중에서도 가장 저조한 0.82%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 상품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체코의 교역 중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독일 경제에 크게 예속되어 있어 시장침투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있겠지만, 우리 기업들의 체코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역설적으로 아직도 우리 기업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진출 여지가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LG전자가 2003년 하반기에 체코에 현지 판매법인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유통시장에 진출한 이후 1년 만에 매출 규모를 네 배 이상 신장시키는 등 빠른 시간

내에 체코 전자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부상하였다는 점은 체코가 우리에게 아직 미개척지로 남아 있으며,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인 진출노력을 기울일 경우 어떤 지역보다도 시장 확대의 여력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사실 체코는 우리에게 그다지 친숙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우선 체코 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국경의 대부분을 독일·오스트리아와 접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체코의 바이어들은 유럽산 제품에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서유럽의 바이어들처럼 품질 기준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판매경쟁 격화에 따라 가격에도 민감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 프라하에서 자동차로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1일 생활권에 들고 있다.

특히, 독일 등 인근 국가들로부터 필요시마다 소량으로 주문하는 데 익숙해 있어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면 직접 수입하기보다는 인근 국가의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권이 프라하·브르노·오스트라바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수입물량이 적다는 점도 우리 기업의 진출에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체코 바이어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 거래처를

튼튼한 산업기반과 외국인투자  
증가로 인해 체코는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對체코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나, 시장을 면밀히  
분석한 후 진출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장  
확대 여력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인다.

쉽게 바꾸려 하지 않을 정도로 보수적이면서도 상대태  
도는 상당히 실무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회  
사로부터 특정제품을 고정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거래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다른 기업이 상당히  
매력적인 거래조건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쉽게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거래처 전환에 소  
극적이다.

## 체코 시장의 특성 이해 필요

체코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표 1〉 중부 유럽 4개국 경제규모 비교

(단위 : 만명, 달러)

|                   | 폴란드    | 체코     | 헝가리    | 슬로바키아  |
|-------------------|--------|--------|--------|--------|
| 인 구               | 3,822  | 1,022  | 1,010  | 542    |
| GDP               | 2,422억 | 1,070억 | 953억   | 411억   |
| 무역 규모             | 1,617억 | 1,354억 | 1,143억 | 569억   |
| 1인당 GDP           | 6,227  | 10,480 | 10,129 | 7,603  |
| 구매력 기준<br>1인당 GDP | 12,244 | 18,357 | 15,546 | 15,066 |

자료 : IMF, 각 지역 KOTRA 무역관

〈표 2〉 한국의 중부 유럽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백만달러, %)

|       | 수입규모   | 對韓수입액 | 점유율  |
|-------|--------|-------|------|
| 폴란드   | 89,666 | 762   | 0.85 |
| 체 코   | 68,134 | 559   | 0.82 |
| 헝가리   | 59,479 | 901   | 1.51 |
| 슬로바키아 | 29,407 | 437   | 1.49 |

자료 : 각국 통계청, World Trade Atlas

첫째, 유럽산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가지고 시장을 차근차근 넓혀 간다는 생  
각으로 소량주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둘째, 바이어들의 자본축적이 미흡하며 인근 국가  
와의 외상거래에 익숙하여 자금부담이 큰 신용장 거래  
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  
불조건에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바이어들은 유럽내 교역에 익숙해 있어 가격  
제시시, 수출업자가 수출국 창구에서 화물을 선적하  
기까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FOB(Free On Board)보  
다는 수입국에 화물이 도착될 때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로 하는 편이 바이  
어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바이어들이 이전에 상담한 공급업체들의 정  
보를 가지고 있어 기존 거래처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공급선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바, 처음 상담  
시 결과가 없을 경우라도 꾸준하게 연락을 유지하고  
신제품을 소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체코 바이어들의 영어 구사능력이 최근 많  
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40대 이상은 아직도 영어보  
다는 독일어나 러시아어 실력이 더 나은 편이기 때문  
에, 영어를 사용해 전화하는 것보다는 팩스나 이메일  
을 이용하여 교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KOTRA 차원에서 문화행사를  
결들인 한국상품전시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한국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라경제

# 공공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박도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1담당관실 서기관  
(hopedh@hanmail.net)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상의 지위라 함은, 시장지배적 지위와 같은 정도의 강한 지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 거래상 지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세부유형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별표1 제6호)에는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불이익 제공이라 함은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서는 불이익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고, 불이익이 금전상 손해인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이익제공 강요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부당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요인을 불인정하는 행위, 공공사업자의 책임으로 추가로 발생한 비용 미지급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의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못 받게 하고 하자담보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는 행위 등이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실제로 중소기업체와 대기업 간의 거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거래 등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힘 없는 사업자들은 제대로 한번 자기 주장도 못하고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하여 언제나 위법한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일방당사자의 거래상 지위가 인

정되어야 하고 일방당사자가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준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공정위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지만 실제로 불이익 제공행위로 인정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두려워 제대로 공정위에 진술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중소기업자나 생계형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공공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소개한다.

### 용역 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미지급

#### 행위사실

한국석유공사는 (주)○○검사와 2개사와 2003년 3월 26일 ‘동해-1 해저배관 비파괴 검사용역’ 계약(계약기간 : 2003. 3. 26~2003. 7. 31)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수행기간이 늘어나 계약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동 용역을 수행하던 중 한국석유공사의 책임있는 사유인 선행공사 지연으로 인해 2003년 6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117일 동안 용역이 정지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한국석유공사는 한국석유공사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에 따라 용역의 정지시 정지기간 60일 초과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연보상금 172만8천원을 지급기한인 준공대가 지급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로서 그 업을 운영하기 위해 배관공사를 지속적으로 발주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은 배관설치에 따른 비파괴검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자원 비축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주하는 배관공사에 수반되는 비파괴검사용역에 참여해 왔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석유공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이로 인해 한국석유공사의 요구나 제시사항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고 자기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한국석유공사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한국석유공사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한국석유공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한국석유공사가 계약조건과 달리 용역정지기간 60일 초과분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시공물량 축소 조정을 통한 공사비 감액

#### 행위사실

한국석유공사는 2003년 2월 17일 ○○건

설(주) 외 1개사와 '서산비축기지 추가탱크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액 258억원, 계약기간 2003. 2. 17~2005. 4. 30).

그 후 동 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3월 17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된 한국석유공사의 감사실 주관 자체감사에서 설계도상 추가탱크 기초공사 사면의 기울기를 1:1로 하여도 공사진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1:1.5로 지나치게 완만하게 설계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하게 반영하였다는 사실이 지적되었고, 감사실은 2003년 5월 26일자로 동 공사를 담당한 제3건설 사무소에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시공사인 ○○건설(주)은 자체감사결과 통보시점에 이미 2003년도 공사예정인 탱크 4기 중 탱크 3기에 대하여 설계도상의 기울기인 1:1.5를 적용하여 기초 터파기 공사를 시공 완료하였고, 이후 2003년 12월 15일 동 공사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탱크 4기에 대하여 탱크 기초공사 사면의 기울기를 감사 의견대로 일률적으로 1:1로 적용하여 산출된 토공수량 및 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초 탱크기초토공 공사비 중 6,3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5,354만2천원은 공사착수 전에 지반에 대한 현장시추를 통해 확인된 지반고 상승에 따른 토공수량의 감소분으로 인정되므로 사면 기울기 조정을 통해 감액한 공사비는 1,020만8천원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한국석유공사는 석유비축사업에서 국내 최대사업자로서 석유비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축시설을 지속적으로 발주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은 건설 및 토목업을 영위하는 회사

로서 본건 추가 탱크공사 이외에도 한국석유공사가 같은 서산지역에서 발주한 석유비축시설 공사에 참여하여 탱크건설공사를 시행(계약금액 395억원, 계약기간 1999. 10. 8~2005. 6. 7)하고 있는 등 한국석유공사와 이미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거래상대방은 한국석유공사의 요구나 제시사항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고, 비록 자기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석유공사에게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한국석유공사가 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한국석유공사는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375만원의 공사비를 감액하였으나 지반고 조정분 5,354만2천원은 현장확인 결과 준공도면대로 시공되어 감액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사면 기울기 조정에 따라 감액된 공사비는 1,020만8천원이다.

한국석유공사는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진행된 감사에서 사면 기울기 설계가 잘못되었으므로 사면 기울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후, 즉시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설계변경 전에 우선 기울기를 변경(1:1)하여 공사를 시행할 것을 시공사에 구두지시하였고 시공사의 동의 하에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공사작업 일보에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작성하였던 것은 기초공사 터파기 작업 당시에는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실제 시공물량을 당초의 계획물량으로 환산하여 기록한 것일 뿐 실제로 사면 기울기를 변경하여 시공하였으

므로 사면 기울기 변경을 통한 감액이 부당감액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한국석유공사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본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19조의 3 및 제19조의 4에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의5에 발주자도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석유공사가 설계변경이 필요한 작업수정을 지시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계약의 원칙상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한국석유공사가 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감사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시공사에 사면 기울기 조정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작업계획 물량을 즉시 수정하여 기록함으로써 시공내역과 실제공정률이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사실대로 공정률을 관리할 수 있고 추후 분쟁의 소지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시공사가 작성하고 한국석유공사가 확인한 작업일보와 본건 공사 감리단에서 매월 보고하는 월간감리보고서상에 기재된 작업내용은 공정률 관리를 위해 작업일보를 고의로 허위작성한 사실이 입증되거나 실제 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한국석유공사는 감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감사지적이 있었으므로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사면 기울기를 변경하여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면 기울기를 1:1로 적용한 것은 본건이 유일한 건이고

동 공사 이외에 한국석유공사가 발주한 과거의 다른 모든 탱크기초공사의 사면 기울기는 1:1.5로 적용되어 왔다는 점과 감사지적이 일반적인 설계관행과 달리 이루어져 다소 무리한 지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국석유공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석유공사의 제3건설 사무소가 감사결과를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용하고 감사결과의 확정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에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셋째, 공사 진행을 위한 시공사의 상세 시공계획서가 2003년 4월 11일 한국석유공사에게 제출되었으며, 한국석유공사는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감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003년 4월 23일 시공사에게 상세 시공계획서 승인을 통보하였다. 이때 지반고 조정에 대한 언급을 하였으나 자체감사가 2003년 4월 11일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사면 기울기 조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한 사실이 없다.

공정률 관리를 위해 설계량의 수정이 어려웠다는 한국석유공사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만약 한국석유공사가 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면 상세 시공계획서를 승인하면서 사면 기울기의 조정에 대하여도 언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공사종료 후에는 시추나 재 터파기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탱크 기초공사 사면의 기울기에 대한 시공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석유공사가 감사 지적사항대로 시공사에 구두로 지시하여 사면 기울기를 조정·시공하도록 했다는 것은 한국석유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없다. 따라서 당초 설계서상의 사면 기울기대로 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탱크기초 터파기

는 1:1.5의 사면 기울기를 적용하여 시공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정위는 한국석유공사가 실제 시공내역과 달리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물량을 축소조정함으로써 공사비를 감액한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인정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공정위는 한국석유공사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라목(불이익 제공)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석유공사에 대하여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정지에 따른 정지기간 중 60일 초과분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되고,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시공이 이루어진 부분까지 설계변경을 통하여 부당 감액함으로써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해설 및 시사점

공정위는 한국석유공사의 거래상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고 거래상대방은 한국석유공사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사업상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여 한국석유공사의 거래상 지

위를 인정하고 있다.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기 곤란하겠지만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경우 당해시장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한국석유공사가 지연보상금을 미지급한 행위와 이미 시공한 공사를 설계변경을 통해 용역비를 감액한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한국석유공사가 거래상대방에 비해 거래상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위 남용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등한 당사자 간에서는 발생하기 곤란하고 거래상 불균형 관계에서 발생하는 행위라야 할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공공사업자의 거래행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공공사업자와 용역업체 간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

# 철도운행으로 인한 매연·분진 피해농가에 첫 배상 결정

김상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kimsh@me.go.kr)

이번 호는 경기도 ○○시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김○○이 ‘철도운행으로 발생한 매연·분진 등으로 화훼재배 비닐하우스가 오염되어 비닐하우스의 수명이 단축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철도운행에 의한 매연·분진피해를 인정하여 철도공사에게 410만3,71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사건을 소개한다.

## 사건개요 및 배상결정의 의의

그간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에 의한 사람의 정신적 피해와 가축의 유·사산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있었으나, 철도운행으로 인한 매연·분진 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지역은 하루에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등이 수백회씩 교차하여 운행되고 있어 레일의 쇳가루·자갈가루 등 분진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매연까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생한 쇳가루 등 분진과 매연이 인근 화훼재배 비닐하우스에 떨어져 햇빛의 투

과를 방해하고 재배하던 관음죽·군자란 등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 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의 비닐 교체주기는 3년인 데 반해 피해농민 김○○씨의 비닐하우스는 분진 및 매연에 의한 햇빛차단을 우려하여 2년 만에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진 및 매연을 발생시킨 철도공사에게 비닐 교체 비용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공사장 소음·진동 및 공장 대기·수질오염 등에 대한 피해신청 및 배상결정 중심에서 벗어나, 한층 세분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 배상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 내용

### 신청인 주장

경기도 ○○시 ○○동 21-1, 21-5번지상의 화훼 비닐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

김○○는, 피신청인인 철도공사가 1997년부터 수원-천안간 전철화사업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분진·소음·진동·일조량감소 등으로 피해를 보았으며, 2002년 12월부터 철도가 정상 운행되면서 철도매연·분진 등으로 비닐하우스 피복물 오염피해가 심화되어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복물 교체주기 단축피해를 입었다.

신청인은 통상 3년에 1회 교체하여야 하는 비닐피복을 일조량 불량으로 6개월마다 교체하여야 하는 실정임은 물론 난방연료도 타 농가보다 많이 소비되어 이중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비닐피복 교체비용 1,200만원, 향후 비닐피복 교체비용 9천만원 등 총 1억2백만원의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장

수원-천안간 철도운행과 관련하여 분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 비닐하우스는 철도가 준공된 이후에 설치하였으므로 피해보상 요구는 부당하다.

#### 배경상황

분쟁지역은 ○○철도역에서 남쪽방향으로 약 2km 떨어져 격리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원-천안간 철도가 신청인의 화훼재배 농경지 중심을 통과하고 있다. 주변에는 논밭 등이 있으며 동쪽 약 200m 지점에는 공장이 1개소 있으며, 서쪽 약 150m 지점에는 2~3개 동의 아파트가 있는 농촌지역이다.

경부선 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화사업은 총연장 55.6km로서 선로용량 증대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1988년에 타당성조사를 거쳐 총사업비 1조1,649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며, 1996년 9월에 착공하여 2000년 말 준공 후 시험운행을 거쳐 2002년 말부터 정상운행

되고 있다. 분쟁지역에는 수원-천안간 새마을호·무궁화호·화물열차 등이 1일 평균 330회 교차운행되고 있으며, 운행동력은 디젤기관차로서 사용연료는 경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비닐하우스는 4연동 2개소(각 250평, 275평)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가와 현지조사시 재배작물은 관음죽이 80% 이상이었고, 스테파니아(15~20%), 군자란(2~3%)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피해농지 소유주로서 1993년 이후부터 당해 농지에서 약 11년간 화훼를 재배해온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96년 5월 당시 철도청의 수원-천안간 복선 전철화사업에 따라 편입된 당해 농지 일부에 대하여 보상받은 사실이 있었다.

전문가 조사시 비닐하우스의 피복은 2004년 12월 새 비닐로 교체되어 투광이 양호한 상태였고, 철도차량 분진으로 인해 훼손되었다고 신청인이 주장한 폐비닐은 이미 철거되어 노지에 야적된 상태로서, 부분적으로 폐비닐의 오염이 관찰되었다.

#### 전문가의견

현장방문시 피해 비닐하우스 피복물은 철거되고 새것으로 교체된 상태로서 정확한 피복물의 오염정도를 파악하기 곤란하였으나, 철거되어 노지에 야적된 상태의 폐비닐은 부분적으로 오염이 관찰되었다. 오염된 피복물은 작물이 피해를 받을 때까지 방치하기보다는 작물의 정상생육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피복물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닐하우스 피복물의 경우, 두께 0.1mm 이상의 비닐자재는 통상 2~3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나 작물의 광 요구도, 비닐의 오염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 시설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음죽의 경우, 1,500lux의 저광에서부터 45,000lux의

고광도까지 적응력이 높은 편이며, 다소 광이 약한 상태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므로 교체주기를 3년으로 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시설은 2003년 1월 비닐 피복하여 2004년 12월에 교체한 것으로 보아 교체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다.

사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 배상범위  
신청인이 철도매연·분진으로 인해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폐비닐이 이미 철거되어 노지에 야적된 상태에서 정확한 피해정도를 판단하기 곤란하나, 부분적으로 폐비닐의 오염이 관찰되고 비닐하우스 피복물의 교체주기에 비하여 신청인은 2년 만에 교체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철도매연·분진으로 인한 비닐피복물 오염 및 교체주기 단축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해기간은 신청인이 2003년 1월 비닐하우스를 재설치한 때부터 2004년 12월 피복물을 교체한 때까지로 하고, 피해액 산정식은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가 제시한 바에 의한다.

향후 비닐하우스 피복물 교체비용 배상요구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피해규모·피해금액

등이 불명확하므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청구하도록 하고 이번 배상에서는 제외한다.

## 배상액 산정

피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은 다음과 같다.

- 비닐교체비용 배상액: 409만1,440원
  - － 산출식: (정기교체주기－실제교체주기) × (교체비용 ÷ 정기교체주기)
  - － 산출내역: (3년－2년) × (1,227만 4,340원 ÷ 3년) = 409만 1,440원
- 신청수수료 환급액: 1만2,270원
  - － 비닐교체비용 배상액(409만1,440원) × 3/1,000

따라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관련자료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10만3,710원을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㉔

## 용 어 해 설

### 레버리지 효과 (Leverage Effect)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지렛대 효과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자기자본으로 1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할 때, 투자자본 전부를 자기자본으로 총당했다면 자기자본이익률은 10%가 되고, 자기자본 5억원에 타인자본 5억원을 끌어들여 1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면 자기자본

이익률은 20%가 된다. 따라서 차입금 등의 금리 비용보다 높은 수익률이 예상될 때에는 타인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차입금을 사용하는 경우,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해 도산위험 및 도산의 기대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적정 여부

정 준 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선임검사역(변호사)  
(jja@fss.or.kr)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행계약이므로 투기나 도박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당사자에게 선의성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특성을 갖는데, 이러한 특성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부과된 것이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이다.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지을 중요사항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선량한 고지에 의해 보험자는 계약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동시에 불량위험을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위험의 종합평균화를 유지시켜 해당 보험단체를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험모집 과정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보험자는 미처 고지의무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평가를 다하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되고 나서야 관련 고지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길게는 수년간 보험료를 납입해 오던 보험계약자와의 사이에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번 호에 소개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례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이 대부분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보험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사실관계

신청인은 왼쪽 팔에 종양이 있어서 2002년 1월 18일부터 같은 해 6월 18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같은해 7월 2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입원하여 종양 제거수술을 받았으며, 같은달 6일 수술하면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지방육종(Liposarcoma) 진단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2002년 11월 27일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 금액이 5천만원, 월보험료가 28만8,700원(2005년 2월까지 28회 납입)인 종신보험계약을 피신청인(A생명보험사)과 체결하였는데, 당시 보험계약 청약서 질문서상의 “최근 5

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수술·정밀검사(심전도·방사선·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받거나 30일 이상 투약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등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2003년 1월 17일 피신청인의 계약적부심사 질문서 작성시에는 병력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병명란에 지방종이라고 誤記함).

신청인은 2003년 3월에는 척추옆 대동맥에 지방육종이 발병하여 원자력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같은 달 6월 23일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 등을 받다가, 같은 달 25일 조직검사에서 지방육종 진단을 받게 되자 2005년 2월 11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보험계약 전의 지방육종 진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민법 제 110조에 의거 계약을 취소하였다.

#### 계약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은 보험계약 적부심사시 지방육종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그 이후 골육종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약시 지방육종 수술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적부심사시에도 지방육종이라고 고지하지 않고 양성종양인 지방종으로 고지하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적법하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도 해당되어 민법 제 110조에 의한 계약취소도 가능하며,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확정진단되었으므로 ‘암

보장특약’ 제4조에 의해 계약 무효사유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 계약해지의 적정 여부

피보험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제651조는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해 ‘보험약관’ 제 21조는 회사가 계약당시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치료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법상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계약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신청인은 청약서 질문서의 고지사항을 기재하였는지 기억이 없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기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반증이 없고, 오히려 자필서명을 직접 하였다고 한 점과 중앙 제거수술을 하면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지방육종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인은 계약 적부심사시의 질문서에는 치료사실 등을 기재하였고, 다만 수술 병명을 지방육종이 아닌 지방종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일반인인 신청인이 양성종양인 지방종과 악성종양인 지방육종을 엄격히 구분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신청인이 치료병원·치료기간·수술 등의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지방종 또는 지방육종에 대한 수술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피신청인

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인의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의 계약해지 처리는 타당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의 적정 여부

당해 ‘보험약관’ 제22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계약 적부심사시 치료병원 등의 과거 치료병력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다만 지방육종 수술에 대하여 지방종으로 기재한 것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어려운 일반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암 진단 사실을 고의로 숨기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보험계약 전 암진단 확정에 따른

#####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해 보험계약 ‘암보장특약’ 제4조(특약의 무효)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2조(특약의 책임개시일)에 정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1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체결 이전인 2002년 7월 6일 조직검사 결과 지방육종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당해 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 및 ‘암보장특약’ 제4조에 의해 무효라고 판단된다.

####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해설

이 사안에서 신청인은 보험계약 청약서 작성시점에서는 종양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나, 계약 적부심사시 질문서에 지방종이라고 기재하였다. 고지의 유무는 계약의 청약시가 아니라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계약의 청약시에 한 고지를 변경·철회 또는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만약 보험계약자가 계약 적부심사시 작성한 질문서에 지방육종이라고 정확하게 기재하였다면 보험계약 성립 전에 고지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지의무 위반 자체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이 사안의 경우는 고지의무 시점상의 문제가 아니라 고지의무 내용과 관련하여 실제 병명이 지방육종임에도 지방종이라 고지한 것을 부실고지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지방육종과 지방종은 의학상으로 악성과 양성 종양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또 많은 보험상품에 있어 종양은 악성과 양성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기재의 정확성 요구 정도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육종을 지방종이라 표시한 것은 정확한 기재가 아님은 분명하나, 지방종은 향후 얼마든지 지방육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병으로 통상의 경우 보험계

약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조사를 해 보았어야 할 사항에 해당된다. 더욱이 신청인이 치료병원과 치료기간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이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 위반사항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나, 일반인인 신청인이 지방종과 지방육종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병명 기재를 잘못된 모든 경우에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보험계약자가 병명 구분을 제대로 못하여 이를 잘못 기재하였을 뿐 치료기간이나 수술여부 등을 모두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실기재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

고지의무 위반이 민법상 착오나 사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해지 여부 외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사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보험자는 취소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보험의 선의성에 비추어 타당하며, 판례도 이와 동일하게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실제 표준약관은 사기에 의한 민법상 계약취소에 대하여 보험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관규정이나 판례가 없는 착오에 의한 취소의 경우는 보험계약자에게 해의가 없다는 점에서 보험자의 민법상 계약

취소권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안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이 보험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뚜렷한 사기의사를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법 제644조는, 보험이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의 경우는 보험계약 이전에 신청인이 암확정 진단을 받았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다만, 이 사안과 달리 보험계약자가 암 발병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되므로 이미 발병된 암에 대하여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 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책임개시 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고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실제 보험계약자의 선의성 유무와 보험자의 인수과정상의 주의의무 준수 여부가 모두 문제된다.

이번 분쟁조정 사례는 사정이 어떠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자에게 예기치 못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보험자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의 인수 과정상에 성실한 조사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할 것이다. ■

# 여성인력개발 지원제도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인해 생산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여성잠재인력의 활용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달성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외부의 잠재 여성인력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시키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중도이탈을 방지하고 잠재인력의 취업을 적극 유인하고자 여성인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여성경제인 1천만시대를 맞아 여성인력 개발 및 창업·경제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편집자註>

• 여성인력개발 지원제도 안내 / 편집실

• 정책수혜 사례 : 성공 여성기업인으로 가는 첫걸음 / 강승희

## 여성인력개발 지원제도

### 여성가족부 소관

####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사업

여성가족부는 일정한 기술이나 기능을 갖춘 여성에게 창업자금을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사업은 여성기술인력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창업자금지원사업으로서 성공적인 창업에 디딤돌이 되고자 하며, 2003~2004년간 총 604개 여성기업체에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여 많은 여성들이 창업의 꿈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올해는 물론, 2006년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가진 여성으로서 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일 기준)이 3년 이내인 자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직업·창업교육을 72시간 이상 수료한 여성
  -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 문화사업·정보통신사업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여성
  - 친환경농산물 재배·판매자
  -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한 여성(특허권자 등)

지원한도 : 1인당 7천만원

지원금리 : 연 4.5%(고정)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지원규모 : 총 100억원(2004년 기준, 2005년 이후는

금액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으나 사업은 시행 중임)

신청 및 접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www.sbdc.or.kr](http://www.sbdc.or.kr))

2004년 지원실적(2004년 12월 기준)

309개 업체, 100억원 (업체당 3,200만원)

####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사업

여성가장들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고 창업의 용기를 심어 주기 위한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사업은, 그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여성가장들에게 무담보로 점포임차금을 지원하여 여성가장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운용해 온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여성가장의 자활의지와 가계안정을 돕고자 2004년부터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사업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현재 83개 업체, 30억원의 지원실적을 보였다.

#### 지원대상

##### ○ 저소득 여성가장

- 저 소득 : 최저생계비 1.5배 이하를 말함(소득 기준 170만원 이하, 재산기준 7천만원 이하).
- 여성가장 : 배우자의 사망, 이혼 또는 노동능력 상실 등으로 사실상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단, 배우자가 단순 직직상태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능)

지원한도 : 1인당 5천만원

지원금리 : 연 3.0% (고정)

상환조건 : 원금 일시상환, 이자 월별 납부

지원내용 : 신청자의 희망점포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직접 임차하여 신청자에게 전대

지원기간 : 2년(1회 연장 가능)

신청 및 접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00, [www.womanbiz.or.kr](http://www.womanbiz.or.kr))

### 전업주부 재취업훈련 지원사업

#### 사업개요(2005년의 경우)

- 사업규모 : 5억1천만원, 미취업 여성 약 1,200여명
- 사업기간 : 3월~11월
  - 중소기업 여성채용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 선정 : 2월~3월(2개월)
  - 직종별 전문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 : 4월~6월(3개월)
  - 수요처 조사·연계 등 취업지원 : 6월~11월(6개월)
- 교육대상 :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전업주부
- 교육기관 : 전국 50개 여성인력개발센터 ([www.vocation.or.kr](http://www.vocation.or.kr))
- 중소기업의 범위
  - 제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통신판매업, 호텔업, 병원 등 전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인 사업체

교육내용 : 직업전문 교육, 직무소양 교육, 취업대비 교육으로 구성하되 각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직업전문교육 과정
  - 세무회계, 인터넷 활용, 사무자동화 등 중소기업에 직접 취업할 수 있는 실용강좌 위주로

실시

- 강의·실습·현장체험을 적절히 안배하여 편성하되, 최소 60시간 이상 실시
- 직업전문교육 예시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회계 관련  | 전산회계, 세무경리 등 경리·회계직에 필요한 교육          |
| 마케팅 관련 | 텔레마케팅, 판매관리, 시장조사, 커뮤니케이션 스킬, 상담기술 등 |
| 정보화 관련 | OA실무, 인터넷 활용,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 세서 등     |
| 서비스 관련 | 유통서비스, 리서치, 홍보서비스 등                  |
| 기타     | 기계 CAD 강좌, 품질관리 등                    |

#### ○ 직무소양교육 과정

- 모든 직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무태도, 취업의지 및 직업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의식교육으로 6시간 이상의 의무교육 실시

#### ○ 취업대비교육 과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대비교육, 구직스킬 향상훈련 등 직업 눈높이를 낮추기 위한 교육으로 6시간 이상 의무교육 실시

#### ○ 교육과정 운영

- 주간·집체 방식의 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야간·주말 과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
- 교육생의 현장감 습득을 위해 전체 교육기간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현장체험, 실습교육 가능

#### ○ 교육과정 운영비 편성

- 국고보조금 지원  
전국 50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과정당 1,000만원씩 51개 과정 지원

#### ○ 교육생 부담

- 교육생들의 성실한 교육참가 동기유발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비 중 일부를 교육생 부담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자부담이 20%를 초과할 수 없음.

문의처 : 여성가족부 인력개발과(02-3703-2541,

[www.mogef.go.kr](http://www.mogef.go.kr))

##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전문대졸 이상의 우수한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특화 산업군의 취업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제공한 후 지역산업체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여성에게 일자리를, 교육기관에 직업교육 경험을, 지역산업체에 준비된 인재를 지원한다.

2003년도에 8개 대학이 동 사업에 참여하여 총 214명이 직업교육을 받고 그중 118명이 취업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12개 대학에서 참여 학생 322명 중 173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성과를 인정받아 2005년에는 전국적으로 34개 대학이 참여하여 총 50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 중이다.

### 추진목표

- 고학력 미취업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모델 정착
- 여성청년층의 직업능력 강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
- 지역노동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통한 청년실업 완화
- 여성인재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추구

### 사업내용

- 지역사회 유망직종 선정
  - 각 대학은 지역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사전협의를 통해 취업유망직종을 선정하고, 지역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 여성가족부가 전국대학에 공모를 통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지원규모 선정
- 직업교육(Bridge & Package program) 실시
  - 기본 직업능력을 갖춘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 연계(Bridge) 프로그램 개발
  - 직업전문교육, 직무소양교육, 취업대비교육 등 직무능력 종합(Package) 양성
- 운영방식
  - 단독형 : 단일대학이 독립적으로 1~5개의 맞춤형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복합형 : 거점대학과 연계대학의 2개 이상 기관이 연합한 컨소시엄 방식으로 운영, 거점대학은 전년도 교육프로그램을 연계대학에 전수·운영
- 중앙-지방, 민관협력 취업지원 시스템 운영
  - 교육기관별로 취업연계를 위한 산·관·학 협력체(R-WIN : Regional Women Innovation Network)를 구성하여 운영
- ※ 사업내용(2005년의 경우)
  - 사업명 : 청년여성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사업총괄) → 생산성본부(운영위탁관리) → 전국 34개 대학(교육실시)
  - 사업규모 : 전국 34개 대학 참여, 직업교육훈련 50개 과정 운영
  - 교육대상 : 만 29세 미만의 전문대졸 이상의 지역여성(졸업 전 최종학기 재학생 포함)
  - 교육기간 : 6월~8월
  - 교육내용 : 직업전문교육(65시간 이상), 취업대비교육(8시간), 직무소양교육(8시간)
  - 취업지원 : 직업교육 수료 후 약 6개월까지 취업지원

문의처 : 여성가족부 인력개발과(02-3703-2541,  
[www.mogef.go.kr](http://www.mogef.go.kr))

## 사회적 일자리 취업지원사업

결혼·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난 경력 단절 여성 및 능력개발 후 취업하고자 하는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취업 유망 직종인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의 여성 일자리 찾기’를 지원한다.

### 추진목표

주5일 근무, 문화·여가생활 정착, 맞벌이 부부 보편화로 증가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받

굴하여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사업내용

- 교육·보건복지·보육·문화 등 사회적 일자리 취업유망 직종 선정
  - 전국 교육훈련기관은 사회적 일자리 지역 수요 및 업체별 채용규모 등 예비타당성 조사에 근거하여 직업교육훈련 직종을 선정하고, 여성가족부에 사업 신청
  - 여성가족부는 직업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지원규모를 선정하여 경력 단절 여성에게 적합한 전문직업교육 및 취업대비교육 실시
- 민관협력 취업지원 시스템 '일자리지원단' 구성·운영
  - 교육기관별로 산업체 CEO,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경제단체 인사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취업지원 및 관련정보를 교환하는 취업지원 연계시스템을 구축·활용
- ※ 사업내용(2005년의 경우)
  - 사업명 : 사회적일자리 여성 취업지원사업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사업총괄) → 생산성본부(운영위탁관리) → 전국 53개 교육훈련기관(교육 실시)
  - 사업규모 : 전국 53개 기관이 참여, 75개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 교육대상 : 연령·학력·경력 제한 없음.
  - 교육기간 : 5월~7월
  - 교육내용 : 직업전문교육(60시간 이상), 취업대비교육(8시간), 직무소양교육(8시간)
  - 취업지원 : 직업교육 수료 후 약 6개월까지 취업지원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상담실(1588-0075,  
www.welco.or.kr)

## 중소기업청 소관

### 여성기업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식정보화 사회에 강점을 갖는 여성의 섬세함과 감수성을 살려 여성기업을 우리 산업의 한 축으로 육성
  - 여성전문인력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동 참가 확대
  - 여성기업의 판로 확보 및 경영개선 지원을 통한 여성기업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여성의 창업분위기 조성
  - 전국 14개 지역에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 설치지역 : 서울(강남·마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인천, 울산, 충북, 경남, 전북, 제주
    - 입주대상 : 지식·정보산업 및 서비스업의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6개월 이내의 신규창업자
  - 연중 창업강좌 개최, 여성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한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 여성기업 유망업종의 발굴·육성 지원
  - e-Biz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www.elancer.or.kr)
  - 여성디자이너 해외유명 전시회 참가 지원(북경(3월), 밀라노(3월), 홍콩(7월), 대련(9월), 뉴욕(9월) 등지의 패션전시회 및 홍콩 귀금속 전시회(9월))
- 여성기업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확대 추진(2002년 1조4,820억원 → 2003년 1조6,300억원)
  - 여성기업 우수상품 박람회 개최(5월) 및 국내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

- 여성기업 홍보프로그램 운영 및 해외시장개척 단·연수단 파견
  -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개설
  - 여성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및 경영개선 지원
    - 자금전략 교육 및 투자마트 개최를 통한 양질의 자금유치 지원
    - 경영혁신을 위한 CEO 경영·정보화 연수 실시
  - 각종 시책지원시 우대
    - 정책자금 지원업체 선정시 가점(구조개선자금 2~3점, 경영안정자금 3점)
    -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가점(10점)
    - 단체수의계약의 물량배정시 2점 이내 가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과(042-481-4430, 4386, [www.smba.go.kr](http://www.smba.go.kr))

## 소상공인지원센터 소관

### 실직 여성가장 지원사업

#### 신청자격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실직 여성가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미혼모·임산부 포함)
  - 배우자가 심신장애·사고·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가정의 여성가장
  - 기타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미혼여성가장

#### 지원내용

- 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 보험가입이 가능한 점포)를 공단이 직접 임차하여 이를 대여
- 점포의 경우 감정평가사 등에 의한 평가금액의 60%를 건물가액으로 인정, 선순위 채권을 공제하고 점포지원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가능한

#### 점포

- 월세점포의 경우 공단이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월세(관리비 포함) 보증금 납부시 지원 가능 ⇒ 월세 50만원, 관리비 30만원(총 80만원)인 경우 480만원(80만원×6개월)을 보증보험 가입 또는 지원자 직접부담

**지원기간** : 1~2년 단위 계약(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 지원조건

- 점포지원금의 연리 5.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
- 전세금 5천만원일 경우 : 매월 납부이자 22만 9,170원(5천만원×5.5%÷12)

#### 제외 대상

- 신용불량거래 등록자, 신청일 현재 만 2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주민등록 등본, 실업입증서류 서류 각 1부(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기타사항

- 유홍업 및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일부 업종 불가
- 월세점포의 경우 월세 및 관리비 포함 80만원 이내(본인부담)의 점포만 지원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90만원 ⇒ 월세한도 초과로 지원 불가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상담실(1588-0075,

[www.welco.or.kr](http://www.welco.or.kr))

과학기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은 과학기술부([www.most.go.kr](http://www.most.go.kr), 인력조정기획과 : 02-2110-3790) 또는 전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www.wist.re.kr](http://www.wist.re.kr), 02-3277-364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농림부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은 농림부([www.maf.go.kr](http://www.maf.go.kr), 여성정책과 02-2110-1606)로 문의 바랍니다.

##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

### ■ 서울

|     |                                        |
|-----|----------------------------------------|
| 강북  | 한국여학사협회<br>02)980-2377~8               |
| 강서  | (사)여성자원금고<br>02)3662-4271 02)2692-4549 |
| 구로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br>02)867-4456             |
| 관악  | (사)온터두레회<br>02)886-9523~5              |
| 광진  | 전국주부교실중앙회<br>02)3409-1948~9, 1980      |
| 노원  | 대한YWCA연합회<br>02)951-0187~8             |
| 동대문 | (사)한국몬테소리교육협회<br>02)921-2020, 927-8844 |
| 동작  | 대한주부클럽연합회<br>02)525-1121               |
| 마포  | (사)한국부인회<br>02)332-8661                |
| 서초  |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br>02)581-4433              |
| 종로  | 여성중앙회<br>02)765-1333                   |
| 은평  | 한국문화복지협의회<br>02)389-1976~7             |
| 용산  | 한국여성단체협의회<br>02)749-9763~5             |

### ■ 부산

|     |                                         |
|-----|-----------------------------------------|
| 해운대 | 대한YWCA연합회<br>051)702-9199               |
| 동래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br>051)503-7268, 501-8941~5 |
| 부산진 | 한국여성의전화<br>051)807-7944, 7954, 7904     |

### ■ 대구

|    |                                   |
|----|-----------------------------------|
| 대구 | 대한YWCA연합회<br>053)472-2280~2       |
| 달서 | (사)한국여성인력개발원<br>053)285-1331~2, 4 |

### ■ 인천

|     |                                  |
|-----|----------------------------------|
| 인천  | 대한YWCA연합회<br>032)428-6696        |
| 인천남 | (사)한국부인회<br>032)881-6060         |
| 인천서 | (사)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br>032)577-6091~2 |

### ■ 광주

|     |                             |
|-----|-----------------------------|
| 광주  | 대한YWCA연합회<br>062)511-0001~3 |
| 광주북 | 대한YWCA연합회<br>062)266-8500   |

### ■ 대전

|    |                             |
|----|-----------------------------|
| 대전 | 대한YWCA연합회<br>042)534-4340~2 |
|----|-----------------------------|

### ■ 울산

|    |                       |
|----|-----------------------|
| 울산 | 여성중앙회<br>052)227-1130 |
|----|-----------------------|

### ■ 경기

|    |                                |
|----|--------------------------------|
| 고양 | (사)한국여성지도자연합<br>031)912-8555   |
| 부천 | (사)온터두레회<br>032)326-3004       |
| 성남 | 한국여성의전화연합<br>031)718-6696      |
| 수원 | 대한YWCA연합회<br>031)206-1917      |
| 시흥 |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br>031)313-0473, 4 |
| 안양 | 대한YWCA연합회<br>031)453-4365~6, 0 |
| 안산 | 대한YWCA연합회<br>031)439-2060      |

### ■ 강원

|    |                                 |
|----|---------------------------------|
| 강릉 | 대한YWCA연합회<br>033)643-1145, 1148 |
| 춘천 | 대한YWCA연합회<br>033)243-6474       |

### ■ 충북·충남

|    |                             |
|----|-----------------------------|
| 청주 | 대한YWCA연합회<br>043)258-0624~5 |
| 논산 | 대한YWCA연합회<br>041)736-6244   |
| 보령 | (사)온터두레회<br>041)935-9663    |
| 천안 | 대한YWCA연합회<br>041)576-3060~1 |

### ■ 전북·전남

|    |                                   |
|----|-----------------------------------|
| 군산 | 대한YWCA연합회<br>063)468-0055         |
| 전주 | 대한YWCA연합회<br>063)253-2346~7, 0999 |
| 목포 | 대한YWCA연합회<br>061)283-7535~6       |
| 여수 | 대한YWCA연합회<br>061)641-0050         |

### ■ 경북·경남

|    |                                         |
|----|-----------------------------------------|
| 구미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br>054)456-9484,<br>(사)한국부인회 |
| 철곡 | 054)973-7016, 7088                      |
| 포항 | 대한YWCA연합회<br>054)278-4410~2             |
| 김해 | 대한YWCA연합회<br>055)331-4335~6, 4338       |
| 마산 | 대한YWCA연합회<br>055)232-5265~6, 232-4347   |
| 창원 | 대한YWCA연합회<br>055)283-3220~1             |

### ■ 제주

|    |                             |
|----|-----------------------------|
| 제주 | 대한YWCA연합회<br>064)753-8090~1 |
|----|-----------------------------|

## 성공 여성기업인으로 가는 첫걸음

필자는 지난 2003년 10월 여성경제인협회 중앙여성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데님 제조회사인 '인디플래닝'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인디플래닝은 여성의류 제조기업을 거래처로 하여 데님 의류와 패딩, 다운 등의 특수 아이템을 디자인부터 개발, 생산·납품을 원스톱으로 아웃소싱해 주는 OEM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여러 패션업체에서 디자인 책임을 맡아 근무해 오다 직장생활을 접고, 여성복의 취약한 부분인 데님의류를 개발하는 회사가 전망이 밝을 것이라 판단하여 창업을 준비하던 중에 여성경제인협회의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알게 되었다.

정부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는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하였는데 '여성창업보육센터'도 그중 하나였다.

의류사업은 초기에 개발자금이나 생산자금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고정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기 때문에 여성경제인협회의 창업보육센터가 여성창업자들에게 적은 관리비로 사업장과 기타 사무기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센터에 꼭 입주하고 싶었다.

정성스럽게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얼마 후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지원혜택



강승희  
인디플래닝 대표

을 누릴 수 있었다.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우리와 같은 초기사업자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로 그동안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다.

우리 회사는 창업한 첫해인 2003년에 1억5천만원, 2004년에는 4억원, 2005년에는 만 2년차로 6억원 정도의 매출을 확보하였고, 내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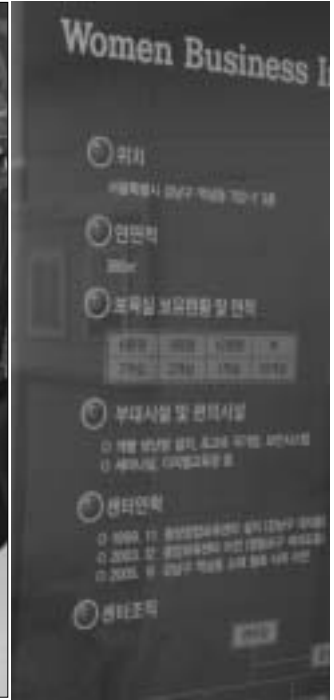
12억원의 매출을 계획할 정도로 회사가 매년 성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보육센터 지원시스템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

특히 우리 회사의 판로개척에 협회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회사를 홍보하고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은 우리와 같은 신생업체들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나 해외 전시회 참가비가 신생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처지에서 고맙게도 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를 위하여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해주어 지난 1월 홍콩에서 매해 개최되는 홍콩 패션 위크의 패션쇼와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우리 회사는 해외진출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고,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해외 전시회 참가는 우리 회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해외 진출을 통하여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몇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우선 창업초기에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갓 창업한 사람들에게는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시회 참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전시회나 박람회에 파견하기 전에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기업에 맞는 준비사항과 교육 등도 병행하여 지원해 준다면 전시회 참가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해 보면 3년간의 기간은 그야말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준비기간이며, 3년차가 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업무를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추어지는 시기라고 판단되는데, 이 점에서

현재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을 좀더 늘려 주면 보다 큰 효율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여성기업인을 육성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보육센터에 비해 환경이 크게 뒤떨어져 있다. 올해 많이 개선되어 그간의 어려웠던 점들이 해소되었지만 보육공간과 공동기자재 등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지금의 인디플래닝이 존재하는 데 있어 매우 큰 영향력을 준 친정과 같은 존재이다. 창업하고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마다 때로는 조언자로서, 때로는 지원자로서 역할을 해주었고 나름대로 현재 인디플래닝의 존재를 각인시킬 수 있었다.

우리 인디플래닝은 앞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지원에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당한 성공 여성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주요 경제지표

|         | 국내총생산<br>(GDP) | 국민총소득<br>(GNI) | 1인당<br>GNI | 제조업<br>생산지수 | 제조업<br>가동률지수 | 도소매<br>판매액지수 | 총취업자   | 실업률  | 소비자<br>물가지수 | 광의통화<br>(M2)<br>(평잔) |
|---------|----------------|----------------|------------|-------------|--------------|--------------|--------|------|-------------|----------------------|
|         | 10억원           |                | 달러         | 2000=100    |              |              | 1,000명 | %    | 2000=100    | 10억원                 |
| 1998    | 484,103        | 476,245        | 7,355      | 68.3        | 86.8         | 80.6         | 19,938 | 7.0  | 97.0        | 596,168.3            |
| 1999    | 529,500        | 523,355        | 9,438      | 85.4        | 97.7         | 91.1         | 20,291 | 6.3  | 97.8        | 676,674.7            |
| 2000    | 578,665        | 576,160        | 10,841     | 100.0       | 100.0        | 100.0        | 21,156 | -4.4 | 100.0       | 691,393.5            |
| 2001    | 622,123        | 621,028        | 10,162     | 100.2       | 95.9         | 106.6        | 21,572 | 4.0  | 104.1       | 739,337.0            |
| 2002    | 684,264        | 685,069        | 11,493     | 108.4       | 99.7         | 115.4        | 22,169 | 3.3  | 106.9       | 824,227.8            |
| 2003    | 724,675        | 725,420        | 12,720     | 113.8       | 99.7         | 114.2        | 22,139 | 3.6  | 110.7       | 888,988.6            |
| 2004    | 778,445 p      | 779,468 p      | 14,162 p   | 126.0       | 102.5        | 113.2        | 22,557 | 3.7  | 114.7       | 925,904.0            |
| 2003. 7 | -              | -              | -          | 107.8       | 94.0         | 110.2        | 22,456 | 3.6  | 110.1       | 886,242.9            |
| 8       | -              | -              | -          | 107.7       | 93.7         | 109.0        | 22,126 | 3.5  | 110.6       | 886,880.8            |
| 9       | 180,280        | 180,920        | -          | 112.4       | 97.3         | 113.9        | 22,301 | 3.3  | 111.6       | 891,154.2            |
| 10      | -              | -              | -          | 126.4       | 109.2        | 117.6        | 22,452 | 3.4  | 111.7       | 885,171.7            |
| 11      | -              | -              | -          | 122.0       | 103.0        | 116.1        | 22,425 | 3.6  | 111.5       | 896,674.7            |
| 12      | 201,149        | 202,153        | -          | 126.4       | 104.9        | 121.1        | 22,096 | 3.8  | 112.0       | 901,818.6            |
| 2004. 1 | -              | -              | -          | 113.4       | 94.3         | 115.8        | 21,936 | 4.0  | 112.7       | 901,048.5            |
| 2       | -              | -              | -          | 120.3       | 100.7        | 107.6        | 22,005 | 4.2  | 113.2       | 906,803.8            |
| 3       | 178,333 p      | 178,643 p      | -          | 130.1       | 108.0        | 116.9        | 22,371 | 4.0  | 114.3       | 916,675.5            |
| 4       | -              | -              | -          | 126.8       | 105.4        | 112.9        | 22,673 | 3.7  | 114.3       | 918,104.4            |
| 5       | -              | -              | -          | 127.5       | 104.9        | 112.6        | 22,738 | 3.5  | 114.2       | 921,047.9            |
| 6       | 192,159 p      | 190,851 p      | -          | 127.3       | 104.5        | 113.4        | 22,822 | 3.4  | 114.2       | 925,909.9            |
| 7       | -              | -              | -          | 122.6       | 100.0        | 109.9        | 22,750 | 3.7  | 114.9       | 927,447.0            |
| 8       | -              | -              | -          | 119.5       | 96.5         | 106.6        | 22,382 | 3.6  | 115.9       | 930,254.5            |
| 9       | 196,124 p      | 196,816 p      | -          | 124.0       | 98.5         | 113.0        | 22,809 | 3.4  | 115.9       | 938,988.9            |
| 10      | -              | -              | -          | 134.0       | 106.6        | 114.7        | 22,901 | 3.4  | 115.9       | 937,308.7            |
| 11      | -              | -              | -          | 134.5       | 107.2        | 114.5        | 22,802 | 3.5  | 115.2       | 940,819.9            |
| 12      | 211,828 p      | 213,157 p      | -          | 132.4       | 103.6        | 121.0        | 22,495 | 3.8  | 115.4       | 946,438.9            |
| 2005. 1 | -              | -              | -          | 130.0       | 102.6        | 112.4        | 22,078 | 4.2  | 116.2       | 948,511.9            |
| 2       | -              | -              | -          | 110.7       | 86.7         | 105.9        | 22,086 | 4.3  | 116.9       | 955,165.0            |
| 3       | 183,770 p      | 184,048 p      | -          | 136.1       | 108.4        | 118.5        | 22,576 | 4.1  | 117.8       | 965,699.6            |
| 4       | -              | -              | -          | 131.5       | 104.6        | 114.4        | 22,934 | 3.8  | 117.9       | 968,730.0            |
| 5       | -              | -              | -          | 132.7 p     | 103.8 p      | 116.8 p      | 23,199 | 3.5  | 117.7       | 971,942.6            |
| 6       | -              | -              | -          | 132.5 p     | 103.3 p      | 116.8 p      | 23,246 | 3.6  | 117.3       | 981,382.2            |
| 7       | -              | -              | -          | -           | -            | -            | -      | -    | 117.8       | -                    |

〈자료 :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2005. 8. 18)〉

|       | 콜금리<br>(억일물) | 회사채<br>수익률 | 경상수지       |            |            |            | 자본<br>수지   | 외 환<br>보유액 | 수출        | 수입        | 대미<br>환율 |         |
|-------|--------------|------------|------------|------------|------------|------------|------------|------------|-----------|-----------|----------|---------|
|       |              |            | 상품         | 서비스        |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100만달러  |
| 1998  | 15.1         | 15.1       | 40,371.2   | 41,665.0   | 1,024.1    | -5,638.3   | -3,196.7   | 52,040.8   | 132,313   | 93,282    | 1,207.8  |         |
| 1999  | 4.9          | 8.9        | 24,521.9   | 28,463.0   | -651.0     | -5,159.0   | 2,040.3    | 74,054.5   | 143,686   | 119,752   | 1,145.4  |         |
| 2000  | 5.1          | 9.4        | 12,250.8   | 16,953.6   | -2,847.8   | -2,421.3   | 12,110.0   | 96,198.1   | 172,268   | 160,481   | 1,259.7  |         |
| 2001  | 4.7          | 7.1        | 8,032.6    | 13,488.0   | -3,872.1   | -1,198.1   | -3,390.8   | 102,821.4  | 150,439   | 141,098   | 1,326.1  |         |
| 2002  | 4.2          | 6.6        | 5,393.9    | 14,777.4   | -8,197.5   | 432.3      | 6,251.5    | 121,412.5  | 162,471   | 152,126   | 1,200.4  |         |
| 2003  | 4.0          | 5.4        | 11,949.5   | 21,952.0   | -7,424.2   | 326.3      | 13,909.4   | 155,352.4  | 193,817   | 178,827   | 1,197.8  |         |
| 2004  | 3.6          | 4.7        | 27,612.8 p | 38,160.7 p | -8,768.8 p | 724.9 p    | 8,319.1 p  | 199,066.1  | 253,908 p | 224,463 p | 1,043.8  |         |
| 2003. | 7            | 3.8        | 5.7        | 345.7      | 1,447.3    | -1,010.1   | 186.0      | -878.3     | 132,906.1 | 15,432    | 14,898   | 1,180.0 |
|       | 8            | 3.7        | 5.9        | 1,231.6    | 2,285.0    | -967.4     | 202.6      | 3,956.8    | 136,189.3 | 15,375    | 13,541   | 1,179.9 |
|       | 9            | 3.7        | 5.2        | 2,092.4    | 3,060.7    | -655.5     | 50.1       | 561.0      | 141,534.8 | 17,021    | 14,531   | 1,150.2 |
|       | 10           | 3.7        | 5.2        | 2,518.9    | 2,985.0    | -246.8     | 15.7       | 533.9      | 143,319.5 | 18,930    | 16,537   | 1,177.3 |
|       | 11           | 3.8        | 5.5        | 2,858.3    | 2,846.3    | -248.3     | 441.8      | 4,383.6    | 150,339.2 | 18,242    | 15,761   | 1,202.6 |
|       | 12           | 3.8        | 5.6        | 1,886.1    | 2,442.8    | -630.9     | 305.1      | 1,279.3    | 155,352.4 | 19,729    | 17,625   | 1,197.8 |
|       | 2004.        | 1          | 3.8        | 5.7        | 2,338.4 p  | 2,985.5 p  | -774.9 p   | 345.7 p    | 391.3 p   | 157,449.6 | 18,987   | 16,209  |
| 2     |              | 3.8        | 5.6        | 2,881.4 p  | 2,985.1 p  | -449.7 p   | 587.8 p    | 2,473.4 p  | 163,007.1 | 19,137    | 17,467   | 1,174.5 |
| 3     |              | 3.8        | 5.4        | 910.7 p    | 2,669.5 p  | -690.5 p   | -726.0 p   | 593.1 p    | 163,556.9 | 21,175    | 19,120   | 1,153.6 |
| 4     |              | 3.8        | 5.3        | 1,142.5 p  | 3,256.4 p  | -392.7 p   | -1,448.3 p | 979.4 p    | 163,635.3 | 21,483    | 18,830   | 1,167.7 |
| 5     |              | 3.8        | 5.1        | 3,708.4 p  | 3,793.3 p  | -228.2 p   | 294.2 p    | -1,671.7 p | 166,542.6 | 20,834    | 17,895   | 1,165.7 |
| 6     |              | 3.8        | 4.9        | 2,179.5 p  | 3,402.6 p  | -922.4 p   | -24.4 p    | -1,988.9 p | 167,029.7 | 21,657    | 18,544   | 1,152.5 |
| 7     |              | 3.8        | 4.8        | 3,246.6 p  | 4,293.9 p  | -893.6 p   | 8.6 p      | -1,681.7 p | 168,006.4 | 21,004    | 18,390   | 1,168.3 |
| 8     |              | 3.6        | 4.4        | 1,039.0 p  | 1,840.1 p  | -1,094.3 p | 285.0 p    | 810.9 p    | 170,492.0 | 19,799    | 18,124   | 1,153.8 |
| 9     |              | 3.5        | 4.1        | 2,812.8 p  | 3,732.6 p  | -915.4 p   | 233.1 p    | -985.5 p   | 174,448.1 | 20,831    | 18,193   | 1,147.9 |
| 10    |              | 3.5        | 4.0        | 2,418.6 p  | 2,839.6 p  | 536.4 p    | 151.7 p    | -660.9 p   | 178,388.3 | 22,663    | 20,408   | 1,126.0 |
| 11    |              | 3.3        | 3.9        | 2,939.7 p  | 3,536.9 p  | -676.4 p   | 317.6 p    | 8,214.9 p  | 192,602.3 | 23,077    | 20,312   | 1,047.9 |
| 12    |              | -3.3       | 3.7        | 1,995.2 p  | 2,825.7 p  | -1,194.3 p | 699.9 p    | 1,844.8 p  | 199,066.1 | 23,197    | 20,968   | 1,043.8 |
| 2005. | 1            | 3.3        | 4.1        | 3,866.2 p  | 4,493.9 p  | -874.7 p   | 496.5 p    | -822.5 p   | 199,699.3 | 22,451 r  | 19,411 r | 1,026.4 |
|       | 2            | 3.3        | 4.6        | 969.3 p    | 1,686.7 p  | -1,048.3 p | 463.4 p    | 487.5 p    | 202,162.4 | 20,395 r  | 18,358 r | 1,008.1 |
|       | 3            | 3.3        | 4.5        | 1,114.6 p  | 3,110.2 p  | -1,129.5 p | -723.6 p   | 3,543.1 p  | 205,447.3 | 23,938 r  | 22,744 r | 1,024.3 |
|       | 4            | 3.3        | 4.3        | -975.7 p   | 2,333.4 p  | -912.5 p   | -2,136.2 p | 1,959.8 p  | 206,376.4 | 22,892 r  | 21,210 r | 1,002.5 |
|       | 5            | 3.3        | 4.1        | 1,437.5 r  | 2,612.5 r  | -1,097.2 r | 160.0 r    | 797.9 r    | 206,100.4 | 23,141 r  | 21,124 r | 1,002.5 |
|       | 6            | 3.3        | 4.2        | 2,289.4 p  | 3,655.4 p  | -1,070.0 p | -119.3 p   | -1,277.3 p | 204,985.9 | 23,728 r  | 21,177 r | 1,024.4 |
|       | 7            | 3.2        | 4.5        | -          | -          | -          | -          | -          | 205,684.6 | 23,394 p  | 21,498 p | 1,028.3 |

주 : p는 잠정치, r은 수정치임.

# 나라경제 주요 기사 목록

## (2004년 9월호~2005년 8월호)

### 2004년 9월호 (통권 제166호)

[특집] 빈곤층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탐방] 환경부 대기보전국  
[인터뷰]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이 달의 초점] 일본식 장기불황, 한국경제에 재연되는가

[정책해설]  
쌀 전업농을 쌀 산업의 핵심주체로 육성 / 조일호  
e-러닝산업을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 김창룡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 강화 / 권영순  
'중소기업 정보보호 종합대책' 마련 / 장광수  
지구환경 변화 등에 대응한 해양과학기술(MT) 개발계획 / 정영훈

[경제동향 및 이슈]  
국내경제동향 : 적극적 내수진작의 대상이 된 국내경기  
세계경제동향 :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세계경기 위축 우려  
세계경제이슈 : 일본경제, 본격적인 성장세로 이어지나

### 2004년 10월호 (통권 제167호)

[특집] 행정수도 이전, 경제·사회적 효과와 과제는?  
[탐방]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인터뷰] 최병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이 달의 초점] 퇴직연금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정책해설]  
2004년 세계개편안 / 정정훈  
기금제도 정비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김상규  
'광대역통합망'으로 제2의 'IT 신화' 구현 / 서석진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 / 류중익  
기업지원 강화 위해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 / 박원주

[경제동향 및 이슈]  
국내경제동향 : 내수경기 회복, 예상보다 지연돼  
세계경제동향 : 세계경기, 고유가로 위축 조짐  
세계경제이슈 : 유로지역 저성장, 무엇이 원인인가

### 2004년 11월호 (통권 제168호)

[특집] 2005년 나라살림, 어떻게 짜여졌나  
[탐방]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  
[인터뷰]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이 달의 초점] 기업도시, 바람직한 추진방안은?

[정책해설]  
56개 경쟁제한적 규제 폐지·개선 / 김순중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세계 8대 기술강국 견인 / 신준호  
석유유통질서 확립 위해 「석유사업법」 개정 / 한진현

[경제동향]  
국내경제동향 : 국내경기,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  
세계경제동향 : 세계경제, 고유가로 성장세 둔화

### 2004년 12월호 (통권 제169호)

[특집 1] 수출 2천억달러 달성-의미와 과제  
[특집 2] 디지털TV 시대 개막-전망과 과제  
[탐방] 농림부 국제농업국  
[인터뷰] 곽철호 환경부장관  
[이 달의 초점] 고유가 시대에 대응한 에너지정책 방향은?

[정책해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시행 / 송재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2008~2008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 / 권오봉  
환경친화적 자치행정 위해 '그린시티' 도입 / 강형신  
전략물자·기술수출입제도의 혁신 / 심성근  
선진 혈액관리체계 구축 / 배중성

[경제동향 및 이슈]  
국내경제동향 : 경기하강 모습 보이는 국내경기  
세계경제동향 : 미 달러화 약세로 세계경제 변동 가능성  
세계경제이슈 : 중국의 금리인상과 환율제도 변경 가능성

### 2005년 1월호 (통권 제170호)

[특집] 2005년 국내외 경제전망과 경제운영 방향  
[탐방]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인터뷰]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이 달의 초점] 기후변화협약,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정책해설]  
한·싱가포르 FTA 타결 / 이운영  
투명·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신호현  
음식물류폐기물의 적매립 금지 / 김두한  
플랜트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김순철  
원양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서정욱

[경제동향 및 이슈]  
국내경제동향 : 수출둔화와 내수경기 침체 지속  
세계경제동향 : 둔화 예상되는 2005년 세계경기  
세계경제이슈 : 달러화 하락의 배경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05년 2월호 (통권 제171호)

[특집] 2005년 경제운용 방향  
[탐방] 노동부 고용정책실  
[이 달의 초점] 'made in 개성',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방안은?

[정책해설]  
친환경상품의 구매 활성화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이찬희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행정 추진 / 김성실  
정책담당자 칼럼 : EU의 항공자유화와 시사점 / 서정욱

[경제동향 및 이슈]  
국내경제동향 : 수출증가세, 완만한 둔화 모습 보여  
세계경제동향 : 세계경제, 미국·중국 중심으로 성장세 지속  
세계경제이슈 : 세계적인 주택가격 급등세,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

## 2005년 3월호 (통권 제172호)

[특집] 혁신 선도형 중소기업 육성  
[탐방]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인터뷰]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달의 초점] 외국자본, 그 순기능과 역기능—바람직한 대응방안은?

[정책해설]  
‘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화’를 위한 전략 / 김영중  
지자체 가용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 추진 / 안세경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개통 / 심성근

[기획기사]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2005년 4월호 (통권 제173호)

[특집] 세계는 지금 FTA 전쟁 중—우리의 선택은?  
[탐방] 기획예산처 재원배분총괄단  
[인터뷰] 김현중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 달의 초점] 고령친화산업 육성, 바람직한 방향은?

[정책해설]  
쌀 관세화 유예 연장, 농업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 김현수  
국가균형발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 김재정  
IT839 전략의 안정적 추진을 통한 선진한국 건설 / 송유중  
식품안전관리 강화—‘식품안전기본법’ 안 마련 / 류호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 김진영

[세계경제현장리포트] ASEAN / 이재경

[기획기사]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2005년 5월호 (통권 제174호)

[특집]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  
[탐방]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인터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이 달의 초점]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방안은 무엇인가?

[정책해설]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 김용범  
선진통상국가 진입 위한 통상모델 정립 / 윤여권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 김재홍  
부품·소재 산업의 신뢰성 향상 지원 / 최남호  
물류산업의 선진화—‘종합물류기업 인증제’ 도입 / 박무익

[해외시장 리포트] 일본 / 김상관

[기업정보]

공정거래 심결사례1: 타이어 제조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 박도하

[기획기사] 산업재해 예방

## 2005년 6월호 (통권 제175호)

[특집] 21세기 일류해양국가를 향하여  
[탐방] 재정경제부 국고국  
[이 달의 초점] 국민연금 개혁, 바람직한 방안은?

[경제정책해설]  
2005 APEC정상회의—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 / 우경하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사업 관련 ‘특별법’ 마련 / 김진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도입 / 정만오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 안규환  
전략물자 수출 자율통제 지원방안 / 심성근  
정책담당자 칼럼 :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해질 것 / 하중범

[해외시장 리포트] 남아프리카공화국 / 이종건

[기업정보]  
공정거래 심결사례2: 대형할인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 / 박도하  
환경분쟁 조정사례1: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 / 김상호

[기획기사] 전자민원 G4C 시스템과 2-1-5-0 시스템

## 2005년 7월호 (통권 제176호)

[특집] BTL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탐방]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실  
[인터뷰]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이 달의 초점] 의료서비스 육성, 바람직한 방안은?

[경제정책해설]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 / 이원식  
우주국가의 토대 마련—「우주개발진흥법」 제정 / 최은철  
‘기업 기상리기’ 5대 과제 추진 / 김중철  
저임금 근로자 보호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 / 박형정  
온실가스 감축 위한 제도적 노력 강화 / 박용경

[해외시장리포트] 러시아 / 김승철

[기업정보]  
공정거래 심결사례3: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 박도하  
환경분쟁 조정사례2: 공장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유해가스로 인한 인쇄회로기판 부식피해 / 김상호

[기획기사] BTL(Build-Transfer-Lease)사업

## 2005년 8월호 (통권 제177호)

[특집] 하반기 경제 운용  
[탐방]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인터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 달의 초점] 지방자치체 10년, 바람직한 정착 방안은?

[경제정책해설]  
신용보증제도 개편 / 추경호  
쌀 관세화 유예 연장 / 정일정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시장질서 창출 / 채희봉  
법정부 차원의 ‘청소년 근로 보호 종합대책’ 마련 / 이완영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제정 / 안세경  
정책담당자 칼럼 : 한·중 과학기술 협력 강화해야 / 최광학

[해외시장리포트] 중국 / 이효수

[기업정보]  
공정거래 심결사례4: 학습자료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박도하  
환경분쟁 조정사례3: 등유 유출로 인한 낚시터 물고기 피해 / 김상호  
금융분쟁 조정사례1: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회원의 책임 여부 / 정준아

[기획기사]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 나라경제 정기구독 신청서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편집실 앞  
FAX : (02) 3295-0744

아래 사항을 기입하신 후 팩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기간 : 2005년 \_\_\_\_월호부터 200\_\_년 \_\_\_\_월호까지 ( \_\_\_\_년간)

▶ 신청부수 : \_\_\_\_부

▶ 신청자 : 개인 ☐                  기관 ☐

〈개인〉 성 명 :                                  전 화 :

직장명 :                                          직 위 :

우송처(주소) :

e-메일 :

〈기관〉 기관명 :                                  전 화 :

주 소 :

우송처(부서) :

신청자 성명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 원하시는 곳에서 편안히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료가 절약됩니다.
- 경제정책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 정기구독료

- 1년 25,000원
- 2년 45,000원

☐ 구독 문의 : 전화 : (02)958-4623

(02)958-4318

e-메일 : nara@kdi.re.kr



# 경제정보의 세계로 오십시오

<http://epic.kdi.re.kr>



## 경제정책정보

경제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발표되는 모든 경제정책자료를 신속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내외 언론 경제보도

국내 언론의 주요 경제논단과 세계 주요 외신의 경제관련 기사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멀티미디어 자료

경제이슈에 대한 설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국내외 기관자료(Infolink)

검색로봇이 매일 세계 주요 경제관련 웹사이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류합니다.

## 클릭 경제교육

중·고등학교 사회과 선생님들을 위한 경제관련 자료실입니다.

# 플러그 휴식 -

11%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무심코 꽂아둔 플러그를 통해 연간  
5천억원의 전기가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집의 플러그를 쉬게 하면 전기요금의  
11%가 줄어들고, 전기기구의 수명도 길어집니다.  
가까이에 있는 에너지부터 쉬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에너지 건강지수가 올라갑니다.

₩ 2,500원